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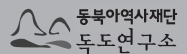
Territory and Seas

# 영토해양연구

Vol. 19 Summer 202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차례

## 연구논문

김수희 ▣ 일본 돗토리현(鳥取縣)의 동해 진출과 울릉도·독도 6

홍성근 ▣ 1948년 독도폭격사건의 인명 및 선박 피해 현황 40

박병섭 ▣ 독도의 소속 및 호칭에 관한 미국 정부의 인식 변화 82

## 사료해제

이원택 ▣ 조한기(趙漢紀)의 「울릉도수토키(鬱陵島搜討記)」 해제 및 번역 114

## 서평

이준호 ■ 일본 전후 체제의 실체에 대한 명쾌한 진단

- 『영속패전론(永續敗戰論) - 전후 일본의 핵심』

:시라이 사토시(白井聰) 저, 정선태 외 옮김, 2017, 이숲 134

## 규정 및 규칙

편집위원회 규정 144

발행 및 심사 규칙 146

투고 요령 150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154

【별첨】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167





동북아역사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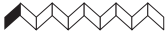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연구 제언



- 김수희 | 일본 돛토리현(鳥取縣)의 동해 진출과 울릉도 · 독도
- 홍성근 | 1948년 독도폭격사건의 인명 및 선박 피해 현황
- 박병섭 | 독도의 소속 및 호칭에 관한 미국 정부의 인식 변화



# 일본 돗토리현(鳥取縣)의 동해 진출과 울릉도·독도

김수희 독도재단 교육연구부 부장

## 1. 머리말

17세기 일본 돗토리번(鳥取藩) 해운업자(北前船)들 중 울릉도 자원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상인이 나타났다. 1617년 돗토리번 요나고(米子) 출신 오오야 진기치(大谷甚吉)는 산인(山陰)지방에서 호쿠리쿠(北陸) 지역으로 물자를 운반하던 중 울릉도에 표착한 것을 계기로 울릉도 자원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는 죽도(울릉도) 표착을 핑계로 막부에 「죽도도 해면허(竹島渡海免許)」를 신청하고 「죽도사업(竹島事業)」을 시작하였다.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로 개항을 맞이하자 돗토리현(鳥取縣) 요나고 사카이미나토(境港)에서 울릉도로 가는 일본인들의 진출이 시작되었다. 사카이미나토는 오키도(隱岐島)를 지나 울릉도로 가는 교역의 장소로 일본인들은 울릉도 자원을 사카이미나토로 운반하였다. 사카이미나토는 전근대기부터 환동해 교역의 중심지로 동해 진출의 거점지역이었다. 이곳은 전근

\* 논문 투고일: 2020. 4. 10, 심사 완료일: 2020. 5. 21, 게재 확정일: 2020. 5. 27.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과제 수행 결과임(NAHF-2017-기획연구(공동)-18).

대기 일본인 「죽도도해」의 시발점으로 「울릉도쟁계」등 조·일 간의 교섭 장소에 등장하는 요나고이다.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영토설은 돗토리인의 울릉도 도항과 관련된 내용으로 일본은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울릉도 경제활동과 울릉도 도항을 청원하는 내용과 막부가 발급했던 「죽도도해」면허를 근거로 “항해의 목표나 도중의 정박지로서, 강치나 전복 포획의 좋은 어장으로 이용했다”는 17세기 영유권 확립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울릉도쟁계」 해결 과정에서 막부가 돗토리번에 보낸 문서와 돗토리번의 답변, 막부가 내린 「죽도도해금지령」을 중심으로 막부와 돗토리번이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는 돗토리번 소속이 아니다’라는 결정 과정 등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오키도가 시마네현에 편입되었고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선포해 독도를 불법적으로 일본영토로 편입함에 따라 한일 양국의 울릉도·독도 영유권 연구는 역사 인식과 단절된 제국주의 침탈과정에서 연구되었다. 전근대기 울릉도 도해를 지배했던 돗토리번의 역사 인식보다는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연구로 전환되었고 국제법적 쟁점이 부각되었다.

이 글에서는 전근대기부터 근대기에 이르기까지 울릉도·독도 항로를 독점한 돗토리 해운업자와 오키도인들의 울릉도 도항과 그 활동을 검토함으로써 일본인의 동해 및 울릉도·독도 침탈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다. 특히 근대기(1876~1910) 돗토리현의 조선 진출 장려책 속에서 사카이미나토가 울릉도 무역항으로 변모하게 된 배경과 그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무주지론’은 독도를 침탈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울릉도 항로와 죽도도해금지령

### 1. 오키도(隱岐島)와 「죽도도해」사업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는 전통적으로 쓰시마와 경상도를 연결하는 동쪽 경로, 규슈(九州) 고토(五島)와 전라도를 연결하는 남서쪽 경로, 그리고 산인지방에서 오키도를 걸쳐 한반도 동해안에 도착하는 동해 경로가 있다.<sup>1</sup> 에도시대(조선후기)에 들어서면서 쓰시마와 경상도를 연결하는 동쪽 경로가 공식적인 경로였지만 산인 지방에서는 울릉도로 연결되는 비공식적인 통로가 운영되고 있었다. 돛토리번 해운업자 오야·무라카와 양가는 울릉도 ‘발견’을 명목으로 울릉도 명칭을 기죽도(磯竹島)에서 죽도(竹島)로 변경하고 「죽도도해」 사업을 시작하였다.

여기에서는 우선 울릉도와 연결된 산음지역 해운업자들의 해상근거지 오키도 항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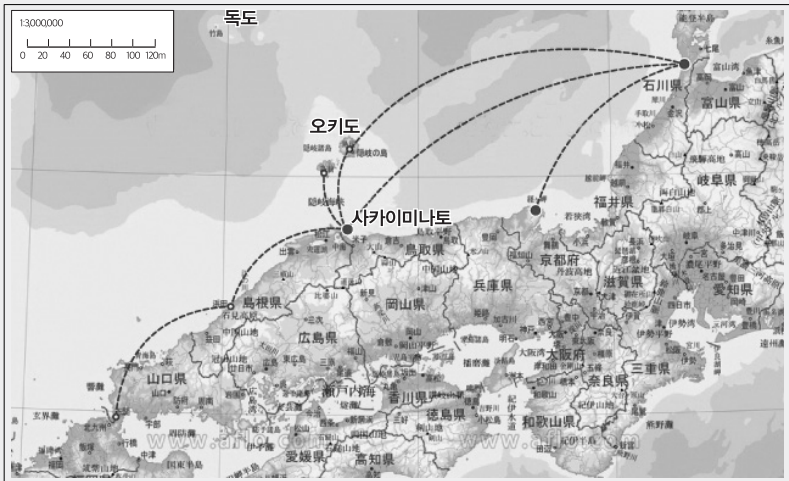
17세기 상공업 발달 정책으로 상납된 곡식과 토산품들은 에도(江戶)와 오사카(大阪)로 집하되었다. 운반이 어려운 미곡 수송은 대형선박으로 에도와 오사카(大阪)로 운송하였고 지역 토산품은 연안항로를 이용해 운반하였다.<sup>2</sup> 이 결과 동쪽으로는 아키다(秋田)에서 에도까지가 동쪽(東廻)항로로 연결되었고, 서쪽으로는 야마가타현(山形縣)에서 시모노세키(下關)를 지나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를 통과하는 서쪽(西廻)항로로 연결되었다.<sup>3</sup>

1 정성일, 2013, 『전라도와 일본』, 경인문화사, 5쪽.

2 寛文10년(1670) 막부는 河村瑞賢에게 명하여 奥州 및 福島 등의 관미 수만석을 에도로 회송하도록 명령해 이른바 동쪽 길로 가는 직항 항로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寛文12년(1672) 出羽国 酒田부터 長州下關을 경유해 瀬戸内海에 들어와 大坂을 지나 江戸에 이르는 서쪽길 항로를 개발하였다. 이후 막부는 廻船을 직접 고용하는 廻米方式을 취하여 해상수송법규를 성문화하였다.

3 서쪽으로 가는 항로는 오사카에서 小木(佐渡)→福浦(能登)→柴山(但馬)→温泉津(石見)→下關(長門)→大坂(攝州)→大島(紀伊)→方坐(伊勢)→安乘(志摩)→下田(伊豆)에 도착하였다. 돛토리에 도착하면 연안항로와 먼거리 항로로 나뉘어지는데 연안 항로는 美保關町와에서 因伯, 諸寄(兵庫縣美方郡新温泉町)를 지나 柴山(兵庫縣城崎郡 香住町)로 항해하는 경로와 또 다른 항로는 먼거리 항로로 美保關町에서 오키도 西郷으로 가서 福浦로 가는 방법이 있다. 이 먼거리 항해는 諸寄를 지나 柴山에서 福浦로 가는 연안 항법보다 오키도로 가서 만 바다를 항해하는 항법으로 해난사고의 위험이 있지만 비용이 절감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오사카에서 세토나이카이를 지나 북해도로 가는 일본 서북해 항로에는 막부가 직접 관리하는 미호노세키(美保關)가 있었다. 이곳은 철 교역의 장소로 해운업자들의 왕래가 많았다. 해운업자들은 미호노세키에서 오키도로 건너가 바람을 기다리면서 노토만도(能登半島)로 건너갔다. 이 항로는 산이나 섬을 보면서 배의 위치를 확인하는 연안항법이 아니라 방향과 거리감에 의지해 대양을 건너가는 항해 방법으로 표류나 조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오키도를 근거지로 한 먼거리 항해는 시간이 단축되었고 항해술의 발달로 표류의 위험이 감소되었다.<sup>4</sup> <지도 1 참조>



<지도 1> 오키도를 근거지 한 서북쪽(西廻)항로

미호노세키와 오키도는 서북해 항로를 항해하는 해운업자들의 근거지로 활용되었다. 해운업자들은 이시카와(石川), 토야마(富山), 니가타(新潟) 등 호쿠리쿠지방에서 쌀과 밀치등 주요 토산물을 오사카로 운반하였고 미호노세키 도착후 오사카를 비롯한 주요 도시로 운반하였다.<sup>5</sup> 오키도가 장거리 항

4 兒島俊平, 2010, 『近世・石見の廻船と鉦製鐵』, 石見郷土研究懇話會刊, 46쪽.

5 須藤利一, 1968, 『船』, 法政大學出版社, 150~174쪽.

해의 중심지로 서북항로가 개척되는 시기 오야·무라카와 양가는 울릉도 항로를 독점하고자 죽도도해면허를 신청하였다.

또한 오키도와 사카이미나토 항로는 오키산 해조류(藻葉)가 돗토리 유미하마반도(弓浜半島)의 개간지 개척사업에 사용되어 오키도의 많은 해조류가 돗토리번으로 운반되었다.<sup>6</sup> 일본에서는 황무지 개간이나 염료재배, 면직물, 과일재배 등 상업적 농업에 말린 멸치나 청어 찌꺼기등을 사용하였는데 멸치와 청어 어획량은 매년 풍흉이 심해 가난한 농민들이 비료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웠다. 그러나 오키산 해조류는 멸치가격 1관당(3.75Kg) 5분의 1수준으로 저렴하고 매년 생산량 변화가 거의 없었다.<sup>7</sup> 유미하마반도의 개간사업이 진행되면서 오키도산 해조류 수요가 증가하였고 해조류 구입을 위해 오키도를 왕래하는 운반선이 증가하였다. 돗토리 특산물 하쿠슈면(伯耆綿)의 생산량 증가로 개간지 사업은 활발히 일어났다.

이와 같이 오키도를 근거지로 한 서북해(西廻)항로가 개발되면서 해운업자들은 동해 항로를 인지하게 되었다. 오야·무라카와 양가는 오키도를 근거지로 이용하면서 울릉도 자원을 확인하였고 「죽도도해」면허를 발급받아 울릉도 자원을 독점하였다. 이 과정에서 울릉도의 이름은 기죽도에서 죽도로 변경되었다.

## 2. 울릉도 명칭 변경과 죽도도해금지령

일본은 오야·무라카와 양가문이 ‘표류’에 의해 울릉도·독도를 발견하고 막부의 공인을 받아 출어하였으므로 막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일본은 「울릉도쟁계」가 결착된 이후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로 판명되었지만 독도 도해만은 금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토 교수는 울릉도·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확인된 상태였

6 境港에서 境水道에 주입하는 米川用水공사가 元祿연간에 시작되어 1759(宝曆9)년 완성됨으로써 모래밭이 개간되어 면직지로 변화하였다.

7 櫻村縣二, 2011, 『里海と弓浜半島の暮らし』, 鳥取縣, 21~22쪽.

으므로 ‘표류’는 「죽도도해」면허를 허락받기 위한 명분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한다.<sup>8</sup>

먼저 해류의 흐름에서 보면 일본 해류는 열도를 따라 북상하기 때문에 산인지방에서 동해를 가로질러 조선으로 흘러가기가 어렵다. 서일본에서 표류하더라도 같은 지역으로 밀려갈 뿐이며 조선으로 갈 수 없다.<sup>9</sup> 『돗토리 현사(鳥取縣史)』 표류 관련 기록을 보면 동북쪽의 돗토리연안에서 서남쪽의 시마네 연안으로 떠밀려간 표류는 전부 세 건뿐이며 표류하더라도 울릉도 까지 표류한 적은 거의 없었다.

• 1744년(元享14) 1.22

돗토리현 서부 도마리우라(伯州 泊浦)의 배가 구로마쓰우라(黑松浦; 시마네현 서부) 앞 바다에서 표류, 표류민은 시마네현 서부 시오다우라(塩田浦)에 포착, 배는 더 서남하행하여 시마네현 서부 하마다소토우라(濱田外浦)에서 발견

• 1821년(文政4) 5.20

돗토리현 서부 아카사키우라(伯耆國 赤崎浦)에서 동북 상행하던 배가 표류하여 시마네현 서부 하마우라(石見國 濱田浦)에 포착

• 1839년(天保5)

돗토리현 동부 가로우라(因州 加露浦)의 배가 표류하여 돗토리현 서부 와키우라(石見國 那賀郡 和木浦)에서 파손<sup>10</sup>

돗토리에서 표류하면 연안 쪽으로 떠밀려갔고 시마네에서 표류하더라도 돗토리 연안 동북쪽 지역 연안으로 밀려간다. 따라서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표류는 표류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조선 정부가 쓰시마를 경유한 경로

8 나이토 세이쥬, 2005, 『독도와 죽도』, 제이앤씨; 정영미, 2015, 『일본은 어떻게 독도를 인식해 왔는가』, 한국학술정보.

9 정영미, 위의 책, 34~35쪽.

10 鳥取縣編, 『鳥取縣史』第4卷, 近世社會經濟, 568쪽.

만을 인정한 상황에서 산음지역에서의 울릉도 도항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표류’라는 단어로 위장되었다. ‘표류’라고 하면 국가간의 우호와 인도적 차원에서 송환되었기 때문에 후대에 조작되었을 것이라고 나이토 교수는 말한다.<sup>11</sup>

당시 일본에서는 울릉도를 무릉도 또는 울릉도라고 하였고 왜구의 침입이 심했던 여말선초 14세기경에는 기죽도라고 부르고 있었다. 1592년 『다문원일기(多文院日記)』에는 호키(伯耆) 사람 야시치(弥七)가 ‘기죽도 인삼(いそたき人蔘)’을 지참하고 찾아왔다고 기록하였고 1614년 7월 『조선교통대기』에는 울릉도를 기죽도로 부르고 있었다. 1614년 이수광(李睟光)이 지은 『지봉유설(芝峯類說)』에도 왜가 의죽(磯竹) 또는 기죽(磯竹) 점령이라고 기술하였다.<sup>12</sup> 일본에서 울릉도는 기죽도로 통칭되었고 산음지방에서도 기죽도로 알려져 있었다.

겐나(元和) 6년(1620) 경신(庚申), 다이토쿠인(台徳院 徳川秀忠)님께서 의죽도(磯竹島)에 있던 일본인 야지에몬(弥左衛門)·니에몬(仁右衛門)이라는 자를 잡아오도록 요시나리(義成)님께 명하였다. 의죽도는 조선국 울릉도라고 하는 곳으로 상세하게 조선의 문헌 『지봉유설』에 보인다.<sup>13</sup>

그런데 1620년 일본막부(徳川秀忠)는 기죽도(울릉도)에 불법 거주하고 있는 이소타케 야지에몬(磯竹弥左衛門)과 니에몬(仁右衛門)을 붙잡아 처형하였다. 이에 대해 나이토 교수는 1614년 조선 동래부와 쓰시마 번의 교섭으로 울릉도가 조선의 땅으로 결말이 났을 때 조선 측은 ‘왕래하는 일이 있으면 단지 귀도(쓰시마) 하나만을 문호로 한다. 그 외의 사실은 해적으로 간주한다’고

11 나이토 세이쥬, 2005, 『독도와 죽도』, 제이앤씨, 70쪽; 池内敏, 2006, 『大君外交と武威』, 名古屋大學出版社, 15쪽; 정영미, 앞의 책, 42쪽.

12 李睟光, 芝峯類說 卷二, 地理部.

13 對馬藩 宗家記録, 『元和六年庚申磯竹島弥左衛門仁右衛門被召捕候時之覺書一冊御狀三通此内入』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기록류 No 6580. (윤유숙, 2015, 『근세 조일(朝日)관계와 울릉도』, 해안, 29쪽)

언급하였다. 즉 조선은 일본과의 왕래를 쓰시마를 경유하는 해로만 인정하고 다른 길을 통해 내항하는 것은 해적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하자 막부는 울릉도에 거주하고 있는 이소타케 야자에몬과 니에몬을 붙잡아 와서 처형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산음지방에서 울릉도로 가는 동해항로를 허락하고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죽도도해」사업을 승인하였다.<sup>14</sup>

죽도도해사업은 외국 도해였으므로 주인장(朱印狀)을 교부하는 것이 통례였고 주인장에 「자일본도조선국주야(自日本到朝鮮國舟也)」라는 행선지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했다. 그러나 막부는 개인이 외국으로 건너갈 때 도해를 허가하는 봉서(封書) 형식으로 울릉도 도해를 허가하였다. 이 봉서에는 호키국 요나고에서 울릉도로 건너는 절차가 따른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번 도해한다’며 돗토리 번주앞으로 발급하였다.<sup>15</sup> 1620년 이소타케 야자에몬 처형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막부 노중(老中)들은 울릉도가 조선 영토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행선지가 기재된 주인장을 발급할 수 없었고 호키국(伯耆國) 요나고에서 죽도(울릉도)로 건너간다는 사실을 전제로 「죽도도해면허」를 발급하였다.

당시 조선 정부는 이들이 울릉도에서 조업하다가 표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은 왜란·호란이라는 전란을 경험하고 청나라의 영향력이 강한 상황 속에서 울릉도 도해를 문제 삼을 여건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1693년 안용복이 일본 어민에게 납치당한 사건을 계기로 대일외교교섭에 강경한 자세를 취해 울릉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였다.<sup>16</sup>

그런데 이 외교 교섭이 교착 상태에 이른 1695년 12월 에도막부와 돗토리번의 문답 과정에서 독도도 일본 땅이 아니라는 사실이 새로이 밝혀지고

14 나이토 세이쥬, 앞의 책, 69~70쪽(도이오오이노카미토시카즈(土井大炊頭利勝)를 비롯한 막부의 노중(老中)들은 1614년 쓰시마번은 울릉도의 영유화를 목적으로 조선 정부와의 교섭추이나 1617년 이소타케 야자에몬(磯竹弥左衛門) 사건 등 일본의 영토로 만들고자 한 일련의 사건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막부 노중은 요나고 주인에게 울릉도로 가는 도해를 면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15 앞의 책, 72~73쪽.

16 장순순, 2012, 「17세기 조일관계와 ‘鬱陵島 爭界」, 『역사와 경계』 84; 장순순, 2012, 「조선 후기 대마번의 조선 교섭과 1693년 울릉도 영속서비」, 『동북아역사논총』 37.

확인되었다. 당시 에도막부가 “울릉도(竹島)는 언제부터 돛토리번 땅이 되는가?”, “울릉도 이외에 돛토리번에 소속된 섬이 있는가?”하는 질문에 대해 돛토리번에서는 “울릉도는 돛토리번에 부속된 섬이 아니다”라고 답하고, 에도막부에서 언급하지도 않은 독도를 포함하여 “울릉도와 독도(松島), 그 외에도 돛토리번에 소속된 섬은 없다”라고 답했기 때문이다.<sup>17</sup>

에도막부에서 언급하지도 않은 독도에 대해 돛토리번이 돛토리번 땅이 아니라고 답변하자, 에도막부는 다시 독도, 즉 마쓰시마(松島)에 대해 질문했는데, 1696년 1월 25일자 답변 내용은 『죽도지서부(竹嶋之書附)』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각서

……

1. 후쿠우라(福浦)로부터 마쓰시마(松島)까지 80리 18

1. 마쓰시마에서 다케시마(竹島)까지 40리

이상

1696년 1월 25일

별지

1. 마쓰시마는 호키국(伯耆國)으로부터 해로 120리 정도입니다.

1. 마쓰시마는 조선에는 80~90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 박병섭·나이토 세이쥬, 2008, 『독도=다케시마 논쟁』, 보고사, 16~22쪽.

당시 돛토리번은 伯耆州와 因幡州를 관할했다. 질문과 회답은 다음과 같다.

江戸幕府의 鳥取藩에 대한 질문(『磯竹島事略』 元祿8년(1695) 12월 24일)

“因州伯州江附候竹嶋者, 其の頃より兩國江附屬候哉(因幡州·伯耆州에 부속하는 울릉도는 언제부터 因幡州·伯耆州에 부속되었는가?)”

“竹島之外兩國江附屬之嶋有之候哉(울릉도 외에 因幡州·伯耆州에 부속하는 섬이 있는가?)”

右之返答 松平伯耆守(幕府의 질문에 대한 鳥取藩 松平伯耆守의 회답, 『磯竹島事略』 元祿8년(1695) 12월 25일)

“竹嶋者 因幡伯耆附屬二而者無御座候(울릉도는 因幡州·伯耆州에 부속하는 섬이 아니다.)”

“竹嶋松嶋其外兩國江附屬之嶋無御座候事[울릉도·독도는 因幡州·伯耆州에 부속하는 섬이 아니고, 그 외에도 부속하는 섬은 없다.]”

18 후쿠우라는 일본 오키도에 있는 지명이다. 따라서 『기죽도사략』과 『죽도지서부』에서 오키도-독도(80리), 독도-울릉도(40리) 거리는 『태정관지령』에서의 거리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마쓰시마는 (일본) 어느 지방에 속하는 섬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마쓰시마에 어렵(漁獵)을 가는 것은 다케시마에 도해할 때 길목에 있기 때문에 들어서 어렵습니다. 타지방에서 어럽을 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즈모(出雲國)·오키도(隱岐國) 사람은 요나고(米子) 사람과 같은 배를 타고하여 갑니다.<sup>19</sup>

이와 같이, 막부는 마쓰시마(독도)의 위치와 돗토리번 땅이 아니라는 것을 단순히 인식만 한 것이 아니라 문서로 공식 확인한 것이다. 한편 에도막부는 마쓰에번에 대해서도 관할 지역의 울릉도·독도 도해에 대해 조회하여 1월 26일자 회답서에서 오키·이즈모 사람은 울릉도 도해에 적극적인 관련이 없음을 확인했다.<sup>20</sup> 「죽도도해」사업에 대해 돗토리번은 경제적 지원은 물론 경영에도 관여하였으나 막부가 울릉도·독도 소속을 문의하자 자신들의 영토가 아니라고 명확한 문서로 대답했으므로 막부는 울릉도·독도를 포함한 「죽도도해금지령」을 내렸다.

### III. 근대 울릉도 무역과 사카이미나토(境港)

1889년 조·일 양국 간 체결된 어업조약인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 체결로 일본인의 3해리 내 어업 활동이 허락됨에 따라 일본인은 어업을 빙자하여 울릉도로 들어와 불법거주, 무단 벌채, 화물 운송 등 불법적 활동을 자

19 『죽도지서부』 원록 9년(1696) 1월 25일. 覺……一 福浦より松嶋江八拾里程一 松嶋より竹嶋江四拾里程 以上 子 正月廿五日. 別紙 一 松嶋江伯耆國より海路百貳拾里程御座候事 一 松嶋より朝鮮國江は八、九拾里程も御座候様及承候事 一 松嶋は何れ之國江附候嶋とても無御座候由承候事 一 松嶋江獵參候儀、竹嶋江渡海之節道筋にて御座候故立寄獵仕候. 他領より獵參候儀は不承候事. 尤、出雲國、隱岐國之者は、米子之者と同船にて參候事 以上. (정태만, 2014, 『17세기 이후 독도에 대한 한국 및 주변국의 인식과 그 변화』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재인용)

20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 2009, 「江戸時代における竹島および松島の認識について」, 『독도연구』 6,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184쪽.

행하였다. 1891년 7명<sup>21</sup>이 거주하기 시작하여 1896년 200명, 1901년 50명이 거주하였으며 3월이 되면 벌목과 상업으로 300~400명이 왕래하였다.<sup>22</sup> 이들 대부분은 사카이미나토에서 출발해 독도를 지나 울릉도에 도착하였다.

매년 3월이 되면 돗토리현 사카이미나토에서 울릉도로 300~400명이 건너왔다. 이들은 울릉도에서 생산된 나무, 콩, 감자 등을 구입하여 사카이미나토로 운반하였고 직물, 성냥 등 생활필수품을 판매하였다. 1903년 조사에 따르면 울릉도 일본인 거주자 총 283명 가운데 오키도 출신을 포함한 시마네 현 출신은 196명, 돗토리 현 출신은 30명이었고 대부분은 사카이미나토에서 출발한 자들이었다.<sup>23</sup>

1901년 조선 정부가 일본인의 불법적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파견한 부산해관 스미스는 울릉도 일본인 정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섬 안에 있는 일본인은 약 50명 정도이다. 이 일본인들은 섬을 영위한 거주지로 인정하고 오늘까지 7, 8년에 이르도록 도착하고 또 매년 3월부터 6월이 되면 그 바람이 조용해지고 물결이 온화해지는 것을 이용하여 일본의 남녀 300~400명이 사카이 지방에서 이 섬으로 건너와 임부는 어로에 임부는 벌목에 종사하고 혹은 일본인이 저축해 둔 재목, 두맥, 마, 감자 등을 탐채하는 자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일본인 여자로 현재 섬 안에 거주하는 자는 31명으로 대부분의 일본인의 작업은 물푸레나무를 벌채하여 일본으로 수출하고 그것으로 쌀, 보리, 간장, 술 등의 식품을 비롯하여 그 외에 목면과 같은 것을 구입하여 섬(울릉도)로 수출하여 한인의 잡곡과 교환하여 전폐로 값을 치룬다.<sup>24</sup>

울릉도는 사카이미나토와 오키도, 부산, 장기와 연결되었으나 울릉도와

21 송병기, 앞의 책, 171쪽.

22 『皇城新聞』, 광무 6년 4월 29일(송병기, 앞의 책, 209쪽)

23 『明治35年 鬱陵島狀況』, 『釜山領事館報告書』, 日本外交史料館 소장, 문서번호 6-1-6-10.

24 『山陰新聞』 1902年(明治35) 5月 14日.

조선 내륙 사이에는 안정된 선박 운항은 없었고 필요한 경우 일본인 선박을 빌려 부산이나 울산으로 콩을 싣고 가서 판매하거나 부산에서 잡화를 실은 배가 건너오기도 하였다. 사카이미나토는 울릉도 무역항으로 발전하여 1900년 이전 무역량의 80~90%가 울릉도와의 무역이었다.<sup>2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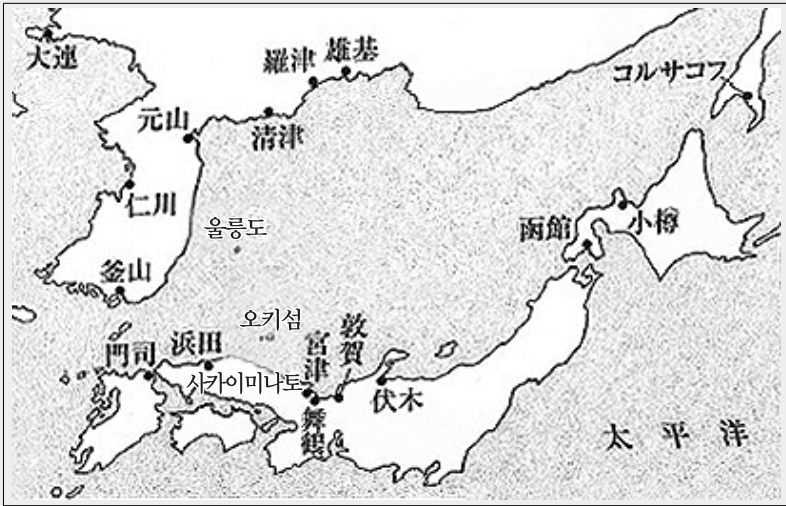
1894년 돗토리 현회(鳥取縣會)는 ‘지금 일본해(동해)는 세월을 따라 일이 많고 특히 조선국은 그 관계가 옛날과 달라 사카이미나토를 조선무역항으로 하고 이익(利源)을 연다’고 사카이미나토를 무역항구로 지정하였다. 사카이미나토는 ‘한국 또는 시베리아로 만약 사카이미나토에서부터 오키국을 지나 이 지방을 향해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얻을 것이 많다. 직항은 무엇보다도 편리하다’고 내무대신에게 울릉도 취항을 건의하였다.<sup>26</sup> 청일전쟁 후 ‘대륙진출열’이 고조되는 가운데 1896년 사카이미나토는 고베항과 더불어 외국무역항으로 지정되었고 ‘조선무역개항기성동맹회(朝鮮貿易開港期成同盟會)’가 설립되었다.<sup>27</sup>

1899년 사카이미나토는 신개항장으로 지정되었으며 조선항로에 범선 두 척이 취항해 동해 항로의 거점지역으로 발전하였다. 1900년 사카이무역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돗토리현은 이 회사에 10년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25 사카이미나토는 동북아시아의 무역항으로 기선이 취항하였다. 1876년 미츠비시(三菱)기선은 사카이미나토에서 고베(神戸), 시모노세키(下關), 하코다테(函館)까지 운항하였다. 오사카(大阪)에서는 목면, 철, 철강, 동(荒銅), 북해도에서는 청어지게미, 청어, 다시마, 대구, 어유와 니가타(新潟)에서는 대두, 소두, 보리, 말린 멸치를 운반하였다. 1879년 한신(阪神)항로, 1884년 오사카상선이 아스키(安來), 오나고(米子), 사카이미나토(境港)로 취항하였으며 1889년 마츠에(松江)와 미호노세키(美保關)간 증기선도 취항하였다.(內藤正中·眞田廣幸·日置左門, 1997, 『鳥取縣の歴史』, 山川出版社, 286~287쪽.)

26 鳥取縣, 『鳥取縣勸業沿革』, 1899.

27 『山陰新聞』, 1896年(明治29) 4月 25日.



〈지도 2〉 사카이미나토(境港) 위치

그러나 1899년 9월 한국 정부가 부산해관세무사 라쁘떼·도감 배계주(裴季周) 보고로 울릉도 일본인 철수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동년 10월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가 일본인의 철수를 약속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산음신문』은 사카이미나토의 위기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만약 그 울릉도에 재류하는 운백은인(雲伯隱人)이 200명에 달한다는 것을 알면 지방 인사는 이것을 경시할 수 없고 또 사카이미나토를 거쳐 수출입하는 화물의 다액으로 인해 도민의 기호는 점차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게 되어 관료가 더욱 확대 개척되게 되었다는 것을 알면 지방 인사는 이것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어 오히려 운백은인의 이주 발상지로 삼아 해외무역의 단서를 여는 것이다. 사카이 세관의 개시 이래 무역액을 통해 153,736여 엔 중에서 울릉도는 실로 123,000여 엔에 이르고 동도가 사카이미나토를 개항장으로 유지하는 일대 세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외교의 호기를 노려 러시아라고 해서 겁먹고 숨죽이고 있다고 한다면 경제력을 더욱 증진해야 함에 도대체 시마네·돗토리의 목민관은 과연

당국 대신에 외교 자료가 될 만한 울릉도·사카이 양쪽 관계의 조서를 제공한 일이 있는가...그렇지만 외교의 결과에 의해 운백은인은 일종의 보안조례에 의하여 이달 말일까지 퇴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지방의 해외사상을 좌절시키는 일로 장래 무역액 오만 엔을 달성하지 못하고 개항을 폐쇄당하는 불행을 보는 것이 필연적일 것이다.<sup>28</sup>

『산음신문』은 울릉도에서 일본인이 퇴거하면 사카미미나토가 폐쇄될 수밖에 없고 울릉도를 일본인 이주의 발상지로 개척에 매진해야한다고 적극 주장하였다.<sup>29</sup>

〈표 1〉 울릉도 수출 조사표

품명	1904년		1905년	
	수량(石)	가격(圓)	수량(石)	가격(圓)
콩	3,079	21,553	3,188	20,723
보리	480	2,160	321	1,284
물푸레나무	94,224(才)	3,297	153,035	6,886
솔송나무	70,151	2,104	13,140	394
오징어	1,707	1,707	1,499관	1,499
강치가죽	800	600	800관	700
강치기름	2(石)	26	83상자	124
합계	17종	35,476	21종	71,685

〈출전〉 奥原碧雲, 1906, 『竹島及鬱陵島』, 75~77쪽.

1904년 울릉도에서 일본으로 수출된 품목은 콩, 보리, 물푸레나무, 솔송나무, 오징어, 강치가죽과 기름이었다. 1906년 울릉도를 시찰한 오쿠하라 헤키운은 당시 울릉도 상거래는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콩으로 교환한다고 하였다.

28 『山陰新聞』, 1899년(明治32) 11월 14일.

29 허영란, 2016, 「19세기말~20세기 초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과 독도 영유권 문제」, 『동북아역사논총』 13호, 239~240쪽.

주요 수출품은 콩, 보리, 목재, 오징어이며 수요 수입품은 쌀과 목면이다. 어떤 것도 관세가 필요없다. 재류 일본인이 범선 여러 척을 소유하여 수출 입품 운송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상거래는 현금을 사용하지 않으며 콩을 표준으로 교환한다.<sup>30</sup>

울릉도는 콩을 기준으로 일본인과 거래하였다. 울릉도 콩 수출량은 1896년 4,437엔, 전체 울릉도 수출액의 69%, 1897년 27,138엔, 69%, 1898년 27,609엔, 70%, 1904년 21,553엔으로 울릉도 수출액의 60~70%가 콩이었다.〈표 1 참조〉

울릉도에서 일본인 오징어어업이 성행하기 이전 울릉도의 주요 수출품은 콩이었다. 1905년 전쟁 특수로 물푸레나무의 수출액이 증가하였지만 콩 수출액은 3,188석, 20,723엔으로 주요 수출품은 콩이었다. 울릉도인들은 콩을 재배하였고 콩은 사카이항으로 판매하기 위해 재배되었다.

〈표 2〉를 참고로 하면 1896년 이후 사카이미나토 수입량의 60~70%는 콩이었고 울릉도에서 수입된 것이었다.

〈표 2〉 사카이미나토의 수입과 거래량

(단위: 엔)

	1896년	1897년	1898년
콩	4,437	27,138	27,609
보리	1,908		
쌀		1,793	
곡류	86	1,472	1,007
말린 열치			1,487
목재			1,082
기타		8,879	5,952
합계	6,431	39,282	37,137

〈출전〉 鳥取縣, 1900, 『鳥取縣勸業沿革』, 214쪽

30 奥原碧雲, 1907, 『竹島及鬱陵島』, ハーベスト出版, 74쪽.

일본 상인들은 울릉도의 값싼 콩과 나무를 구입하기 위해서 울릉도를 매년 왕래하였다. 사카이미나토 상인들은 “국익을 위해, 지역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도 좋다. 어떻게든 해야 한다”며 울릉도 산물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발을 주장하였다. 사카이미나토를 근거지로 한 일본인의 상업 활동으로 울릉도는 일본시장에 콩이나 오징어 등 단일상품을 판매하는 식량 생산기지로 발전하였고 산음지역의 식량 공급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 IV. 돗토리현의 조선어업 장려책과 강원도 어장 진출

### 1. 근대 돗토리현의 어업정책

근대 일본은 외국으로부터 어업 기술과 수산 제도를 도입해 수산제도를 정비하였다. 어선을 개량해 어장 확대를 모색하고 선진어구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근해어장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조선어장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군사적 측면에서 ‘조선 수로를 익히고 유사시 해군 수병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일본어민이 개발해야 할 어장으로 인식되었다.<sup>31</sup> 일본은 1897년 「원양어업장려법」을 제정해 조선어장으로 출어하는 선박과 종사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조선어업협회」(1897년),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1900년), 「조선해수산조합」(1903년)을 설립해 일본인 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조선연안에 일본인어촌 건설을 계획하였다.<sup>32</sup>

돗토리현은 1887년(명치20) 현령(縣令) 49호 어업조합규칙을 발표하고 근해어장 개발을 목표로 농상무성 기사를 초빙해 어업 방법과 제조 기술을

31 關澤明清·竹中邦香, 1893, 『朝鮮通漁事情』, 東京團々社書店, 6쪽.

32 김수희, 2010, 『근대일본어민의 한국진출과 어업경영』, 경인문화사; 김수희, 2014, 「일본식 오징어어업의 전파과정을 통해서 본 울릉도 사회의 변화과정」, 『대구사학』 115, 266쪽.

전수하고 인백사립수산공진회(因伯私立水産共進會)를 개최해 어구, 제조, 양식업 등 수산업에 관한 기술을 보급하였다. 오카야마(岡山), 이와테(岩手) 등에서 발달한 소규모 어구를 전수하였고 오이타(大分), 아마구치(山口) 지역에서 발달한 어선을 신조해 어선 개량 사업을 추진하였다.<sup>33</sup>

아마구치와 오이타에서 도입된 어선은 어깨 폭 9척(나중에 1장 남짓), 깊이 3척(나중에 5척 이상) 정도로 규모가 크고 회전을 막기 위해 돌을 가마니에 담아 양현(兩舷)에 매달아 배의 움직임을 적게 한 어업용 어선이었다.<sup>34</sup> 이 어선의 특징은 내구성이 강해 파도에 잘 견디며 파도를 막기 위한 갑판이 있었는데 이 어선을 돛토리현에서는 「이나바선(因幡船)」이라고 하였다. 이나바선 개량 과정은 1890년 1월 발행한 『鳥取縣勸業雜報』 제14호에 기록되어 있다.

어선 개량의 의도는 원양에 있는 것처럼 1891년 사무공정(事務功程)에는 ‘현에 있는 사가노세키(大分縣 佐賀關) 어선은 오키국 근해에 출어하여 도미어업에 사용하였고 좋은 결과가 있어 어민의 관심을 야기하는 것이 적지 않다’고 한다. 명치 23년(1890)에는 요도에정(淀江町) 오타이치타로(太田市太郎)가 북해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와사키선(改良河崎船-三重)을 참고로 개량어선을 신조하고 8, 9월경부터 상어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오타이치타로의 개량어선에 대해서는 명치24년 사무공정에도 기재하고 있다.<sup>35</sup>

돛토리현은 1890년 어선 개량 사업을 시작하였고 1893년 조선어장으로 돛토리어민을 파견하였다. 1893년 7월 12일자 『산음신문』과 1894년 3월 25일자 『대일본수산회보』에는 출어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sup>36</sup>

33 鳥取縣內務部, 1900, 『鳥取縣勸業沿革』, 3쪽.

34 요시다 케이이치 지음, 박호원·김수희 번역, 2019, 『조선수산개발사』 민속원, 307쪽.

35 鳥取縣, 1969, 『鳥取縣史』, 近代 第3卷 經濟編, 407~408쪽.

36 『朝鮮近海漁報告』 『大日本水産會報』 제141호, 1894년 3월 25일, 48~61쪽.

당시 1893년 돗토리현에서 조선어장으로 진출한 사람은 다케다코우조우(竹田虎藏) 27세, 시마자카하우조(島崎正藏) 32세, 타카하시 히찌조우(高橋七藏) 26세, 이와스기 키요마(岩喜代松) 22세, 다카하시 큐우헤이(高橋久平) 50세, 아라키타쓰지(荒木辰治) 53세가 개량어선을 타고 출어하였다. 이들은 개량선을 만든 아마구치 타마우라(玉江浦)에 가서 조선어장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수로 안내자를 고용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이 타마우라에서 들은 정보는 조선해 출어는 음력 8월부터 12월까지로 상어잡이, 정월에 일시 귀국하여 다시 1월 하순부터 도미잡이를 하고 4월 10일경 귀국한다. 이후 음력 7월까지 큰 어선은 출어하지 않고 작은 배로 출어한다. 이 경우에도 10~20일간 쓰시마의 적당한 항구에 들어가 어획물을 판매한다. 조선해 어업은 조류가 크게 좌우하므로 쓰시마에 가서 고등어잡이나 오징어잡이를 하고 음력 7월 하순까지 조류 상태를 보고 조선에 가서 상어잡이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다. (생략) 개량선은 견고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지붕에 뜬을 덮어썩워 무사한 것에 대해 어민들은 매우 놀랐다.

1893년 돗토리현 어민 6명은 아마구치 현 타마우라(玉江浦)로 가서 조선 출어 정보를 듣고 안내인을 고용한 후 조선어장으로 출어하였다. 태풍을 만나도 이바선은 안전해 피해가 없었으나 열악한 환경으로 각기병에 걸려 조업할 수 없었고 조선인과의 분쟁이 두려워 어업을 포기하였다. 돗토리 현은 ‘조선어장은 하늘이 준 이익을 거두고 쇠퇴의 길로 기울어져 가는 어촌을 회복’할 수 있다며 조선어장 출어를 적극 장려하였지만 영세한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장은 아니었다.<sup>37</sup>

1903년 돗토리현은 조선어장 출어를 장려하면서 멀치, 명태, 도미, 삼치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돗토리현내 이와미군(岩美郡), 사이하쿠군(西伯郡), 케타카군(氣高郡), 토우하쿠군(東伯郡) 4개 지역에서

37 『돗토리현권업잡보(鳥取縣勸業雜報)』, 1894년.

출어하였다.<표 3 참조>

<표 3> 돗토리현의 조선어업 보조사업

		어업	출어지	보조금(원)
1903년	岩美郡 1조	삼치·멸치어업	한해	1,500
	西伯郡 1조	삼치·멸치·방어어업		
1904년	岩美郡 1조	삼치·멸치어업	〃	1,250
	西伯郡 1조	삼치·멸치어업	〃	1,250
1905년	岩美郡 1조	도미·명태어업	〃	625
	西伯郡 1조	삼치·멸치·방어어업	〃	1,250
1906년	氣高郡 2조	멸치어업	〃	524
	〃	도미·방어어업	〃	308
	東伯郡 2조	도미·방어어업	〃	821
	西伯郡 1조	삼치·방어어업	〃	500
1907년	氣高郡 2조	멸치어업	〃	780
	〃	도미·방어어업	〃	128
	東伯郡 3조	멸치어업	〃	588
	〃	도미어업	〃	602
1908년	西伯郡 1조	삼치·방어어업	한해	400
	氣高郡 2조	도미·상어어업	한해	622
	東伯郡 3조	멸치어업	〃	1,694
	〃	도미·상어어업	관동주	
1909년	鳥取縣水産組合			2,615
1910년	〃			5,000

<출전> 鳥取縣, 1969년 『鳥取縣史』 近代3卷 經濟篇, 417~418쪽.

러일전쟁이 끝나자 돗토리현은 1906년 한해어장탐험비보호규정(韓海漁場探險費補助規程)을 마련하고 1909년 조선어장에 일본인어촌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오키도에서도 이나바선과 같은 개량형 어선이 보급되자 1902년경부터 울릉도 진출이 시작되었다. 오키도는 에도시대부터 오징어어업이 발달한 곳으로 오징어가 진상품으로 진상되었던 곳이다. 메이지유신 이후 현

금수입원이 없는 오키도에서 오징어가 중심산업으로 부각되면서 오징어는 오키도 어업생산량의 70~80%를 차지할 정도로 발전하였다. 오키도는 오징어가 유일한 산업이었고 오징어 생산량이 오키도 경제를 좌우하였지만 난획현상으로 매년 생산량은 불규칙하였다.

당시 오키도 어민들은 별목노동자로 고용되어 울릉도를 왕래하였지만 울릉도로 건너갈 어선이 없었다.<sup>38</sup> 연안에서 오징어어업에 종사한 오키도 어민들은 시마네현이 보급한 개량형 어선을 타고 울릉도어장으로 진출하였다.<sup>39</sup> 오키도에 도입된 어선은 야마구치현(山口縣) 상어잡이용 어선을 개량한 어선으로 그 도항 과정은 1897년 2월 18일 『산음신문(山陰新聞)』 「조선 죽도탐험(朝鮮竹島探險)」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다.

작년 수산업 관계로 오키도 각 어촌을 돌아다녔을 때 마침 다케시마(울릉도) 출범에 관한 말이 있었다. 나는(鳥根縣수산기사 佐藤狂水) 전부터 원양어업의 필요성을 느껴 항상 어민을 유도하려고 하였으나 아직 그 일을 제대로 못한 것을 애석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제 단서를 잡으려는 마음에 반갑게 그 말에 찬성하여 열심히 준비에 착수하였다. (생략) 이 지역(울릉도)은 메이지 23년(1890) 일본 조선 양국이 약조한 통어규칙 범위에 있으므로 우리나라 어선은 해당 규칙에 의해 출어함으로 어업상의 큰 이익을 보고 있다. 특히 일본해에 고립한 우리현과 가장 가까운 편리함이 있으니 다른 큐슈(九州)와 비할 바가 아니다.<sup>40</sup>

시마네현 수산기사 사토 교스이(佐藤狂水)의 지도아래 1896년 오키도 지부리군(知夫郡) 우기촌(宇賀村) 어민이 개량형 어선을 타고 울릉도로 출발하였다. 이 도항으로 개량형어선의 안전 조업이 확인되었다.

38 김수희, 2014, 「일본식 오징어어업 전파과정을 통해서 본 울릉도 사회의 변화과정」 『대구사학』 115.

39 「殖産協議會整理案」, 『新修鳥根縣史』史料篇(中), 555쪽.

40 「朝鮮竹島探險」, 『山陰新聞』, 1894년 2월 18일.

1899년 러시아가 일본인 벌목에 항의하고 조선 정부가 울릉도 일본인들의 철수를 요구하자 일본은 거주권을 주장하며 울릉도어장 개발에 착수하였다. 1902년경 울릉도에서 오징어조업이 시작되어 오키도 오징어 어민에 의한 진출 러시가 시작되었다.<sup>41</sup> 이 과정에서 1903년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시작한 오키도 어민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는 1904년 9월 29일 「리양코도 영토 편입 및 대하원(リヤンコ島並ニ貸下願)」을 내무대신 요시카와 아키마사(芳川顯正), 외무대신 고무라 슈타로(小村壽太郎), 농상무대신 기요우라 게이코(清浦奎吾) 3대신에게 제출하였다. 그는 리양코도(독도)는 오키열도로 부터 157Km, 울릉도 동남 102Km에 있고 일본에서 울릉도를 거쳐 강원도와 함경도 지방으로 가는 항로에 위치하고 있으나 ‘완전히 방치된 무인도로 영토 소속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일본 영토로 결정하고 자신에게 10년간 불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편입원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일본은 내무대신 요시카와 겐세이(芳川顯正)는 37秘乙 제337호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을 1905년 1월 10일 내각총리 대신 카츠라 타로(桂太郎)에게 제출하였다. 이때 일본 내무성은 ‘완전히 방치된’ 섬이라며 경위도와 오키도와의 거리만을 언급하고 독도 이름 리양코도를 삭제하였다. 일본정부는 무인도 발견을 강조하기 위해 울릉도와의 거리, 독도의 이름을 삭제하고 ‘완전히 방치된 무인도’라며 각의에 제출하였다.<sup>42</sup>

1905년 1월 28일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법제국장관(法制局長官)·외무대신(外務大臣)·대장대신(大藏大臣)·해군대신(海軍大臣)·문부대신(文部大臣)·체신대신(遞信大臣)·내무대신(內務大臣)·육군대신(陸軍大臣)·사법대신(司法大臣)·농상무대신(農商務大臣) 총 13명의 대신이 서명을 하고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불법 편입하였다. 전 근대기 돛토리 요나고 어민이 서북해항로가 개발되자 울릉도 이름을 기죽도에서 죽도로 명칭 변경해 울릉도 이익을 독점했

41 김수희, 앞의 논문, 272쪽.

42 김수희, 2014,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와 독도 강점」, 『독도연구』,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이 오키도 주민 나카이 요자부로도 오키도 오징어 어민들의 울릉도 도항 러시가 시작되자 1904년 독도가 '완전히 방치된 무인도'라며 영토편입원을 청원하고 독도어장을 독점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개인의 탐욕을 이용해 울릉도 독도 침탈을 지속하고 있었다.

## 2. 돗토리현 어민의 강원도와 거문도 진출

돗토리현은 조선어장과의 거리가 멀고 어업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어장 진출은 매우 저조하였다. 1903~1905년까지 조선어장에 진출한 일본어선은 1,589~2,449척, 출어민은 6,187~10,853명이었으나 1905년까지 돗토리현에서 출어한 어민은 단 2명밖에 없었다.

원양어업 장려를 위해 현비 보조에 의한 어장 탐험을 재촉했지만 메이지 36년(1903)부터 동 38년(1905)까지는 여기에 종사하는 자는 매년 2명으로 삼치(鮚), 정어리(鯷), 방어(鱒), 명태어업에 지나지 않았다. 메이지 39년(1906)부터는 보조 규정을 정해 그 어업종류를 상어망, 도미연승, 삼치, 정어리, 까나리(玉筋魚) 지에망으로 한정해 몇대로 여러 종류에 관계하는 것을 막고 또 어구의 구조 및 그 설비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보조하는 방침을 취해 축진시킨 결과 동년도(1907)에는 7명의 출어자를 배출하기에 이르렀다. 금후로 더욱 장려에 게을리 하지 않으면 더욱더 큰 발달을 볼 수 있을 것이다.<sup>43</sup>

이 어민들은 오쿠다 카메조(奥田龜藏)와 오야마 미츠마사(小山光正)로 추정된다. 이들은 8척견(八尺肩) 어선 2척, 5척견(五尺肩) 어선 1척 전부해서 3척 15명은, 연승 30묶음, 도미, 방어 일측(一側), 수조망(手操網) 1통, 오징어 낚시 도구 10인분, 박망등을 싣고 강원도어장으로 진출하였다.

1891년 돗토리현 「사무공정(事務功程)」에는 이와이군(岩井郡) 오오이와무

43 鳥取縣, 1907, 『因伯記要』, 28쪽

라(大岩村) 오쿠다 주조(奥田周藏)가 멸치건착망(イワシ沖取網) 조업으로 정어리 200관을 어획했다는 기록이 있다.<sup>44</sup> 다른 기록에는 오쿠다 카메오(奥田龜藏)가 1891년 멸치건착망 조업을 했고 1898년 코우베(神戸)시에서 개최된 제2회 수산박람회 돛토리현 대표로 참가한 후 조선어장 출어를 결심했다고 기록하였다. 1891년 멸치건착망 어업에 종사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오쿠다 주조(奥田周藏)와 오쿠다 카메조(奥田龜藏)는 동일 인물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쿠다는 1891년부터 멸치 건착망 어업을 경영한 어업자본가로 1898년 제2회 수산박람회 이후 강원도어장으로 진출한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모래사장이 발달해 해안 가까이 몰려오는 멸치떼를 잡는 조선인 후릿그물어업이 발달한 곳으로 강원도어민들의 생업적 어업이었다. 이들의 강원도 진출 상황은 1902년 『출어일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오쿠다는) 6월 10일 광포(曠浦)에서 도미 지예망을 시험해 보려고 하였으나 '한인이 저항하며 듣지 않았다', 29일 안목진(安木津)에 상륙해 가설한 창고에는 '한인 수백명이 창고 주위를 둘러싸고 햇불을 켜 낮과 같이 하고....어서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는 험악한 사태에 직면하였다. 7월 5일 양양에서는 군수가 와서 '통어장정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내가 통어를 거절한다. 적절히 경성에서의 명을 기다려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통고하여 어업을 거절하였다. 거진에서도 '체류를 거부한다. 24일 거진에서도 군수가 퇴거를 요구하였다.<sup>45</sup>

강원도 어민들은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며 항의하였고 강원도 군수들은 일본 어민에게 어장을 떠나라고 통보하였다. 강원도 어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한 오쿠다 카메조는 일본 영사를 찾아갔고 강원도 어민과 상업적 관계에 있는 상인 나츠메 이치지로베에(夏目市郎兵衛)를 소

44 앞의 책, 『鳥取縣史』, 410쪽.

45 奥田龜藏, 『明治35年韓國東北海岸漁業探檢出稼日記』(이와미정 교육위원회편, 『고향인물지』 1898년 소개됨)

개받았다. 오키다는 나츠메의 소개로 강원도 어장 이용을 허락받았는데 이것은 강원도어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유리한 방법’이었다. 오키다와 강원도 어민이 체결한 계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마을 어민과 오키다는 협동어업에 종사한다(조선인 출자 노력 16인, 오키다 출자 노력 14인). 멸치 건조는 촌민이 부담하고 그 제품은 조선인과 일본인이 절반으로 나눈다.
- ② 방어, 삼치 어획물 중 10분의 3은 조선인에게 주고 10분의 7은 일본인이 갖는다.
- ③ 마을 연안 외의 장소에서 어획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분배도 주지 않는다. 또한 다른 곳에서 잡은 어획물을 해안에 가져와 건조하는 일에서 일본인은 한국인에게 어떠한 보수도 주지 않는다.<sup>46</sup>

후릿그물어업은 육지로 어구를 양육해 어획하는 방법으로 해류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어군을 위협하면 멸치가 연안 가까이 오지 않는다. 오키다는 강원도어장을 이용하기 위해 강원도 어민에게 어업자금을 대여하고 강원도 어민과 협업하는 조건으로 강원도 어장을 차지하였다. 이후 그는 강원도 장전만 영진에 자본금 150만엔의 수산회사를 설립하고 ‘조선의 수산왕’으로 성장하였다.

한편 오야마 미즈마시는 오키다 카메쥬와 함께 조업하였지만 조업 중 귀향하였다.<sup>47</sup> 그 자세한 경위가 『산음신문』에 기록되어 있다.

한국 각지를 탐검한 니시하쿠군(西伯郡) 요나고정 오야마 미즈마시(小山光正)씨는 이번 여름에 오랫동안 경성에 있으면서 하야시 공사와 상의한 일이 있고 근자에 귀국했다가 다시 상경하여 당국자와 상의하여 결국 모도(某島)

46 「江原道漁業調査」, 『朝鮮海水産組合月報』 14號, 1910年 2月, 10쪽.

47 나이토 세이쥬, 앞의 책, 369쪽.

에 대하여 사실상의 점령을 이루어 어업자를 이주시키는 계획으로 이번 가을 초에 20여호만 이주시켜 크게 한국어업의 면목을 개조한다는 각오로 목하 선량한 어부를 모집 중이다.<sup>48</sup>

러일전쟁 당시 일본은 러시아군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 도서와 연안 지역에 요새를 구축하고 일본군의 활동을 지원할 어민들을 파견하였다. 도서와 연안 지역에 군인을 배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민을 파견해 군사적 활동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오야마 미츠마사가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로부터 파견 명령을 받은 곳은 거문도였다.

이곳은 1885년 4월~1887년 2월까지 영국의 동양함대가 점령한 장소로 대한해협에 관문이었다. 일본은 거문도 서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어민 오야마를 배치해 러시아의 동태를 감시하였다. 어민 오야마는 러시아 발트함대가 대서양, 인도양을 지나 대한해협에 진입하는 것을 거문도 전월산성에서 목격해 사세보 해군 기지로 타전하고 러시아 발트함대의 진입소식을 알렸다.<sup>49</sup>

이와 같이 돛토리현 어민의 조선어장 진출은 영세어민들의 진출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정책에 부응한 군사적 측면이 강하였다. 강원도와 거문도 어장에 군사적 목적으로 진출하였고 일본정부가 적극 개입해 조선인들의 반대를 제거하였다. 돛토리현 어민의 조선어장 진출은 전략적으로 중요 지점을 확보하고 점령하는데 있었다.

## V. 맺음말

울릉도 영유권을 둘러싼 울릉도쟁계는 돛토리현이 울릉도·독도가 자신

48 『山陰新聞』, 明治37年 9月 14日.

49 김수희, 2015, 『근대의 열치, 제국의 열치』, 129~130쪽.

들이 영토가 아니라고 명확히 부인함으로써 해결되었다. 막부는 「죽도도해금지령」을 내려 해운업자들의 진출을 금지한 것은 산음지역 해운업자들의 울릉도 출입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막부는 독도를 확인하였고 독도를 포함한 죽도도해금지령을 내렸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중심으로 죽도도해금지령의 의미를 오키도와 울릉도·독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7세기 돗토리번 미호노세키는 오키도를 근거지로 왕래하는 해운업자들의 상업 근거지였다. 막부의 경제 부흥책으로 미곡지대의 연공미 운반과 지역 간 주요 토산물 운반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에도와 오사카 항로에는 해운업자들이 폭주하였고 서북쪽으로 가는 해운업자들은 교역의 장소로 이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카이미나토를 근거지로 활동한 해상운송업자 오야·무라카와 양가는 울릉도 명칭을 기죽도에서 죽도로 변경하고 「죽도도해」 사업을 시작하였다. 돗토리번과 막부 노중들의 협력으로 목적지가 기재된 주인장(朱印狀) 대신 돗토리번주 앞으로 외국도해를 허가하는 「죽도도해면허」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조선 정부의 항의로 죽도가 울릉도이고 송도가 독도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막부는 돗토리인의 울릉도·독도 도항을 금지하는 「죽도도해금지령」을 내렸다.

둘째, 조선개항 이후 동해항로의 중심지 돗토리 사카이미나토에서 매년 300~400명이 울릉도로 출발하였다. 이들은 불법으로 벌목작업을 하였고 콩과 나무를 사카이미나토로 운반하였다. 울릉도는 오키도, 부산, 장기등과 연결되었으나 대부분의 물품은 사카이미나토로 운송되었다. 1900년 이전 사카이미나토 무역량 80% 정도가 울릉도와의 무역으로 돗토리인들은 “국익을 위해, 지역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도 좋다”고 적극적인 울릉도 개척을 요구하였다.

1902년경 오키도 오징어 어민들의 울릉도 진출 러시가 시작되고 울릉도 오징어 어장이 개발되자 울릉도는 사카이미나토 상인들의 상업지역에서 오키도 오징어 어민들이 거주하는 어촌으로 변화하였고 사카이미나토에 오징어를 공급하는 어촌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셋째, 러일전쟁기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면서 울릉도·독도가 조선침략의 본거지로 이용되었다. 울릉도 오징어어장 개발로 오키도어민들의 진출이 시작되자 1904년 어민 나카이 요자부로는 「리양코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リヤンコ島領土編入並び貸下願)」을 일본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카이 요자부로는 독도가 '완전히 방치된 무인도, 영토 소속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무주지'라며 일본 영토로 결정하고 자신에게 10년간 불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일본은 나카이의 요청에 따라 독도가 무주지임을 나타내기 위해 울릉도와의 거리, 리양코도 이름을 삭제하였고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전 근대기 돛토리 요나고 어민이 오키도를 근거지로 한 서북해 항로를 개발하자 울릉도 이름을 「죽도」로 변경하고 울릉도를 독점했듯이 오키도 주민 나카이 요자부로도 1902년 오키도 오징어 어민들의 울릉도 도항 러시가 시작되자 1904년 독도가 '완전히 방치된 무인도'라며 영토 편입원을 제출하였다. 일본정부는 개인의 탐욕을 이용해 동해상의 울릉도·독도를 '송도', '죽도' 또는 '리양코도' 또는 '무주지 발견' 등으로 변경하고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 김호동, 2018, 『동해와 독도』, 지성인.
- 나이토 세이쥬, 2005, 『독도와 죽도』, 제이앤씨.
- 박병섭, 2009, 『한말 울릉도·독도어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송병기, 2007,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출판부.
- 윤유숙, 2016, 『근세 조일(朝日)관계와 울릉도』, 해안.
- 정성일, 2013, 『전라도와 일본』, 경인문화사.
- 정영미, 2015, 『일본은 어떻게 독도를 인식해 왔는가』, 한국학술정보.
- 김수희, 2012, 「일본식오징어어업의 전과 과정을 통해서 본 울릉도사회의 변화 과정」, 『대구사학』 115.
- \_\_\_\_\_, 2015, 「19세기 일본 산음지방의 울릉도·독도 기록과 ‘송도개척론(松島開拓論)’」, 『독도연구』 19.
- 박병섭, 2010, 「일본인의 제3차 울릉도 침입」, 『한일관계사』 35집.
- 장순순, 2012, 「17세기 조일관계와 ‘鬱陵島 爭界’」, 『역사와 경계』 84.
- \_\_\_\_\_, 2012, 「조선후기 대마번의 조선 교섭과 1693년 울릉도 영속시비」, 『동북아역사논총』 37.
- 「朝鮮近海出漁報告」 『大日本水産會報』第141號, 1894年 3月 25日.
- 『朝鮮海通漁組合聯合會報』 第4號, 1903.
- 小泉法道居士, 1900, 『境港獨案内』, 境町(鳥取縣).
- 鳥取縣內務部第四課, 1900, 『鳥取縣勸業沿革』.
- 鳥取縣, 1907, 『因伯記要』.
- 鳥取縣水産組合, 1909, 『鳥取縣水産組合 韓海漁場調査報告』.
- 面谷友太郎, 1917, 『境港要覽』.
- 外務省記錄 3824, 「日本國蔚陵島 犯禁渡航 日本人引戻處分一件」, 『蔚陵島出張復命書』.
- 鳥取縣, 1969, 『鳥取縣史』, 近代 第3卷 經濟編.
- \_\_\_\_\_, 1971, 『鳥取藩史』5권 民政志.
- 兒島俊平, 1988, 「隱岐島漁民ノ竹島(鬱陵島)行」, 『郷土石見』 21.
- 小村貳, 1992, 『近世日本海海運と港町の研究』, 國書刊行會.

內藤正中·眞田廣幸·日置 左門, 1997, 『鳥取縣の歴史』, 山川出版社.

米子市, 2007, 『米子市史』 제3권.

錦織勤, 2012, 『古代中世の因伯の交通』.

松尾壽外, 2012, 『鳥根縣の歴史』, 山川出版社.

內藤正中, 2017, 『鳥取縣の歴史』, 山川出版社.

### 국문초록

17세기 돗토리번 미호노세키는 오키섬을 근거지로 왕래하는 해상운송업자들의 상업근거지였다. 막부의 경제 부흥책으로 미곡지대의 연공미 운반과 지역 간 주요 토산물 운반이 활발해지자 에도와 오사카 항로에는 해상운송업자들이 폭주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카이미나토항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해상운송업자 중 오야 무라카와 양가는 울릉도 명칭을 기죽도에서 죽도로 명칭 변경하고 울릉도 도해 사업을 시작하였다. 막부는 목적지가 기재된 주인장(御朱印)을 대신 돗토리번주 앞으로 외국도해를 허가하는 「죽도도해면허」를 발급하였다. 막부는 1620년 울릉도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을 처형해 조선과의 약속을 이행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1625년 돗토리 상인들의 울릉도도항을 허가하였다. 그러나 안용복 납치 사건으로 울릉도 쟁계가 발생하자 막부는 돗토리인의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는 죽도도해금지령을 내렸다.

러일전쟁기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면서 일본은 울릉도를 조선침략의 본거지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러일전쟁기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면서 오키섬 오징어 어민은 울릉도로 이식되면서 오키섬 오징어 어민은 울릉도로 이식되었고 시마네현 강치어민 나카이 요자부로는 「리앙코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リヤンコ島領土編入並び貸下願)」을 일본 정부에 제출해 독도를 불법 점거하였다. 전근대기 돗토리 상인들은 오키도를 근거지로 한 서북해 항로가 개발되자 울릉도 명칭을 변경해 「죽도도해」사업을 하였고 근대기 시마네현 어민 나카이 요자부로는 ‘완전히 방치된 무인도, 영토 소속이 정해져 있지 않은 섬’을 일본영토로 변경한 후 어장을 독점하였다. 일본은 1696년과 1837년 2차례의 「죽도도해금지령」과 태정관지령문(1877년)을 내려 공식적으로 울릉도·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근대기 개인의 탐욕을 이용해 울릉도와 독도를 분리해 독도를 일본영토로 불법 편입하였다.

〈주제어〉

기죽도, 죽도, 사카이미나토, 해상운송업자, 오키도, 오징어 어민, 「죽도도 해면허」

ABSTRACT

The Advancement of Tottori Prefecture to East Sea, Ulleungdo and Dokdo

Kim Soo-hee  
(Dokdo Foundation)

In the seventeenth century, Tottori Domain(鳥取藩) Mihonosekki was a commercial base for maritime transporters who traveled to and from Oki(隠岐) Island. As the Shogunate's economic stimulation initiatives promoted transportation and trade of rice and local products between the regions, maritime carriers rushed into the Edo(江戸) and Osaka(大阪) routes. In this process, Oya and Murakawa(大谷·村川), marine transporters based on Sakaiminato Port(境港), changed the name of Ulleungdo(鬱陵島) from Iso-Takeshima(磯竹島) to Takeshima(Jukdo-竹島) and started the "Crossing to Takeshima Sea(竹島渡海) Project." Accordingly, the Shogunate issued a "Crossing Takeshima Island Sea Licensing(竹島渡海免許)" that permits foreign voyage to Tottori Province instead of the Red Passport(御朱印), which listed specific destinations. In 1620, the Shogunate executed a Japanese resident in Ulleungdo and fulfilled his promise to Joseon, while permitting the "Crossing to Takeshima Sea Project" of Tottori merchants at the same time. However, when the "Ulleungdo dispute(鬱陵島爭界:竹島一件)" occurred due to the kidnapping of Ahn Yong-bok, the Shogunate recognized Ulleungdo and Dokdo as Joseon territory and issued a "Banning Ordinance on the Voyage to Takeshima(竹島渡海禁止令)," prohibiting Tottori people's voyage to Ulleungdo and Dok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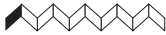
With a rising tendency to secure strategic points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Japan tried to use Ulleungdo as home of its invasion against Joseon. As the movement to secure strategic points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emerged, Oki Island's squid fishers were transferred to Ulleungdo, and the Shimane Prefecture fisherman Nakai Yozaburo(中井養三郎) also submitted a petition of "Liancourt Island Territory Incorporation and Application for Rental(1)ヤンコ島領土編入並び貸下願" to the Japanese government to illegally occupy Dokdo. Just as the former modern Tottori merchants changed Ulleungdo to Jukdo(竹島) Island and carried out the "Crossing to Takeshima Sea(竹島渡海) Project" the Japanese fishermen of Shimane Prefecture, Nakai Yozaburo, also petitioned and attained monopolized fishing rights, insisting that Dokdo was a completely neglected and uninhabited island, an island that did not have any territorial affiliation. Japan officially recognized Ulleungdo and Dokdo as territory of Joseon by issuing two "Banning Ordinance on the Voyage to Takeshima(竹島渡海禁止令)" in 1696 and 1837 and "Daijogan

Ordinance: 太政官指令(1877),” but, on the other hand, Japan utilized the greediness of modern individuals to separate Ulleungdo and Dokdo, and illegally incorporated Dokdo into Japanese territory.

Keywords

Iso Takeshima, Takeshima, Sakaiminato, marine transporters, Takeshima Voyage Project, Oki Island, squid fisherman, Banning Ordinance on the Voyage to Takeshima





# 1948년 독도폭격사건의 인명 및 선박 피해 현황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I. 머리말

1948년 6월 8일 독도에서 폭격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의 인명 피해 현황을 둘러싸고 최근까지 논란이 있었다. 그 폭격으로 14명 또는 16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150명 이상 또는 200명 이상 사망했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다.<sup>1</sup> 1999년 10월 1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및 수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맞아 윤한도 의원이 1948년 독도 폭격 사건으로 200명 이상의 어민이 사망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sup>2</sup> 이

\* 논문 투고일: 2019. 10. 20, 심사 완료일: 2019. 11. 14, 게재 확정일: 2020. 5. 21.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과제 수행 결과임(NAHF-2018-현안연구-25).

1 『세계일보』, 1999년 10월 11일, “미군 48년 독도 연안서 어선 폭격 주장 제기”; 『세계일보』, 1999년 10월 12일, “우리 마을도 …’ 양민 학살 피해 주장 봇물”; 『영남일보』, 1999년 10월 11일, “미군 독도서도 ‘오인 폭격’”; 『영남일보』, 1999년 10월 16일, “48년 미공군 독도 어민 폭격 ‘오폭 아닌 정조준 공격이었다’”; 『한겨레』, 1999년 10월 11일, “미군 48년 독도서 무차별 폭격 어부 150명 실종, 사망”; 『한겨레』, 1999년 10월 13일, “미군 ‘양민 살상’ 어떡했나”; 『경북매일』, 1999년 10월 20일, “미군 양민 학살 독도·의성서도… 수백명 사망·마을 불바다로”.

2 언론에서는 윤한도 의원이 1999년 10월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1948년 독도폭격사건의 200여 명 사망 설’을 제기했다고 기사화되었지만, 1999년 10월 11일자 해양경찰청 및 수협중앙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회

주장이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었다.<sup>3</sup>

1948년 독도 폭격으로 150명 또는 200명 이상 사망했다는 주장이 어떻게 제기되었을까? 1955년 외무부 정무국에서 발간한 『독도문제개론』에는 독도폭격사건을 ‘미 공군기가 폭격 연습을 하느라고 출어 중인 우리 어민 30명을 희생시킨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sup>4</sup> 그런데 ‘30명’이란 숫자가 사망자 수인지 부상자 수인지 아니면 그 둘을 합친 수인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았다. 그 후 ‘30명이 희생’되었다는 말은 ‘30명이 사망’하였다는 의미로 인용되었다.<sup>5</sup>

『독도문제개론』 등에서 기술한 ‘30명’이라는 독도폭격사건의 사망자 수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이 1995년에 제기되었다. 1995년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학생 동아리인 독도문제연구회가 울릉도의 민간단체인 푸른울릉독도가꾸기모임<sup>6</sup>과 함께 독도폭격사건의 생존자들을 찾아내어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그 인터뷰를 기초로 조사 결과 일부를 수록한 자료집 『독도의 어제와 오늘: 독도의 사람들』에는 1948년 독도 폭격으로 “최소한 150~320명 정도의 인원이 희생된 것으로 파악된다”는 주장이 기록되어 있다.<sup>7</sup> 그 주장에 따르면, 폭격 사건 당시 독도 주변 바다에는 80여 척의 선박이 있었는데,

---

의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생각건대 윤한도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때 별도의 자료를 통해 주장한 것이 기사화된 것으로 보인다. 『SBS』, 1999년 10월 11일, “어민폭격 주장” 참고.

3 『매일신문』, 1999년 10월 11일, “울릉 어민도 미군에 피격”; 『문화일보』, 1999년 10월 11일, “미군 48년 독도 인근서 어민 200여 명 학살”; 『영남일보』, 1999년 10월 11일, “미군 48년 울릉 어민 2백여 명 살상: ‘진실 규명’ 국감서 공식 거론”; 『영남투데이』, 1999년 10월 11일, “미군기 폭격으로 울릉 어민 200명 사망”; 『경향신문』, 1999년 10월 12일, “미군 48년 어선 오폭 200여 명 사망, 윤한도 의원 국감 주장”; 『국제신문』, 1999년 10월 12일, “국감자료 주요내용… 미군, 울릉도 어민에도 무차별 폭격”; 『충청투데이』, 1999년 10월 12일, “미군 48년 독도 인근서”; 『신경북일보』, 1999년 10월 12일, “미기 울릉도 어선 폭격 최소 2백명 사망·실종”; 『한국일보』, 1999년 10월 12일, “미군기 6.25때 이리역 오폭 300여 명 사상” 주장 제기”.

4 외무부 정무국, 1955, 『독도문제개론(외교문제총서 제11호)』, 38쪽.

5 한편 외무부 정무국의 『독도문제개론』에는 독도폭격사건이 1948년 6월 8일이 아니라, 1948년 6월 30일 일어났다고 잘못 기록되어 있다. 사건 발생 일자나 사망자 수가 실제와 다르게 기록된 이유는 알 수 없다. 외무부 정무국, 위의 책, 38쪽.

6 이 단체의 명칭은 후에 ‘사단법인 푸른울릉독도가꾸기회’로 변경되었다.

7 독도문제연구소·갤러리아 아트홀, 1995, 『독도의 어제와 오늘: 독도의 사람들』(1995년 8월 24일 ~ 8월 30일), 16~18쪽.

동력선의 경우 1척당 5~8명의 선원이 있어야 조업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 중 대부분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상정하여 '150~320명 설'을 제기한 것이다. 그 주장은 1999년 국회 윤한도 의원의 문제 제기로 이어졌고, 1999년 당시 언론에서도 200명 이상 사망설을 보도하였다. 물론 최근 연구를 보면 사망자가 14명 또는 16명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sup>8</sup> 여전히 150명 또는 200명 이상 사망설이 회자되고 있다.<sup>9</sup>

1948년 독도폭격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을까? 1948년 사건의 인명 피해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는 사망자나 부상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은데도 원인이 있다. 만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명단을 확정할 수 있다면 인명 피해 규모에 대한 의문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첫 번째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를 살핌으로써 사건의 인명 피해 현황을 밝히는 것이다. 그런데 인명 피해 현황을 밝히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1948년 사건의 사망자 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기총 사격 여부, 책임자 처벌 여부 등 이 사건이 여전히 갖고 있는 의문점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논의를 일보 진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이 글에서는 1948년 사건의 선박 피해 현황, 그리고 인명 및 선박 피해에 대한 배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을 밝히기 위해 1948년 독도폭격사건 관련 공적 기록과 언론 보도 등을 검토하였다. 공적 기록으로는 1948년 사건 관련 미군 측 자료, 1948년 국회 회의록 및 경찰의 보고, 1950년 독도조난어민위령비 및 관련

8 홍성근, 2000, 「다시 쓰는 독도폭격사건」, 『외대』 46호(여름),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 교지편집위원회, 124쪽; 홍성근, 2003, 「독도폭격사건의 국제법적 쟁점 분석」, 『독도연구총서』 제10권, 독도연구보전협회, 388쪽; 정병준, 2010, 『독도 1947』, 돌베개, 181쪽, 203쪽 참고; 김응학, 2012, 「증언을 통해 본 1948년 독도폭격사건」, 『독도논총』 제6권 제1호, 88~92쪽; 독도사전편찬위원회 편, 2019, 「독도폭격사건」, 『독도사전(개정증보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74~175쪽.

9 『국민일보』, 2002년 2월 14일, 「미군 폭격 독도 조업 어민 150여 명 사망」; 『TV리포트』, 2005년 6월 18일, 「48년, 미군 독도 폭격으로 어민 200여 명 사망」; 『대구일보』, 2015년 2월 6일, 「1948년 미공군 폭격연습 표적, '어민 150여 명 무고한 희생」.

문서, 그리고 1951년과 1952년 경상북도 보고서 등이 있다. 한편, 필자는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 강원도의 속초시와 동해시(목호읍)를 비롯하여 경상북도 울진군과 영덕군, 울릉군, 그리고 대구광역시 등의 지역을 다니면서 피해자 유족과 인터뷰도 하고 자료 조사도 하였는데, 그 조사 내용도 이 글에서 활용하고자 한다.

## II. 공적 기록상 인명 및 선박 피해 현황

### 1. 미군 측 자료의 피해 현황

1948년 독도폭격사건 직후 주한 미군인 제24군단에서는 사건 관련 특별 조사대와 소청위원회를 조직하여 울릉도와 독도 등 현지로 파견한 바 있다. 이들 조사단의 활동 내용은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간략히 소개되었지만, 조사보고서는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고 있다. 만약 그 조사보고서가 발굴된다면 1948년 사건의 인명 및 선박 피해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건 직후 주한미군 사령관이 극동군 사령관에게 보낸 2건의 전문에서 사건 초기 미군 측이 파악한 인명 피해 현황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문건은 1948년 6월 11일 자로 송부된 것으로 보이는 주한미군 사령관 명의의 전문으로 일본에 있는 극동군사령관에게 보낸 것이다.<sup>10</sup> 그 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 언론의 울릉도(동경 130°55′ - 북위 37°30′)와 관련된 보도에 따르면 6월 8일 24:00시경 미 항공기가 독도 인근 20척의 어선에 폭격과 총격을 가했다

10 Telegram from CG USAFIK to CINCFE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소장자료」: RG 554 Entry A1 1380 (USAFIK Adjutant General, Radio Messages, 1945-1949), Box 193), 국립중앙도서관 해외한국관련기록물 사이트에서는 “RG 554) USAFIK Adjutant General, Radio Messages, 1945-1949) 41. Classified Radios, 1 Jun, 48 - 30 Jun, 48) 100. Telegram from CG USAFIK to CINCFE”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0. 5. 27. 열람).

고 함. 이는 리앙쿠르 암(동경 131° 45′ - 북위 37° 10′)으로 추정되며 16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짐. 김포 공군기지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에 주둔한 항공기가 관여했을 수 없다고 함. 동 사건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본 사령부로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임.

위 전문은 한국의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미 항공기가 20척의 어선에 폭격과 총격을 가하여 인적 피해가 있었는데, 사망 16명, 부상 10명, 실종 9명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 전문이 어떤 언론 보도를 참고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독도폭격사건을 처음 보도한 6월 11일 자 『조선일보』에서와 같이, 사망 16명, 중상 10명이라고 되어 있다.<sup>11</sup> 그런데 위 전문에서 9명이 실종되었다는 내용은 위 『조선일보』 기사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다.<sup>12</sup> 전문의 내용상 실종 9명은 사망 16명과는 별도로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보에 근거한 숫자인지 알 수 없다.

두 번째 문건은 1948년 6월 15일 미 제24군단 사령관 명의로 극동군 사령관에게 보낸 전문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13</sup>

리앙쿠르 암 폭 · 총격 사건과 관련하여 포항동의 미 군정청 요원의 보고에 따르면, 포항동 주민인 생존자들이 귀향하였음. 8명이 심각하게 부상을 당하였고, 21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17명이 피해를 입지 않음. 16명이 사망했거나 실종되었고 그 중 2명의 시신이 수습됨. 23척의 어선이 관련됨. 방첩

11 『조선일보』, 1948년 6월 11일, “국적 불명의 비행기가 투탄 기총 소사: 독도서 어선 파괴, 16명이 즉사”

12 또한 조선일보 기사에는 폭격 사건이 6월 8일 오전 11시 반경에 일어났다고 했으나, 이 전문에서는 6월 8일 24시경에 발생했다고 잘못 적고 있다.

13 Telegram from CG XXIV Corps to CINCFE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소장자료』: RG 554 Entry A1 1378 (USAFIK Adjutant General, General Correspondence (Decimal Files), 1945-1949), Box 141), 국립중앙도서관 해외한 국관련기록물 사이트에서는 “RG 554) USAFIK Adjutant General, Radio Messages, 1945-1949) 30, Incoming Radios G-1, G-2, G-3, G-4, 1 June 1948 - [30] June 1948) 97, Telegram from CG XXIV Corps to CINCFE”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0. 5. 27. 열람).

부대, 보상 담당 및 의료 요원이 폭격 현장으로 이동함. 현재까지 이들로부터 보고받은 바 없음.

이 전문의 내용은 포항에 있는 미 군정청 요원의 보고에 따른 것으로 포항으로 돌아온 독도폭격사건의 생존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sup>14</sup> 6월 15일 자 전문에서는 사망 및 실종을 16명이라고 하고 그중 2명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한다. 그리고 중상이 8명, 경상이 21명이라고 하고 17명이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6월 12일 이후 국내 언론 보도에 나온 사망 및 실종이 14명, 부상 10명과는 차이가 있다.<sup>15</sup> 그리고 위 전문에는 ‘23척의 어선이 관련’되었다고 했는데, 이는 사건 당시 독도 현지에 어선 23척이 있었다는 의미로 보인다. 한편 미 제24군단 사령부에서는 6월 13일 독도 현지로 구조 및 조사단을 파견하였는데,<sup>16</sup> 위 전문이 발송된 6월 15일까지는 현장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 2. 한국 측 공적 기록상 피해 현황

### 1) 국회 및 경찰의 조사 보고서

1948년 6월 8일 독도폭격사건 당시는 우리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었지만, 그해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개원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1948년 6월 15일 제11차 국회 본회의에서 이 사건은 ‘울릉도 어선 피습의 건’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차원의 대책이 논의되었다. 그 회의에서 김장열

14 포항동 주민 생존자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울진군 등에 거주하는 생존자 김태홍, 최만일, 최춘삼, 김대진 등 4명이 10일 부산행 운수부 연락선으로 포항에 귀환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이들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경향신문』, 1948년 6월 13일, “누구의 악의인가, 독도 포격사건 피해 막대”; 『남선신문』, 1948년 6월 13일, “울릉도 사변 속보, 기의 표식도 본체 만체, 고의로 기총으로 맹사, 김태홍 씨의 생환 담”

15 『남선신문』, 1948년 6월 12일, “동조선 절해 고도의 참극, 정체 불명 편대 비기 내습, 출어선에 기총소사(호외 재륙)”; 『동아일보』, 1948년 6월 12일, “소속 불명의 비기, 어선을 폭격 소사, 사상 20여, 11척 침몰”; 『조선일보』, 1948년 6월 12일, “독도폭격 현지 속보, 민심에 큰 충격, 어선 침몰만 23척, 사상 24명” 등

16 『경향신문』, 1948년 6월 15일, “조사단 급파, 미 당국 조사 중”; 『조선일보』, 1948년 6월 15일, “미군 조사대 파견” 등

의원은 취지 설명에서 ‘자신이 아는바’라고 하면서 사건 당시 독도에는 23척의 어선이 조업 중이었으며, 사망 14명, 중상 2명, 경상 8명이라고 했다.<sup>17</sup>

한편 이 회의에서는 표결을 통해 이 사건을 국회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조사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후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어떠한 조사가 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취득한 독도사건에 관한 피해 현황이 국회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1948년 7월 7일 제헌국회 제27차 본회의에 보고된 내용으로, 외무국방위원회에서 경찰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였다. 그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18</sup>

1. 사건발생 일시 및 장소

1948년 6월 8일 오전 11시경, 경북 울릉도 근해 독도 부근에서

2. 피해인원 및 선박

(가) 사망 14명, (나) 중상 2명, (다) 경상 8명, (라) 운반선 2척 격침, (마) 목형 발동선 3척 격침, (바) 선(船) 6척 격침

3. 사건개요

전기 일시, 장소에 국적 불명의 4발 비행기 9대가 비래하여 동도(同島)를 일주한 후 동도(同島) 부근에 화포 채취 차 출어한 어선 15척(승조 총 인원 45명)을 목표로 돌연 종류 불명의 고성능의 폭탄을 투하하는 일방, 기총 소사를 약 20분간 감행하였으므로 출동 선박 및 인원 중 전기와 여한 피해를 몽케 한 후 하처인지 비거하였음.

4. 경찰 조치

급보에 접한 제5관구청 및 소전 울릉도서에서는 즉시 포항, 묵호 양기 지 해안경비 사령관 및 관계당국과 긴급한 연락 협조 하에 해상 조난 구조원을 동원하여 현지에 파견, 구명 작업의 결과, 사체 2를 발견 수용하는 동시 계속 구조 작업 중임.

17 「제1회 국회 속기록 제11호」, 1948년 6월 15일, 4쪽.

18 「제1회 국회 속기록 제27호」, 1948년 7월 7일, 2쪽.

5. 참고사항

전기 소행을 감행한 비행기에는 미군용 마크가 있음을 목격하였다 함.

위 경찰 측 보고에 따르면, 사건 당시 독도에는 어선 15척(어민 45명)이 작업 중이었으며, 그중 사망자가 14명, 부상자가 10명(중상 2명, 경상 8명)이고, 선박 11척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이 자료는 경찰이 1948년 7월 6일 자로 외무국방위원회에 보내온 것이었다.<sup>19</sup>

하지만 이 자료는 최종 보고서가 아니라 1948년 6월 11일경 울릉도 경찰서에서 파악한 사건 현황을 기초로 작성된 보고서로 보인다.<sup>20</sup> 그 이유는 인명 피해 현황의 경우, 6월 15일 제11차 국회 본회의에서 김장열 의원이 설명한 내용과 같다. 또한 보고 내용 중에 경찰의 조치 사항으로 사체 2구를 발견, 수용하고 동시에 ‘계속 구조작업 중’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6월 10일 1차 구조작업으로 시신 2구를 수습하고 연이어 2차, 3차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로 추정된다. 경찰 측 자료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1948년 7월 7일 당시에는 이미 구조 작업과 조사를 끝내고 울진군 등에서는 이미 배상까지 마친 상황이었다.<sup>21</sup> 이 자료가 최종 보고서는 아니지만, 폭격 사건 직후 경찰에서 파악하고 있던 피해 현황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2) 1950년 독도조난어민위령비 및 관련 문서

1948년 사건의 공적 기록으로는 1950년 6월 8일 경상북도에서 독도 현

19 「제1회 국회 속기록 제27호」, 1948년 7월 7일, 2쪽.

20 『경향신문』, 1948년 6월 12일, “정체 모를 비행기, 울릉도 어선 폭격”; 『남선신문』, 1948년 6월 12일, “동조선 철해고도의 참극, 정체 불명 편대 비행기 내습, 출어선에 기총 소사”; 『동아일보』, 1948년 6월 12일, “소속 불명의 비기, 어선을 폭격 소사, 사상 20여, 11척 침몰”; 『자유신문』, 1948년 6월 12일, “독도의 참사, 비기(飛機) 군(群) 어선 폭격 사상, 어선 11척 침몰”; 『조선중앙일보』, 1948년 6월 12일, “모국 비행기 군(群)이 습격, 울릉도 근해서 어선 11척 침몰”.

21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서술하는 “Ⅲ. 3.의 2) 독도 현지 조난자 구조 및 피해 조사 현황” 참조.

지에 건립한 독도조난어민위령비 및 관련 문서도 있다.<sup>22</sup> 1951년 9월 1일 경상북도 지사가 내무부 장관에게 보낸 보고서에는 독도조난어민위령비의 뒷면에 새겨진 독도폭격사건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현재 독도에 세워져 있는 독도조난어민위령비는 2005년에 건립된 것으로 위 문서를 기초로 복원한 것이다. 그 보고서에는 “어민 59명이 18척의 어선에 분승 조업 중” 이었다고 하며, “사망 및 행방불명 14명, 중경상 6명, 선박 파손 4척”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피해 현황이 독도조난어민위령비 에도 새겨졌다.<sup>23</sup> 하지만 이 보고서와 비문에는 사망자나 부상자의 명단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한편 1950년 6월 8일 독도 현지에서 개최된 독도조난어민위령비 제막식 과 위령제에서 경상북도 조재천 지사가 낭독한 제문에도 “고 김중선 군 이 하 59명은 태영환 외 18척의 어선에 분승”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sup>24</sup>

### 3) 1951년과 1952년 경상북도 보고서

공적 기록 중에는 독도폭격사건의 사망자와 부상자 명단이 기록된 문서 도 있다. 그 문서로는 1948년 독도폭격사건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에서 중앙 정부에 보고한 2건의 문서이다. 하나는 1951년 9월 1일 경상북도 지사가 내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문서(이하 1951년 경상북도 보고서)이고,<sup>25</sup> 다른 하나는 1952년 9월 24일 경상북도 지사가 외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문서(이하 1952년

22 1950년에 독도 현지에 건립된 독도조난어민위령비는 그 후 소실되었다가 2015년 독도 수중에서 발견되 어 현재 울릉도의 안용복 기념관에 보관되어 있다. 비석 뒷면의 내용은 닳아서 지워져 있지만 1950년 독도조 난어민위령비 제막식을 위해 작성된 문서를 보면 비석의 내용과 재원이 기록되어 있다. 경상북도 지사가 내 무부 장관에게 보낸 보고서(1951. 9. 1.): 『독도(죽도)에 관한 조사의 건(對 4284년 8월 31일 무전 통첩)』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최재묵·이태우·김도운·김은령 편역, 2017, 『해양 이후 울릉도·독도 조사 및 사건 관련 자료 해제 1』, 학진출판사, 125~146쪽, 217~250쪽 참조.

23 『연합신문』, 1950년 6월 8일, “오늘 독도사건 2주년, 고향들의 명복을 빌며, 현지서 위령비 제막식 거행”.

24 『한성일보』, 1950년 6월 9일, “제문: 조 경복지사, 아-청천의 벽력, 평화를 깨트린 오인 폭격, 원혼이어 고 이 잠드시라”.

25 1951년 경상북도 보고서(앞의 각주 22) 참조.

## 1948년 독도폭격사건의 인명 및 선박 피해 현황

경상북도 보고서)이다.<sup>26</sup>

두 문서에 기록된 피해 현황은 동일하다. 즉 사건 당시 독도에는 어민 59명이 18척의 어선(기선 7척, 범선 11척)에 분승하여 조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 14명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었고 6명이 중경상을 당하였으며, 선박은 4척이 대파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들 문서에는 사망자 및 부상자, 그리고 일부 생존자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동안 발굴된 공적 기록 중 명단이 있는 문서로는 유일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독도 출어민 및 사망·부상자 현황

출신지	조업인	생환자	사망자		중상자	경상자	
			사망	행방불명			
강원도	목호	옥만룡 등 12명	옥만룡 등	김중선		3명	
	죽변	이도순 등 18명	이도순 등	성명 미상 1명	권천이, 김경화, 이천식, 성명 미상 2명		권진문
	평해	김동술 등 7명	김태홍 등		김동술		
경북	울릉	윤영도 등 22명	윤영도 등	최덕식	김태현, 고원호, 김해도, 김해술, 채일수	장학상, 이상주	
합계	59명	45명	3명	11명	3명	3명	

출처 : 1951년 및 1952년 경상북도 보고서

〈표 1〉을 보면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가 모두 14명인데, 그중 사망자 3명(김중선, 최덕식, 성명 미상 1명)은 시신이 수습된 자들을 말한다. 사망자 중 성명 미상 1명은 신원 확인이 어려워 성명 미상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인다. 위 경상북도 보고서에 따르면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사망자가 14명이고 부상자는 모두 6명으로 중상자와 경상자가 각각 3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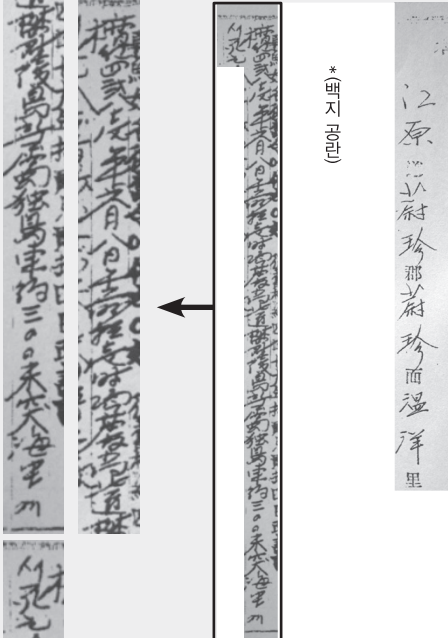
〈표 1〉을 보면 강원도 죽변<sup>27</sup> 출신의 어민 중에 사망 1명과 행방불명 2명이 성명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은 울진군 온양리 주민인 박춘식, 조성

26 경상북도 지사가 외무부 장관에게 보낸 보고서(1952. 9. 24.), 「독도 연해 조난사건 전말 보고의 건(外情 제 1318호, 4285. 9. 5일자)」(국가기록원 소장자료); 최재목 외 편역, 2017, 앞의 책, 147~153쪽, 251~261쪽 참조.

27 현재 행정구역상 울진군의 죽변과 평해는 현재 경상북도 소속이지만 1948년 당시에는 강원도 소속이었다.

용, 오재옥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이들 온양리 주민 3명이 1948년 사건 당시 언론 보도에 공통적으로 사망자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필자가 2018년 울진군 현지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위 3명의 제적부에도 동일하게 1948년 6월 8일 독도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사진 1 참조). 즉 위 3명의 제적부에는 똑같은 내용으로 “단기 4281년<sup>28</sup> 6월 8일 오전 11시경 경상북도 울릉도 소속 독도 동(東) 약 300미돌(米突, 미터) 해리(海里)에서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sup>29</sup>

〈사진 1〉 1948년 독도폭격사건 사망자의 제적부

원본 이미지	번역문
 <p style="text-align: center;">*백지(군번)</p>	<p style="text-align: center;">본적 강원도 예천군 예천면 아도리</p> <p style="text-align: center;">*백지(군번)</p> <p>단기 4281년 6월 8일 오전 11시경 경상북도 울릉도 소속 독도 동(東) 약 300 미돌(米突) 해리(海里)에서 사망</p>

\* 제적부상 개인정보는 백지로 가림

28 단기 4281년은 서기 1948년이다.

29 온양리 주민 사망자의 「제적부」.

1948년 독도폭격사건의 인명 및 선박 피해 현황

그리고 울진군 온양리에 주거한 사망자 조성용 씨 가계의 족보(「가계부(家系簿)」)에도 그가 “단기 4281년<sup>30</sup> 5월 2일 오전 11시 동해 울릉도 해안 독도”에서 “미국 항공기 폭격으로 조난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사진 2〉 참조). 사망 일자인 단기 4281년 5월 2일은 음력 일자인데, 양력으로는 1948년 6월 8일이 된다.

(사진 2) 1948년 독도폭격사건 사망자(조성용)의 가계부

원본 이미지	
<p>*백지(공란)</p>	
번역문	
	<p>자성용</p> <p>*백지(공란)</p> <p>의년 단기 4281년 5월 2일 오전 11시 동해 울릉도 해안 독도에서 미역 생산선 상항시 출중 미국 항공기 폭격으로 조난 사망</p>
<p>가계부</p>	

\* 가계부상 개인정보는 백지로 가림

30 조성용 씨의 가계부상 사망 연도(단기 4281년)가 1~2회 정도 수정되어 알아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사망 일자가 음력 5월 2일 즉 양력 6월 8일인 점을 고려하여 사망 연도를 단기 4281년로 필자가 교정하여 표기하였다. 조성용 씨 유족들은 음력 5월 1일에 고인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있다.

1951년 및 1952년 경상북도 보고서에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독도 현장에 있었던 선박의 피해 현황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다.

<표 2> 독도 출어 및 침몰 선박 현황

현장 선박	침몰 선박	비고
태영환 이하 기선 7척, 범선 11척	태영환(기선), 도하환, 경양환, 제5행정환	4척 손해액 약 94만 원

출처: 1951년 및 1952년 경상북도 보고서

위 문서에 의하면 독도에는 18척의 어선이 있었고 그중 4척이 침몰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피해 선박은 침몰한 기선(機船)(발동선)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이며, 파손된 기선이나 범선(帆船)(전마선)은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III. 사건 당시 언론 보도상 피해 현황

#### 1. 1948년 6월 언론 보도

독도폭격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1948년 6월 11일 자 『조선일보』에는 16명이 즉사하고 10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되어 있다. 사망자와 중상자의 명단은 따로 없다. 이 기사는 사건 직후인 6월 9일이나 10일 독도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들로부터 직접 청취하고 또 당시 울릉도 경찰서에서 집계한 것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위 『조선일보』와 같은 날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기사가 있는데, 1948년 7월 호 잡지 『신천지』에 실린 내용이다. 이 잡지는 1948년 7월호로 발행되었지만, 기사에는 “6월 10일 오후 8시까지(우리 일행이 울릉도에서 떠나오기 직전) 판명된 피해 현황”이 있는데,<sup>31</sup> 기자가 사건 당시 울릉도 현지 취재 중에 파악한

31 한규호, 1948, “독도사건 현지보고, 참극의 독도”, 『신천지』 1948년 7월호, 101쪽.

## 1948년 독도폭격사건의 인명 및 선박 피해 현황

피해 현황으로 보인다. 그 기사에 따르면, 사망자가 16명, 중상자가 3명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32</sup>

〈표 3〉 1948년 7월호 잡지 『신천지』의 인명피해 현황 (1948년 6월 10일 오후 8시 기준)

구분	출신지(피해자 수)		성명(나이)
사망자 (16명)	강원도 (10명)	강릉군 묵호읍	진리 김준선(20)
			후포리 김동술, 권천, 김응화, 박춘식, 조성용, 오재욱, 이천식
	울진군 평해면	이동리	김규동(39), 김종순(19)
			경상북도 (6명)
저동 최태석(30), 김태현(30), 김해도(21)			
중상자 (3명)	강원도 (1명)	강릉군 묵호읍	이완식(34)
	경상북도 (2명)	울릉도 남면	도동 장학삼(35), 이상주(31)
침몰 선박			발동선: 7척, 전마선: 14척, 범선: 2척

※ 밑줄은 필자가 표시함.

『조선일보』 6월 11일 자 기사와 『신천지』 7월호 기사를 보면, 사망자는 16명으로 같으나, 중상자의 경우 『조선일보』에서는 10명, 『신천지』에서는 3명으로 차이가 있다. 아무튼 행방불명을 포함한 사망자의 경우 울릉도 현지에 서는 6월 10일 오후 8시까지 16명으로 파악했던 것 같다.<sup>33</sup>

〈표 3〉에서 밑줄로 표시한 김준선(金俊先, 20)과 김종순(金仲順, 19)은 동일 인물로 보인다. 김준선과 김종순은 각각 20세와 19세로 나이도 비슷하고 이후 기사에는 ‘김준선’이나 ‘김중선’ 중 한 사람의 이름만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표 3〉에 있는 김규동(金圭東, 39)이라는 이름은 이후 언론 보도나 관련 문서에서는 볼 수 없다. 김규동은 나이를 볼 때 김동술(金東述)과 동일 인물

32 한규호, 1948, 위의 기사, 101쪽. 〈표 3〉에서 출신지 행정구역은 당시 행정구역과 맞지 않는 면이 있으나, 위 『신천지』 기사 내용 그대로 표시하였다. 즉 당시 행정구역상 ‘후포리’는 ‘강원도 강릉군 묵호읍’이 아니라 ‘강원도 울진군 평해면’에 속하였으며, 평해면 이동리(二東里)는 평해면 삼울리(三粟里)의 오타로 보인다.

33 홍성근, 2003, 앞의 논문, 388쪽에서 필자는 위 『조선일보』 및 『신천지』 기사를 근거로 사망자를 16명으로 파악하였으나, 아래의 논거에 따라 사망자를 14명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거나, 아니면 생존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이 사망자 명단에 잘못 들어간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표 3>에서 2명의 이름(김중순, 김규동)을 제외한 14명의 사망자 이름은 그 후 6월 13일 자나 15일 자 기사에 나온 사망자 이름과도 같다. 다만 이름의 한자(漢字)가 한자씩 다르거나 오타자가 한 글자[一字] 정도 있을 뿐 동일 인물임을 알 수 있다.

6월 11일 자 기사에서 사망자가 16명이라고 했던 『조선일보』는 다음 날(6월 12일) 기사에서는 사망자 9명, 행방불명 5명 곧 사망자가 모두 14명으로 정정했고 부상자는 10명(중상 2명, 경상 8명)으로 전날 기사와 동일하다.<sup>34</sup>

같은 6월 12일 자 『남선경제신문』에서는 경상북도 당국의 소식을 인용하여 16명이 사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sup>35</sup> 같은 지면의 울릉도 특파원(윤우중)이 보낸 기사를 보면, 사망 9명, 행방불명 5명, 중상 2명, 경상 8명이라고 한다. 또한 같은 6월 12일 자 『경향신문』, 『동아일보』, 『부인신보』, 『수산경제신문』, 『자유신문』, 『조선중앙일보』 등에서도 동일하게 사망 9명, 행방불명 5명, 중상 2명, 경상 8명이라고 한다.<sup>36</sup> 이를 볼 때 사망자 수를 6월 10일까지는 16명으로 파악했다가, 다음날 6월 11일 이후에는 14명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1948년 6월 12일 동경(東京) 발 기사로 타전된 1948년 6월 13일자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와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에서도 국내 언론 보

34 그런데 같은 6월 12일자 『조선일보』 지면에는 거주지별 사망자 통계도 나왔는데 모두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된다. 즉 강원도에서 온 사람들이 9명(목호 1명, 울진군 호월리 2명, 죽변리 6명), 울릉도 어민들이 6명(도동 3명, 저동 3명) 사망했다고 한다. 같은 날 같은 지면의 기사 중에 사망자가 14명이라고 했다가 또 15명이라고도 한 것이다. 하지만 그 기사의 제목에 사상자를 24명으로 한 것을 보면 사망자를 15명으로 한 것은 14명의 오타로 보인다. 『조선일보』, 1948년 6월 12일, “독도폭격 현지속보, 민심에 큰 충격, 어선 침몰만 23척, 사상 24명”.

35 『한성일보』 1948년 6월 12일자 기사에서도 16명이 즉사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적고 있다. 이는 6월 10일 기준일에 파악된 수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한성일보』, 1948년 6월 12일, “독도 근해 참변, 소속 불명 비기(飛機) 어선 습격, 11척 침몰 24명 사상”.

36 『경향신문』, 1948년 6월 12일, “정체 모를 비행기, 울릉도 어선 폭격”; 『동아일보』, 1948년 6월 12일, “소속 불명의 비기, 어선을 포격 소사, 사상 20여, 11척 침몰”; 『부인신보』, 1948년 6월 12일, “정체 모를 외국 비행기, 어선을 폭격 울릉도 근해서 침몰”; 『수산경제신문』, 1948년 6월 12일, “출어 중인 어선을 폭격, 독도서 어선 11척 침몰, 사상 20여 명”; 『자유신문』, 1948년 6월 12일, “독도의 참사, 비기군 어선 폭격, 사상, 어선 11척 침몰”; 『조선중앙일보』, 1948년 6월 12일, “모국 비행기군이 습격, 울릉도 근해서 어선 11척 침몰”.

## 1948년 독도폭격사건의 인명 및 선박 피해 현황

도와 같이 어선 11척이 침몰하고 1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sup>37</sup> 6월 13일 자 성조지(Stars and Stripes)에는 어선 11척이 침몰하고 사망자가 9명이고 실종자가 5명, 부상자가 10명이라고 했다.<sup>38</sup> 같은 신문 6월 16일과 17일 자 기사에서도 14명이 사망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39</sup> 당시 대다수 한국의 신문에 게재된 사망자 및 부상자 수와 같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6월 17일 뉴욕타임즈 사설에서도 사망자 14명, 부상자 10명으로 기록하고 있다.<sup>40</sup>

한편, 언론 보도 중 사망자와 부상자 이름이 처음 나온 것은 6월 13일 자 『경향신문』, 『남선신문』, 『자유신문』, 『한성일보』 등의 기사였다.<sup>41</sup> 그 기사의 사망자 및 부상자 명단은 6월 15일 자 『서울신문』, 『수산경제신문』, 『조선일보』 등에 나온 명단과도 대체로 같다.<sup>42</sup>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 6월 13~15일 언론 보도상 사망자 및 부상자 명단

구분	인원	명단
사망자	14명	김준선(20), 최태식(24), 김동술(39), 권천, 김응화, 박춘식, 조성용, 오재욱, 이춘식, 고원오(19), 김해술(19), 채일수(28), 김해도(21), 김태현(30)
중상자	3명	장학상(35), 이상주(31)(또는 이상남), 이완식(34)(또는 김태홍(25))

37 *New York Times*, June 13, 1948, "U.S. planes in area as Korean were hit"; *Washington Post*, June 13, 1948, "AF probes Korea sinking".

38 *Stars and Stripes*, June 13, 1948, "Airplane bombs, sinks Korean fishing boats".

39 *Stars and Stripes*, June 16, 1948, "Check Pictures On Bomb Attack"; *Stars and Stripes*, June 17, "FEAF Reveals Bomb Accident". *Nippon Times* 6월 19일자 기사와 Stars and Strips의 6월 20일 기사에서는 한국 통신사를 인용하여 한국인 9명이 사망하였다고 하였다. *Nippon Times*, June 19, 1948, "To fix reparations: Claims Board to Probe Losses Caused by Bombing"; *Stars and Stripes*, June 20, 1948, "Board Of Claims Set Up In Korea".

40 *New York Times*, June 17, 1948, "A case for restitution".

41 『경향신문』, 1948년 6월 13일, "누구의 악의인가, 독도폭격사건 피해 막대, 태극기 표시해도 공격했다. 조난자 담"; 『남선신문』, 1948년 6월 13일, "울릉도 사변 속보, 기의 표식도 본체 만체, 고의로 기총으로 맹사, 김태홍 씨의 생환 담"; 『자유신문』, 1948년 6월 13일, "독도 참사 후보(後報), 사망자 등의 신문 판명"; 『한성일보』, 1948년 6월 13일, "독도사건 속보, 사상자 불분명, 시체 3명을 발견 속속 탐사 중".

42 『서울신문』, 1948년 6월 15일, "차마 볼 수 없는 참경, 구호선이 말하는 독도폭격사건"; 『수산경제신문』, 1948년 6월 15일, "억울한 희생자의 씨명"; 『조선일보』, 1948년 6월 15일, "독도폭격 제4특신, 고도는 인영 절무, 행방 불명자 즉사로 확인, 울릉도도 비통 일색"

앞서 6월 10일 저녁 8시까지 파악된 『신천지』(1948년 7월호)의 사망자 명단과 비교해보면, 김중순과 김규동이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표 4>의 사망자 명단은 <표 1>의 1951년 및 1952년 경상북도 보고서와 비교할 때, ‘권천이’가 ‘권천’, ‘김경화’가 ‘김응화’로 되어 있지만 동일한 인물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6월 13일과 15일 자 기사의 사망자 및 부상자 명단을 보면, 같은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는 듯하다. 그 명단은 사건 직후 경찰에서 사망자가 14명이라고 보고한 것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sup>43</sup> 6월 18일 이후 신문에서는 사망자가 계속 14명으로 기록되어 있다.<sup>44</sup> 6월 20일 자 『조선중앙일보』에서도 인명 사상 24명이라고 했는데, 이는 사망자 14명, 부상자 10명이라는 통계에 기초한 것 같다.<sup>45</sup>

한편, 중상자는 3명으로 표시하고 있다(<표 4> 참조). 여기에는 울릉도 도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울릉도 저동의 장학상<sup>(35)</sup>과 이상주<sup>(31)</sup><sup>46</sup>가 있고, 강원도 묵호읍의 이완식<sup>(34)</sup> 또는 울진군(평해면)의 김태홍<sup>(25)</sup>도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다.<sup>47</sup> 그런데 이완식과 김태홍은 이후 부상자 명단에서는 보이지 않는다.<sup>48</sup>

1948년 6월 15일에 작성된 『민성』(1948년 8월호)의 기사에는 행방불명자를 포함하여 사망자가 14명, 부상자가 2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sup>49</sup> 그 내용은 다음 <표 5>와 같다.

43 『동아일보』, 1948년 6월 15일, “미(美) 연습기 투탄? 독도사건 지금 조사 중”; 『조선일보』, 1948년 6월 15일, “독도 폭격 제4특진, 독도는 인영 절무(人影絶無), 행방 불명자 즉사로 확인, 울릉도도 비통일색”; 『한성일보』, 1948년 6월 15일, “미 폭격 연습부대에 관련? 극동항공대에서 성명, 동포 어선 폭격 사건” 등

44 『동아일보』, 1948년 6월 19일, “사실: 독도사건에 대하여”.

45 『조선중앙일보』, 1948년 6월 20일, “미군 대거 철퇴 요망, 독도 참사에 민전에서 담화”.

46 중상자로 나오는 이상주, 이상남, 리상유는 동일 인물로 보인다.

47 『한성일보』, 1948년 6월 13일, “독도사건 속보, 사상자 신분 불명, 시체 3명을 발견, 소속 탐사 중”; 『수산경제신문』, 1948년 6월 15일, “억울한 희생자의 씨명” 등

48 김태홍 씨의 경우, 부상을 어느 정도 당했는지 알 수 없으나, 같은 평해면 지역의 최만일<sup>(33)</sup>, 최춘삼<sup>(44)</sup> 그리고 경북 영덕군 백서리에서 온 김대진<sup>(34)</sup>과 함께, 사건 발생 이틀 후인 6월 10일 부산행 연락선(송주호)을 타고 포항으로 귀환하였다고 적고 있다. 『경향신문』 1948년 6월 13일, “누구의 악의(惡意)인가, 독도폭격사건 피해 막대, 태극기 표시해도 공격했다 조난자 담(談)”; 『남선신문』 1948년 6월 13일, “울릉도 사변 속보, 기(旗)의 표시도 본체만체, 고의로 기총으로 맹사, 김태홍 씨의 생환 담(談)”.

49 조춘정, 1948년 8월, “독도폭격사건 진상”, 『민성』 제4권 제7, 8호, 33쪽.

## 1948년 독도폭격사건의 인명 및 선박 피해 현황

(표 5) 1948년 8월호 잡지 『민성』의 인명피해 현황(1948년 6월 15일 기준)

구분	피해자 수 (출신지)	성명(나이)
사망자	2명	김준선(20), 최태식(34)
행방불명자	7명(강원도)	김동술(39), 변권천, 김응화, 박춘식, 조성용, 오재옥, 이천식
	5명(울릉도)	고원오, 김해술, 김태현, 채일수, 김해도
부상자	2명	장학상(35), 이상주(31)

〈표 5〉의 사망자를 이전 명단과 비교할 때, 다른 점은 ‘권천(權天)’이 ‘변권천(邊權天)’으로 되어 있고, 부상자가 2명(장학상, 이상주)이라는 것 외에는 같다. 추정하건대 변권천은 권천과 동일 인물로 보인다. 다른 자료에서는 ‘변권천’이라는 이름은 없고 ‘권천’ 또는 ‘권천이’라는 이름만 등장한다. 한편, 부상자는 이전까지 10명으로 되어 있었으나, 여기서는 2명(장학상, 이상주)만 기록하고, 2명 모두 중상자다.

요컨대 1948년 6월 10일 저녁 8시까지는 사망 16명, 부상 10명으로 파악했다가, 12일 기사 후에는 사망자가 14명, 부상자가 10명이라고 했다. 그리고 6월 15일 이후에는 사망자가 14명, 부상자(중상자)가 3명 또는 2명이라고 보도하였다.<sup>50</sup>

### 2. 1948년 7~8월 언론 보도

1948년 7월 3일과 4일 자 기사를 보면, 사망자를 미귀환자로 하여 모두 14명으로 표시하고 있다(〈표 6〉 참조).<sup>51 52</sup>

50 물론 1948년 6월 23일 이후에도 이와 다른 내용의 기사도 있었다. 즉 6월 23일자 『수산경제신문』에서는 사망자 16명, 중상자 3명이라고 하고 사체는 2구를 발견하였으며, 행방불명자는 14명이라 했다(『수산경제신문』 1948년 6월 23일, “독도에 비기 내습 빈번, 피해 조사에 일대(一大) 지장(支障), 사망자 중 시체 발견 불과 2명”), 6월 29일자 『조선중앙일보』에서는 조난 총원 52명 중 사망자 7명, 행방불명 10명이라고 하고, 중상자 2명, 경상자 8명, 생환자 28명이라고 적고 있다(『조선중앙일보』 1948년 6월 29일, “조사 결과 주목, 제3조사대가 최종, 독도사건”), 그러나 이런 기사들은 일부에 불과하다.

51 『대한일보』, 1948년 7월 3일, “울분한 독도사건, 비기 13대 30분 폭격, 살아온 박씨 표식 확인, 춘천 공보원에서 조사 발표”; 『평화일보』, 1948년 7월 3일, “비기 13대가 계속 폭격, 독도사건에 춘천 공보원서 발표”; 『호남신문』, 1948년 7월 4일, “비기 13대가 30분간을 폭격, 춘천 공보원 독도사건 발표”.

52 이 기사들은 ‘춘천 2일발 함등’을 받아 작성한 기사로 춘천 미국 공보원에서 발표했다고 했지만, 보도 후

〈표 6〉 1948년 7월 3~4일 언론 보도상 인명피해 현황

구분	인원	명단
미귀환자	14명	김중선(20), 최덕식(34), 김태현(34), 고원석(18), 김해도(27), 김해술(27), 채일주(27), 권천이(43), 김동술(42), 김경복(26), 이두식(27), 성명 미상 3명
중상자	6명	장학상(중상), 이상주(중상), 권진문(중상), 김태용(중상), 박춘일(경상), 성명 미상 1명

〈표 6〉에서 미귀환자 곧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수는 이전과 같으나 그 이름은 약간씩 차이가 있다. 즉 ‘김중선’이 ‘김중선’으로 표시되고, 이후 기사에서는 ‘김중선’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이전의 ‘최태식’은 ‘최덕식’이라는 이름으로 표기되고, 이후에는 계속 ‘최덕식’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다. 최덕식(崔德植)이 올바른 이름이라는 것은 현재 울릉도에 거주하고 있는 최덕식 씨의 유족과 그의 제적부를 통해 확인하였다.<sup>53</sup> 그리고 이전의 ‘고원 오’가 ‘고원석’으로, ‘채일수’가 ‘채일주’로, ‘권천’이 ‘권천이’로, ‘김응화가’ ‘김경복’으로, ‘이천식’이 ‘이두식’으로 표기되었다. 이들은 이름이 한 두자 정도 다를 뿐 동일 인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외 3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성명 미상자들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전까지 사망자 명단에 있었던 울진군 온양리의 박춘식, 조성용, 오재옥으로 보인다.

부상자는 모두 6명인데, 장학상과 이상주가 중상자로 표시된 것은 이전과 동일하나 새롭게 등장한 부상자도 있다. 즉 권진문, 김태용이 중상자로, 박춘일이 경상자로 기록되었다. 그 후 부상자 명단을 보면, 권진문만 중상자로 남아있고, 김태용과 박춘일이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7월 16일과 8월 4일 자 기사에는 죽변어업조합 등 울진군 관내 사망자의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sup>54</sup>

몇몇 신문사의 ‘기사 취소’ 등 정정 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울릉도 도사의 보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강원일보』, 1948년 7월 2일, “정정”; 『호남신문』, 1948년 7월 6일, “기사 취소”

53 2018년 6월 8일 최덕식 씨의 유족아들 최영환,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1 인터뷰

54 『경향신문』, 1948년 7월 16일, “독도사건 배상, 죽변 어조합 관내 248만 원”; 『동아일보』, 1948년 7월 16일, “독도사건 배상 지불, 죽변 관내에 248만 원”; 『조선일보』, 1948년 7월 16일, “5백만 원 피해에 68만 원 배

## 1948년 독도폭격사건의 인명 및 선박 피해 현황

〈표 7〉 울진군 관내 피해 배상 관련 사망자 명단

구분	인원	이름		비고
사망자	7명	죽변리	권천이, 김기화, 이천식	배상금 지급 (죽변어업조합)
		온양리	박춘식, 오재옥, 조성용	
		후포리	김동술	배상금 지급

출처 : 1948년 7월 16일 및 8월 4일 신문기사

〈표 7〉의 명단 중 죽변리와 온양리의 권천이, 이천식, 박춘식, 오재옥, 조성용 등 5명은 이전과 동일하다. 다만 죽변리의 김기화는 이전의 김응화 또는 김경복과 동일 인물로 보이는데, 이후의 기사와 1951년 경상북도 보고서에서는 김경화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1948년 7월 16일 기사에는 나오지 않지만, 8월 4일 자 기사를 보면 울진군(평해면)의 김동술의 유족도 배상금을 받았다고 한다.<sup>55</sup> 이로써 죽변어업조합 관내에서 피해 배상을 통해 사망자의 신원이 밝혀진 사람은 모두 7명으로 권천이, 김기화(김경화), 이천식, 박춘식, 오재옥, 조성용 그리고 김동술이다.

미군 당국은 묵호어업조합 관내 어민들에게도 배상을 했는데, 이는 선박 파손에 대한 배상으로 사망자에 대한 배상은 없었다.<sup>56</sup> 사망자 중 김중선이 묵호 출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유가족을 찾지 못했는지 죽변어업조합 관내에서도 또는 묵호어업조합 관내에서도 그 이름은 배상자 명단에 올라와 있지 않다. 하지만 김중선은 시신이 수습되어 그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요컨대 강원도 등 육지에서 독도로 출어한 사람들 중 사망한 사람은 8명으로 그 신원이 확인되었다.

한편, 7월 22일 이후 8월 4일까지의 기사를 보면, 울릉도 관내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망자 5명과 중상자 2명에게 배상을 했

상, 죽변 어조 관내에 248만 원 아”.

55 『남성경제신문』, 1948년 8월 4일, “독도사건의 유족들, 살아갈 앞길은 아득하고 격랑 같은 원한 무엇으로 푸리”.

56 『동아일보』, 1948년 9월 3일, “독도사건 배상, 묵호어민이 추가 요구”; 『자유신문』, 1948년 9월 3일, “묵호 어조에 325만 원, 독도사건 배상금”.

다고 한다(〈표 8〉 참조).<sup>57</sup>

〈표 8〉 울릉도 관내 피해 배상 관련 사망자 명단

구분	인원	이름	비고
사망자	5명	최덕식, 김태현, 고원호, 김해도, 김해술	배상금 지급
	1명	채일수	배상금 미지급
중상자	2명	장학상, 이상주	배상금 지급

출처 : 1948년 7월 22일 ~ 8월 4일 신문기사

〈표 8〉에서는 이전의 ‘고원석’이 ‘고원호’로 표기되어있다. 사망자 채일수의 경우는 유족을 찾지 못해 배상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sup>58</sup> 이로써 채일수를 포함하여 울릉도 관내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은 모두 6명이다. 울릉도 관내 부상자 중 배상금이 지급된 사람은 중상자인 장학상과 이상주 등 2명이다.

### 3. 그 외 사망자 존재 여부

#### 1) 독도 출어 인원 및 선박

지금까지 살펴본 사망자 14명 외에 다른 사망자는 없었는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독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생활자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생활자들은 어느 정도의 어민들이 독도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는지를 증언하였다. 1948년 6월 12일 자 신문에는 강원도와 울릉도에서 출어한

57 『남선경제신문』, 1948년 7월 22일, “이것이 미 당국의 책임있는 조치인가, 독도사건의 배상 내용, 울도 관 계 212여만 원을 지불, 백지 날인도 의아 불소”; 『남선경제신문』, 1948년 8월 4일, “독도사건의 유족들, 살아 갈 앞길은 아득하고 격랑 같은 원한 무엇으로 푸리”; 『수산경제신문』, 1948년 7월 31일, “(기범선) 수리비 불과 만여원, 울릉도 여조 관내에 212만 원, 독도사건 배상 지불”; 『조선중앙일보』, 1948년 7월 24일, “독도사건 울릉도 관내 배상, 경상에 12만 원 중상에 7만 원, 사망엔 6만 원도 지불”.

58 『남선경제신문』, 1948년 7월 22일, “이것이 미 당국의 책임있는 조치인가, 독도사건의 배상 내용, 울도 관 계 212여만 원을 지불, 백지 날인도 의아 불소”.

어선 등 15척에 어민 45명, 또는 20여 척이 작업 중이었다고 한다.<sup>59</sup> 6월 11일 경 울릉도 경찰서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에도 어선 15척에 어민 45명이 조업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sup>60</sup> 그리고 6월 12일 자 『한성일보』에는 당시 독도에는 20여 척의 어선이 있었다고 하면서 부상자 장학상과 인터뷰한 내용을 싣고 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sup>61</sup> “그곳에 나간 어부들은 강원도 방면과 울릉도 방면에서 모여든 약 50명 정도의 인원이었는데, 절반 이상이 사망 혹은 중경상을 입은 것 같이 기억됩니다.”

그 후 신문에 실린 강원도 묵호의 경양환(또는 궁장환) 선장 이완식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현장에는 30여 척의 배가 있었는데, 겨우 몇 척만 남고 침몰 파괴”되었다고 했다.<sup>62</sup> 해양환 선원 김태홍은 “그때 독도 해상에는 약 23척의 선박이 있었는데, 발동선 2척과 전마선 2척이 겨우 사격을 면하고 귀환했다”고 한다.<sup>63</sup> 위의 미군 측 자료(1948년 6월 15일 자 전문)에는 어선 23척이 관련되어 있다고 했다.<sup>64</sup> 7월 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독도에 출어한 총 인원은 56명이며, 배는 18척이었다고 한다.<sup>65</sup> 한편 남선경제신문사에서는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독도조난동포 위문금 및 위문품 모집에 관한 사고

59 『남선신문』, 1948년 6월 12일, “동조선 절해고도의 참극, 정체 불명 편대 비행기 내습 출어선에 기총 소사”; 『동아일보』, 1948년 6월 12일, “소속 불명의 비기, 어선을 폭격 소사, 사상 20여, 11척 침몰”; 『부인신보』, 1948년 6월 12일, “정체 모를 외국 비행기, 어선을 폭격! 울릉도 근해서 침몰”; 『자유신문』, 1948년 6월 12일, “독도의 참사, 비기(飛機) 군(群) 어선 폭격, 사상, 어선 11척 침몰”; 『조선중앙일보』, 1948년 6월 12일, “미국 비행기 군(群)이 습격, 울릉도 근해서 어선 11척 침몰”.

60 『제1회 국회 속기록 제27호』, 단기 4281년 7월 7일, 2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자료는 7월 7일자 국회 회의록에 있으나, 1948년 6월 11일경 울릉도 경찰서에서 작성,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61 『한성일보』, 1948년 6월 12일, “독도 근해 참변, 소속 불명 비기(飛機) 어선 습격, 11척 침몰 24명 사상”.

62 『조선일보』, 1948년 6월 12일, “독도폭격 현지 속보, 민심에 큰 충격, 어선 침몰만 23척, 사상 24명”; 『조선중앙일보』, 1948년 6월 13일, “독도사건 현지 속보, ‘연습한다는 말도 없이 저공으로 폭격’ 소사(掃射), 구사일생으로 귀환한 이 선장 담”; 『민성』, 1948년 8월, “독도폭격사건 진상”, 제4권 제7·8호, 고려문화사, 33쪽.

63 『남선신문』, 1948년 6월 13일, “울릉도 사변 속보, 기(旗)의 표식도 본체만체, 고의로 기총으로 맹사, 김태홍 씨의 생환 담(談)”; 『경향신문』, 1948년 6월 16일, “독도폭격사건 진상 이렇다, 폭격·정찰·기총 소사”.

64 Telegram from CG XXIV Corps to CINCFE (RG 554 Entry A1 1378 Box 141, 앞의 각주 13).

65 『대한일보』, 1948년 7월 3일, “울분한 독도사건, 비기 13대 30분 폭격, 살아온 박씨 표식 확인, 춘천 공보원에서 조사 발표”; 『평화일보』, 1948년 7월 3일, “비기 13대가 계속 폭격, 독도사건에 춘천 공보원서 발표”; 『호남신문』, 1948년 7월 4일, “비기 13대가 30분간을 폭격, 춘천 공보원 독도사건 발표”.

(社告)를 내고 위문금품을 모집하였는데, 그 취지 설명문에 당시 독도 현지에 ‘18척의 우리 어선과 59명의 동포’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66</sup> 이것은 1950년 독도조난어민위령비와 1951년 및 1952년 경상북도 보고서에 어선 18척에 어민 59명이 폭격 당시 독도에 있었다는 기록과 동일하다. 특히 위 경상북도 보고서에는 울릉도인 윤영도 이하 22명 등 지역별 구체적인 인원과<sup>67</sup> 함께, 이들이 태영환(泰榮丸) 이하 기선 7척과 범선 11척에 분승하여 독도에 출어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사건 당시 독도 현지에 있었던 선박 및 어민의 수는 <표 9>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9> 사건 당시 독도 현지 선박 및 어민 통계 변화

일자	1948년				1950~1952년
	6. 11.~6. 12.	6. 10.~6. 15.	7. 3.~4.	6. 26.~7. 2.	
선박	15척	23척, 10여척~30여척	18척	18척	18척
인원	45명	* 내용 없음	56명	59명	59명
출처	언론 보도, 국회 및 경찰 자료	생존자 증언, 국회의원 전언, 미군 측 전문	언론 보도	『남선경제신문』	1950년 독도조난어민위령비, 1951년 및 1952년 경상북도 보고서

요컨대 이 사건에 관한 미군 소청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 되는 1948년 6월 말 이후 통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남선경제신문』의 내용과 1950년 독도조난어민위령비 및 1951년과 1952년 경상북도 보고서 등의 공적 기록을 보면, 당시 독도에는 강원도 방면과 울릉도에서 온 어선 18척에 어민 59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6 『남선경제신문』, 1948년 6월 26일, “독도 조난동포 위문금 위문품 모집”; 『남선경제신문』, 1948년 7월 2일, “사고: 본사 주최, 독도 조난동포 위문금 위문품 모집”.

67 당시 독도에 출어한 지역별 인원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울릉도인 윤영도 이하 12명, 강원도 묵호인 옥만룡 이하 12명, 강원도 죽변인 이도순 이하 18명, 강원도 평해 후포리인 김동술 이하 7명 합계 59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1951년 및 1952년 경상북도 보고서(앞의 각주 22, 26) 참조.

## 2) 독도 현지 조난자 구조 및 피해 조사 현황

피해자 구조나 조사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이 사건의 피해 현황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폭격 소식을 접한 1948년 6월 9일 첫 번째 구조대가 파견되었으며, 그 구조대를 포함하여 모두 3차례 구조 및 조사 활동이 이루어졌다.<sup>68</sup>

1차 구조 때(6월 9~10일)는 선박 2척이 파견되어 사망자 2구(김중선, 최덕식)의 시신을 수습했고, 6월 10일 출발한 2차 구조 때는 소득 없이 돌아왔다. 특히 6월 13일 미군 특별조사대가 구성되어 독도 현지로 파견된 3차 조사 때는 한국인들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였다.<sup>69</sup> 그들은 독도 현지를 살살이 조사하여 시신 1구를 수습하였다. 그런데 그 시신은 훼손 정도가 심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서 성명 미상자로 분류되었다. 이로써 독도 현지 조난자 구조는 끝이 났다.

그리고 미 제24군단 사령부에서는 특별조사대의 구조 활동이 끝나고서 6월 19일경 피해 배상을 위하여 소청위원회를 조직하였다.<sup>70</sup> 소청위원회는 A.W. 위니아크지크 대위 등 미국인 3명과 약간의 통역으로 구성되었다.<sup>71</sup>

68 1948년 6월 29일자 『조선중앙일보』에서는 모두 2차 구조대 파견과 3차례 조사대가 파견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3차례 조사대 파견 중에는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방문한 소청위원회 활동도 포함되어 있다(『조선중앙일보』, 1948년 6월 29일, “조사 결과 주목, 제3조사대가 최종, 독도사건”), 1951년과 1952년 경상북도 보고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독도 현지로 가서 구조 및 조사활동을 한 것은 3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1951년 및 1952년 경상북도 보고서(앞의 각주 22, 26) 참조.

69 3차 조사 때는 경북도 수산과 기사(문영국)와 미국 CIC 해안경비대원 6명이 경북도 소속 경비선 계림호를 타고 울릉도로 가서 울릉도 구조 수부 11명, 묵호여부 7명, 후포리 여부 2명 등과 함께 모두 30명이 독도로 가서 독도의 이곳저곳을 자세하게 조사했다. 1951년 및 1952년 경상북도 보고서(앞의 각주 22, 26) 참조. 『경향신문』, 1948년 6월 15일, “조사단 급파, 미 당국 조사 중”; 『조선일보』, 1948년 6월 15일, “미군 조사대 파견” 등.

70 『경향신문』, 1948년 6월 20일, “독도사건 그 후 공보부장 발표, 소청위원회 조직, 현지조사 후 배상결정”; 『대중일보』, 1948년 6월 20일, “독도사건 소청위 조직”; 『동아일보』, 1948년 6월 20일, “공보부 발표, 미군 조사위원회서 현지조사에 착수, 독도폭격사건에 대처”; 『동아일보』, 1948년 6월 20일, “독도사건 손해배상, 미군 당국 소청위원회 설치”; 『조선일보』, 1948년 6월 20일, “독도사건에 공보부 발표, 배상 지불에 대처, 특별 소청위원회 설치”; 『조선중앙일보』, 1948년 6월 20일, “독도사건 손해배상에 미군 당국 소청위원회를 설치”.

71 이들은 A.W. 위니아크지크 대위(조선주재 미군 관하 소청위원회 위원), T. 맥크류아 씨(농무부 수산과), 밀턴 라 맨 대위(대구 군정청 법무장교)이다. 『경향신문』, 1948년 6월 26일, “독도사건 그 후, 금월 내 조사 완료, 訴委 보고대로 곧 배상”; 『공업신문』, 1948년 6월 26일, “독도사건, 조사완료는 6월말경, 최종보고 오면 일반에게 발표” 등.

그들은 피해 정도와 피해 배상액을 최종적으로 판정할 권한이 있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배상금을 지급할 권한도 갖고 있었다.<sup>72</sup>

소청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6월 29일 중앙청의 공보부를 통해 발표되었다.<sup>73</sup>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건수가 36건이고 이 중에 33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한다. 그리고 소청위원들은 33건에 대한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9일 현지로 출발하였다.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3건은 피해자의 주소가 판명 되는대로 즉시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소청위원회에서 밝힌 피해 건수 36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되지 않았다. 생각건대, 그 36건에는 우선 신원이 밝혀진 사망자(14명)와 중상자(3명)에 대한 인명 피해 17건과 배상금이 지급된 선박 피해 14건이 포함되어 있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외 5건은 경상자 등에 대한 피해가 아닐까 생각된다. 한편 소청위원회에서 밝힌 36건 중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3건은 인명 피해 건수로 피해자의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 2건(김중선, 채일수)과 이후에 배상금이 지급된 사망자 1건(김동술)이 아닐까 생각된다.

### 3) 2018년 현지 조사

필자는 사망자 등 피해자의 유족을 찾기 위해 2018년 4~9월까지 4차례에 걸쳐 동해안 지역과 울릉도 등 현지 탐문조사를 하였다. 조사 범위는 1948년 사건 당시 언론 보도, 그리고 1951년 및 1952년 경상북도 보고서 등을 기초로 사망자 김중선의 주소지라고 한 강원도 묵호읍(묵호진리)에서부터 울

72 『경향신문』, 1948년 6월 20일, “독도사건 그 후 공보부장 발표, 소청위원회 조직, 현지조사 후 배상액 결정”; 『대중일보』, 1948년 6월 20일, “독도사건 소청위 조직”; 『동아일보』, 1948년 6월 20일, “공보부 발표, 미군 조사위원회서 현지조사에 착수, 독도폭격사건에 대처”; 『동아일보』, 1948년 6월 20일, “독도사건 손해배상, 미군 당국 소청위원회 설치”; 『조선일보』, 1948년 6월 20일, “독도사건에 공보부 발표, 배상 지불에 대처, 특별 소청위원회 설치”; 『조선중앙일보』, 1948년 6월 20일, “독도사건 손해배상에 미군 당국 소청위원회를 설치”.

73 『경향신문』, 1948년 6월 30일, “피해 건수 36, 소위(訴委) 독도사건 조사 완료”; 『동아일보』, 1948년 6월 30일, “독도폭격사건, 불일(不日) 진상 발표, 「위」 위원 배상 해결차 출발”; 『자유신문』, 1948년 6월 30일, “공보부 발표, 독도 폭격 피해 36건, 배상 방법과 액수는 추후 결정”; 『조선일보』, 1948년 6월 30일, “독도사건, 발표 없는 배상 현지행에, 민족적 의혹은 재연, 진상 발표, 배상에는 격의 없는 성의 요망”.

진군 울진읍(온양리, 읍내리, 호월리)과 죽변면(죽변리), 울진군 후포면(삼울리, 후포리, 금읍리), 평해읍(거일리), 영덕군 병곡면(백석리), 그리고 울릉군(저동리, 도동리, 사동리)을 다니면서 조사를 하였다.

조사 방법은 각 마을의 경로당과 주민, 읍면사무소, 문화원 등지를 다니면서 독도폭격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지 또는 사망자나 부상자를 알고 있는지 등을 탐문하였다. 이미 70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울진군 온양리, 울릉군 저동리 등 사망자 유족들이 생존해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sup>74</sup>

현지조사를 통하여 필자는 사망자 14명 중 6명의 유족을 비롯하여 중상자 및 생환자, 선박 피해자 등의 유족들을 만났다. 강원도 속초시에서 울릉도 주민 김해도 씨의 유족(김상복), 경상북도 울진군 읍내리에서 오재옥 씨의 유족(오명자)과 온양리에서 박춘식 씨의 유족(박용길)과 조성용 씨의 유족(조영사), 그리고 경상북도 울릉군 사동리에서 최덕식 씨의 유족(최영환), 저동리에서 김태현 씨의 유족(김찬수)을 만날 수 있었다. 또한 울진군 울진읍 온양리에서 중상자인 권진문 씨의 유족과 생환자 오재덕 씨의 유족도 만났다. 선박 피해자의 유족들도 만났는데, 울진군 울진읍에서 오종석 씨의 유족과 경상북도 영덕군 백석리에서 또 다른 피해자의 유족을 만날 수 있었다.<sup>75</sup> 일부를 제외하고 그들은 여전히 선친들이 살았던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다.

#### 4. 소결: 인명 피해 현황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기초로 독도폭격사건의 사망자와 부상자 명단이

74 필자는 현지 탐문조사를 하면서 만일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했다면 이곳저곳에 유족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조금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다.

75 경북 영덕군 병곡면 백석리에서 1948년 폭격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선박을 소유했던 선주(이필복)의 유족을 만났는데, 당시 언론 보도 등에는 '이필복'이라는 이름은 없다. 유족에 따르면 호적상 이름이 이필복이며, 일반적으로는 이성일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성일(또는 이필복)이 선박 피해자 명단 중 울진의 이성월(또는 영덕의 이광술)과 동일 인물인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2018년 4월 19일 이필복 씨의 유족(아들 이규한, 경북 영덕군 병곡면 백석리) 인터뷰.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에서는 사망자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볼 수 있다.

<표 10> 시기별 사망자 명단 변화

일자	1948년				1951년	1952년
	6. 10.	6. 11.~15.	7. 3.~4.	7. 16.~8. 4.	9. 1.	9. 20.
사망자	김준선(20) 김중순(19)	김준선(20)	김중순(20)	(김중선)※	김중순	김중순
	최태식(30)	최태식(24)	최덕식(34)	최덕식	최덕식	최덕식
	김동술 김규동(39)	김동술(39)	김동술(42)	김동술	김동술	김동술
	권천	권천(변권천)	권천이(43)	권천이	권천이	권천이
	김응화	김응화	김경복(26)	김기화	김경화	김경화
	박춘식	박춘식	성명 미상	박춘식	성명 미상	성명 미상
	조성용	조성용	성명 미상	조성용	성명 미상	성명 미상
	오재욱	오재욱	성명 미상	오재욱	성명 미상	성명 미상
	이천식	이춘식	이두식(27)	이천식	이천식	이천식
	고원오(19)	고원오(19)	고원석(18)	고원호	고원호	고원호
	김해술(19)	김해술(19)	김해술(27)	김해술	김해술	김해술
	채일수(28)	채일수(28)	채일주(27)	(채일수)※	채일수	채일수
	김해도(21)	김해도(21)	김해도(34)	김해도	김해도	김해도
	김태현(30)	김태현(30)	김태현(34)	김태현	김태현	김태현
합계	16명	14명	14명	14명	14명	
출처	현지 청취, 경찰 보고, 언론 보도	언론 보도	언론 보도	언론 보도 (피해 배상)	경상북도 보고서	경상북도 보고서

※ 사망자 배상 명단에는 없음.

<표 10>을 보면, 사망자 명단이 처음 나온 6월 10일 이후 1952년 경상북도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이름의 글자 한두자가 바뀌긴 했지만 사망자 인원이 14명이라는 데는 크게 차이가 없다. 또한 그들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sup>76</sup>

76 참고로 과거에는 호적상 이름과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오재욱 씨의 유족 증언에 따르면, 오재욱 씨는 호적상 '오재욱'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집에서는 '오명하'로 호칭되었다고 한다.

## 1948년 독도폭격사건의 인명 및 선박 피해 현황

특히 1948년 7월 16일 이후 피해 배상과 관련된 사망자 명단이나, 1951년과 1952년 경상북도 보고서의 사망자 명단은 거의 같다. 다만 1951년과 1952년 경상북도 보고서에 나와 있는 성명 미상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울진군 온양리의 박춘식, 조성용, 오재옥 씨를 가리킨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사망자 명단

구분	성명	한자 성명	출생연도 (당시 나이)	당시 주거지	비고
사망자 (14명)	김중선	金仲善	(19), (20)	강원도 강릉군 묵호읍 진리	사신 수습, 당시 유족 미확인 한자성명, 나이는 당시 자료 근거
	김동술	金東述	(39), (42)	강원도 울진군 평해면 후포리	한자성명, 나이는 당시 자료 근거
	권천이	權千伊	(43)	강원도 울진군 울진면 죽변리	한자성명, 나이는 당시 자료 근거
	김경화	金慶化	(26)	강원도 울진군 울진면 죽변리	한자성명, 나이는 당시 자료 근거 김기화(金其化)로도 표기
	이천식	李千植	(27)	강원도 울진군 울진면 죽변리	한자성명, 나이는 당시 자료 근거
	박춘식	朴春植	1909	강원도 울진군 울진면 온양리	현재 유족 확인 제적부상 한자성명, 출생연도로 교정
	조성용	趙聖龍	1907	강원도 울진군 울진면 온양리	현재 유족 확인 제적부상 한자성명, 출생연도로 교정
	오재옥	吳載玉	1917	강원도 울진군 울진면 온양리	현재 유족 확인 제적부상 한자성명, 출생연도로 교정
	고원호	高元鎬	(18), (19)	경북 울릉도 남면 도동	한자성명, 나이는 당시 자료 근거
	김해술	金海述	(19), (27)	경북 울릉도 남면 도동	한자성명, 나이는 당시 자료 근거
	채일수	蔡一洙	(27), (28)	경북 울릉도 남면 도동	당시 유족 미확인 한자성명, 나이는 당시 자료 근거
	최덕식	崔德植	1916	경북 울릉도 남면 저동	사신 수습, 현재 유족 확인 제적부상 한자성명, 출생연도로 교정
	김해도	金海島	1922	경북 울릉도 남면 저동	현재 유족 확인 제적부상 한자성명, 출생연도로 교정
	김태현	金泰賢	1917	경북 울릉도 남면 저동	현재 유족 확인 제적부상 한자성명, 출생연도로 교정

사망자를 당시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가 8명(강릉군 1명, 울진군 7명)이고, 경상

2018년 4월 19일 오재옥 씨의 유족(딸 오명자,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인터뷰.

북도 울릉도가 6명(도동 3명, 저동 3명)이다.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보면, 강원도(목호읍)가 1명, 경상북도가 13명(울진군 7명, 울릉군 6명)이다.

다음으로 사건 후 부상자 명단의 변화를 보면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시기별 부상자 명단 변화

일자		1948년				1951년	1952년
		6. 10.	6. 11.~15.	7. 3.~4.	7. 16.~8. 4.	9. 1.	9. 24.
부상자	중상	장학상 이상주	장학상 이상주	장학상 이상주 권진문	장학상 이상주	장학상 이상주 권진문	장학상 이상주 권진문
		이완식	이완식	김태용			
	경상			박춘일 성명 미상 1명		성명 미상 3명	성명 미상 3명
기타		부상 10명 (중상 2명, 경상 8명)					
출처		현지 청취, 경찰 보고, 언론 보도		언론 보도	언론 보도 (피해 배상)	경상북도 보고서	경상북도 보고서

<표 12>을 보면, 장학상과 이상주는 사건 초기부터 중상자로서 부상자 명단에 있었고 그 외에는 몇몇 이름들이 오르내렸다. 다만 울진군 온양리의 권진문은 1948년 7월 언론 보도와 1951년과 1952년 경상북도 보고서에 장학상, 이상주와 함께 부상자 명단에 올라있다. 현재 울진군 온양리에 거주하는 권진문 씨 유족에 따르면, 권진문 씨는 다리에 화상을 크게 입었다고 한다.<sup>77</sup>

<표 13> 부상자 명단

구분	인원	이름	출생연도 (나이)	당시 주거지	비고
중상자	3명	장학상	(35)	경상북도 울릉도 남면 저동	
		이상주	(31)	경상북도 울릉도 남면 저동	
		권진문	1904	강원도 울진군 울진면 온양리	출생연도는 유족에게서 확인
경상자	최소 3명	* 성명 미상 최소 3명 <sup>78</sup>			

77 2018년 4월 19일 권진문 씨의 유족(4남 권길웅, 경북 울진군 울진읍 온양리) 인터뷰.

경상자들의 경우에는 피해자 수나 이름이 자료마다 차이가 있다. 사건 직후에는 부상자를 10명으로 보았는데, 그중 중상자를 3명으로 보면 경상자는 7명이 된다. 1951년과 1952년 경상북도 보고서에는 중상 3명, 경상 3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요컨대 신원이 확인된 중상자 3명을 제외하면 당시 경상자는 최소 3명에서 7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표 13) 참조). 또한 앞서 살펴본 미군 소청위원회의 조사결과(피해 건수 총 36건)를 기초로 한다면 경상자는 약 5명으로 추정된다.<sup>79</sup>

## IV. 인명 및 선박 피해에 대한 배상 현황

### 1. 인명 피해에 대한 배상 현황

피해액과 관련된 공적 기록으로는 1951년과 1952년 경상북도 보고서에 선박 4척의 손해액이 약 94만 원이라고 기록할 뿐 그 외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피해 추정액과 피해 배상액을 파악할 수 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울진군 죽변어업조합 관내에서는 미군 당국자들이 1948년 7월 1일부터 피해자 및 그 유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배상액은 울진군 죽변어업조합에서 취합하여 강원도 수산과에 보고되었다.<sup>80</sup> 울진군 관내에서 지급된 배상금은 1차로 박춘식 등 7명의 유가족에게 지급되었고 그 후 후포리 김동술의 유가족에게도 지급되었다.<sup>81</sup> 울릉도 관내 피해자들에게도

78 당시 언론 보도에는 이완식(목호읍), 김태홍(평해면)을 비롯하여 박춘일, 김태용 등이 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그외 울릉도 주민 윤영도 등도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도 있다. 『대구시보』, 1948년 7월 22일, “독도사건, 본도 관계 보상금 불과 210만 원”.

79 앞에서 언급한 “Ⅲ. 3. 2) 독도 현지 조난자 구조 및 피해 조사 현황” 참조.

80 죽변어업조합 관내 피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이 글의 “〈표 7〉 울진군 관내 피해 배상 관련 사망자 명단” 및 관련 내용 참조.

81 『남선경제신문』, 1948년 8월 4일, “독도사건의 유족들, 살아갈 앞길은 아득하고 격랑 같은 원한 무엇으로 푸리”.

배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사망자 5명과 중상자 2명에게 배상금이 지불되었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2명(채일수, 김종선)의 유족들은 배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sup>82</sup>

사망자의 유족 또는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은 1948년 6월 29일 이후 A.W. 위니아크지크 대위 등 미군 소청위원들이 직접 울진군과 울릉도 등을 현지 방문하여 지급하였다. 그들은 유족 또는 피해자들을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에 한 사람씩 올라오도록 하여 배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배상금이 적다고 문제를 제기하면 조금씩 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했다고 한다.<sup>83</sup> 배상금은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부조금 또는 위자료의 성격으로 지급되었다.<sup>84</sup> 당시 언론에 나온 사망자의 피해배상 현황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사망자 피해 배상 현황

	성명	배상금	당시 주거지	비고
1	김종선	미지급	목호읍 진리	※ 당시 유족 미확인
2	김동술	280,000원	평해면 후포리	
3	권천이	400,000원	울진면 죽변리	
4	김경화	220,000원	울진면 죽변리	※ 당시 언론에는 '김기화'로도 표기
5	이전식	160,000원	울진면 죽변리	
6	박춘식	340,000원	울진면 온양리	
7	조성용	340,000원	울진면 온양리	
8	오재욱	340,000원	울진면 온양리	
9	고원호	60,000원	울릉도 도동	
10	김해술	116,000원	울릉도 도동	
11	채일수	미지급	울릉도 도동	※ 당시 유족 미확인
12	최덕식	340,000원	울릉도 저동	

82 울릉도 관내 피해배상과 관련하여는 이 글의 “<표 8> 울릉도 관내 피해 배상 관련 사망자 명단” 및 관련 내용 참조.

83 『남선경제신문』, 1948년 8월 7일, “독도사건 현지 좌담회(3)”.

84 『동아일보』, 1948년 7월 16일, “독도사건 배상지불, 죽변 관내에 248만 원”; 『수산경제신문』, 1948년 7월 31일, “독도사건 배상 지불, (기법선) 수리비 불과 만여 원, 울릉도 어조 관하에 212만 원”.

## 1948년 독도폭격사건의 인명 및 선박 피해 현황

13	김해도	280,000원	울릉도 저동	
14	김태현	220,000원	울릉도 저동	
	합계	3,096,000원		

출처 : 1948년 7월 16일~8월 4일간 국내 신문기사

부상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 현황은 다음의 <표 15>와 같다. 그런데 배상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중상자들인데, 울진군 온양리의 권진문 씨에게 배상금이 지급되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 권진문 씨 유족에 따르면 권진문씨는 양쪽 다리 허벅지 아래쪽에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어 수술도 받았으나, 그 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sup>85</sup> 경상자들의 경우는 피해 배상이나 치료는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sup>86</sup> 부상자에 대한 배상금은 치료비로 지급되었다.<sup>87</sup>

<표 15> 부상자 배상 현황

	성명	부상정도	배상금
1	장학상	중상	71,500원
2	이상주	중상	128,000원
3	권진문	중상	미확인
	합계		199,500원 + 미확인

출처 : 1948년 7월 24일, 7월 31일 국내 신문기사<sup>88</sup>

### 3. 선박 피해에 대한 배상 현황

1951년과 1952년 경상북도 보고서에는 선박 4척이 침몰했다고 기록되

85 2018년 4월 19일 권진문 씨의 유족(4남 권길웅, 경북 울진군 울진읍 온양리) 인터뷰

86 『대구시보』, 1948년 7월 22일, “독도사건, 본도 관계 배상금 불과 210만 원”.

87 『수산경제신문』, 1948년 7월 31일, “독도사건, 배상 지불, (기법선) 수리비 불과 만여 원, 울릉도 어조 관하에 212만 원”.

88 『조선중앙일보』, 1948년 7월 24일, “독도사건 울릉도 관내 배상, 경상에 12만 원, 중상에 7만 원, 사망엔 6만 원도 지불”; 『수산경제신문』, 1948년 7월 31일, “독도사건, 배상 지불, (기법선) 수리비 불과 만여 원, 울릉도 어조 관하에 212만 원”.

어있다. 하지만 1948년 사건 직후 국회 회의록 및 언론 보도 등을 보면 선박 11척이 격침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후에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 선박의 피해 규모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표 16〉 참조). 미군 당국에서는 선박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했는데, 신문 기사마다 선주의 이름과 배상금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sup>89</sup> 선박 피해에 관한 배상 현황을 보면, 기선(또는 기범선, 발동선)이 5척이고, 범선(또는 전마선)이 9척으로 모두 14척의 피해 선박에 대해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표 16〉 참조).<sup>90</sup>

〈표 16〉 선박 피해배상 현황

연번	선주명	배상금	피해 내역	거주지	비고
1	윤영목	2,088,250원	기범선 1척	목호	목호어업조합
2	김학기	99,740원	범선 1척	목호	목호어업조합
3	김갑성	65,400원	범선 1척	목호	목호어업조합
4	이광술	40,000원	범선 1척	영덕	목호어업조합
5	이성월	934,300원	기범선 1척	울진	목호어업조합
6	김정택	28,000원	범선 1척	울진(명해)	목호어업조합
7	오종석	684,200원	기범선 1척, 범선 3척	울진(죽변)	죽변어업조합
8	안찬수	730,000원	발동선 1척	울릉도	울릉도어업조합
9	권원암	350,000원	발동선 1척, 범선 1척	울릉도	울릉도어업조합
10	안말술	50,000원	범선 1척	울릉도	울릉도어업조합
	합계	5,069,890원	기범선(발동선) 5척, 범선 9척		

출처: 1948년 7월 16일 ~ 9월 3일간 국내 신문기사

89 『경향신문』, 1948년 7월 16일, “독도사건 배상, 죽변 어조합 관내 248만 원”; 『동아일보』, 1948년 7월 16일, “독도사건 배상 지불, 죽변 관내에 248만 원”; 『수산경제신문』, 1948년 7월 16일, “독도사건 배상 지불 죽변 관내만 248만 원”; 『조선일보』, 1948년 7월 16일, “5백만 원 피해에 68만 원 배상, 죽변 어조합 관내에 248만 원”; 『조선중앙일보』, 1948년 7월 16일, “독도사건 배상, 죽변 관내 248만 원”; 『조선중앙일보』, 7월 24일, “독도사건 울릉도 관내 배상, 경상에 12만 원 중상에 7만 원, 사망엔 6만 원도 지불”; 『수산경제신문』, 1948년 7월 31일, “독도사건 배상 지불, (기범선) 수리비 불과 만여 원, 울릉도 어조 관하에 212만 원”; 『강원일보』, 1948년 8월 31일, “독도사건 후문, 배상액은 피해액의 약 반”; 『대한일보』, 1948년 9월 3일, “독도사건 미군 배상금, 목호 어조에 325만 원”; 『동아일보』, 1948년 9월 3일, “독도사건 배상, 목호 어민이 추가 배상 요구”.

90 『남선경제신문』의 1948년 6월 26일과 7월 2일자 기사를 보면, 기선 5척과 범선 8척의 행방이 아직 불명하다고 되어있다. 『남선경제신문』, 1948년 6월 26일, “독도 조난동포 위문금 위문품 모집”; 『남선경제신문』, 1948년 7월 2일, “사고: 본사 주최, 독도 조난동포 위문금 위문품 모집”.

그런데 선박에 대한 피해 배상을 둘러싸고 피해 추산액에 비해 배상금이 적어서 불만이 크게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묵호어업조합 관내에서 선박 관련 피해 총액은 8,000,000 원이나 되었으나, 실제 지급된 배상액은 3,255,690 원 밖에 되지 않았다.<sup>91</sup> 그리고 울진군 죽변리의 선주 오중석 씨의 선박 피해에 대해서는 684,200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였는데, 520만 원으로 계상한 그의 피해 총액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sup>92</sup>

#### 4. 단체의 위문금품 지급

미 제24군단 소청위원회를 통한 배상금 지급 외에 언론사에서도 위문금품을 모집하여 유족 및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어업단체와 신문사(수산경제신문사, 남선경제신문사, 부산 산업신문사 등)에서는 사건 직후부터 모집한 위문금품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고 위령제도 지냈다.<sup>93</sup> 특히 대구의 남선경제신문사에서 위문금품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위문금품을 공개 모집하였다. 당초 모금 목표액을 80만 원 정도로 하였는데, 그에 좀 미치지 못하였으나 64만 원을 모금하였다.<sup>94</sup> 이들은 그해 7월 말 피해자 및 유족들을 위로하는 위문사를 울릉도 현지에 파견하여 유족들에게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위령제도 지냈다.

91 『자유신문』, 1948년 9월 3일, “묵호 어조에 325만 원, 독도사건 배상금”.

92 오중석 씨가 계상한 선박 피해 상황을 보면, 기범선(경양환) 50마력 19,86톤 파손에 대한 수선료 200만 원, 범선(혹호환) 150만 원, 범선(행정환) 침몰 100만 원, 범선(해양환) 파손 70만 원 합계 520만 원이었다. 『동아일보』, 1948년 7월 16일, “독도사건 배상 지불, 죽변 관내에 248만 원”

93 1951년 및 1952년 경상북도 보고서(앞의 각주 22, 26) 참조.

94 모금액 647,219원 중 615,219원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전달하고 32,000원은 관련 비용으로 썼다고 한다. 『남선경제신문』, 1948년 8월 3일, “독도 조난 동포 유족 위문사 보고”.

## V. 맺음말

지금까지 1948년 독도폭격사건의 인명 및 선박 피해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건 관련 공적 기록이나 언론 보도상 사망이나 중상 등 인명 피해 현황에서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망자는 모두 14명이었고 그중 3명의 시신(김중선, 최덕식, 성명 미상 1명)을 수습하고 11명의 시신은 수습하지 못하였다. 시신을 수습한 3명 중 1명의 성명 미상자는 시신의 훼손 정도가 심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행방 불명이 된 12명은 경찰에 의해 사망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sup>95</sup>

중상자는 모두 3명이었고 그 신원도 확인이 되었다. 반면, 경상자는 최소 3명에서 7명(또는 약 5명)으로 파악된다. 경상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은, 병원에 입원한 중상자에 비해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바로 귀가를 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미 제24군단에서는 소청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사망자의 유족 및 부상자, 그리고 선박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경상자에게는 배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의 연령과 경제 능력, 피해 정도 등에 맞게 배상금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sup>96</sup> 그리고 배상금이 사망자의 직계 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선박의 피해 현황도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배상금 지급 현황을 기준으로 보면 기선(5척)과 범선(9척)을 포함하여 최소 14척이 침몰 또는 파손되었다.

앞으로 1948년 당시 미군 특별조사대와 소청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등이 발굴된다면 좀 더 명확하게 독도폭격사건의 인명 및 선박 피해 현황을 검

95 필자가 확인한 일부 행방불명자의 제적부를 보면, 울진군 지역의 행방불명자는 바로 행정 공부상 사망자로 처리가 되었지만, 울릉군 지역의 행방불명자는 바로 사망자로 처리되지 않았던 것 같다.

96 울릉도 등지에 있는 사망자의 일부 유가족 현황에 대해서는, 『남선경제신문』, 1948년 8월 4일, “독도사건의 유족들, 살아갈 앞길은 아득하고 격랑 같은 원한 무엇으로 푸리”.

증할 수 있을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그 규모는 이 글에서 검토한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당시 울릉도 현지에 있었던 기자들의 취재와, 수차례 구조 및 조사활동 등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 바로바로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1948년 독도폭격사건의 인명 및 선박 피해 현황과 관련하여 주목해 서 봐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14명의 사망자 중 8명이 울릉도 이외 지역(강원도 묵호, 경상북도 울진군 등)에서 온 어민이며, 어선의 선주도 10명 중 7명이 동해안 지역(강원도 묵호, 경북 울진군, 영덕군 등)의 사람들이다. 독도폭격사건으로 울릉도 주민보다 오히려 그 외 동해안 지역에서 온 어민들의 피해가 컸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독도가 울릉도 주민은 물론이고 강원도와 경상북도 등 동해안 지역 어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또한 폭격 사건의 사망자 중 울진군 온양리 주민들의 「제적부」를 보면, 이들이 ‘경상북도 울릉도 소속 독도’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1948년 6월 미군정 당국의 행정공부에 독도가 울릉도 소속으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을 뜻하며, 독도 영유권 증명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sup>97</sup>

강원도 속초시와 울릉군의 사동리와 저동리 그리고 울진군 온양리 등지에는 아직도 그날의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유족들이 있다. 특히 온양리 마을에는 1948년 6월 8일 모두 5명의 주민들이 독도에 갔는데, 그중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살아 돌아왔지만 그중 1명은 중상을 당하였다. 그들은 모두 친지 또는 이웃관계였다. 사망자의 유족들은 물론이고 살아남은 자들도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안고 한평생을 살아왔다. 1948년 독도폭격사건의 피해자 한사람 한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면서 그 피해자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들과 그들 유족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보듬어줄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97 1948년 독도폭격사건의 사망자(박춘식, 조성용, 오재욱)의 「제적부」

## 참고문헌

### 1. 자료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소장자료

- Telegram from CG USAFIK to CINCFE (RG 554 Entry A1 1380 (USAFIK Adjutant General, Radio Messages, 1945-1949), Box 193).
- Telegram from CG XXIV Corps to CINCFE (RG 554 Entry A1 1378 (USAFIK Adjutant General, General Correspondence (Decimal Files), 1945-1949), Box 141).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 경상북도 지사가 내무부 장관에게 보낸 보고서(1951. 9. 1.): 「독도(죽도)에 관한 조사의 건(對 4284년 8월 31일 무진 통첩)」.
- 경상북도 지사가 외무부 장관에게 보낸 보고서(1952. 9. 24.), 「독도 연해 조 난사건 전말 보고의 건(外情 제1318호, 4285. 9. 5일자)」.

국회 회의록

- 「제1회 국회 속기록 제11호」, 1948년 6월 15일.
- 「제1회 국회 속기록 제27호」, 1948년 7월 7일.

1948년 독도폭격사건 사망자 관련 자료.

- 1948년 독도폭격사건 사망자의 「제적부」.
- 1948년 독도폭격사건 사망자의 「가계부(家系簿)」.

국내외 언론 보도

- 신문기사(1948년 6월 11일 ~ 1950년 6월 9일): 『강원일보』, 『경향신문』, 『공업신문』, 『군산신문』, 『남선신문』, 『남선경제신문』, 『대구시보』, 『대동신문』, 『대중일보』, 『대한일보』, 『동광신문』, 『동아일보』, 『민주신문』, 『부산신문』, 『부인신보』, 『서울신문』, 『수산경제신문』, 『연합신문』, 『자유신문』,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현대일보』, 『한성일보』, 『현대일보』, 『호남신문』, *Stars and Stripes*,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 언론 보도(1999년 ~ 2015년): 『경북매일』, 『경향신문』, 『국민일보』, 『국제신

## 1948년 독도폭격사건의 인명 및 선박 피해 현황

문』, 『대구일보』, 『매일신문』, 『문화일보』, 『세계일보』, 『신경북일보』, 『영남일보』, 『영남투데이』, 『충청투데이』, 『한겨레』, 『한국일보』, 『SBS』, 『TV리포트』

### - 잡지 기사

한규호, 1948. 7, “독도사건 현지보고, 참극의 독도”, 『신천지』 1948년 7월호.

조춘정, 1948. 8, “독도폭격사건 진상”, 『민성』 제4권 제7, 8호.

## 2. 단행본 및 논문

외무부정무국, 1955, 『독도문제개론(외교문제총서 제11호)』.

정병준, 2010, 『독도 1947』, 돌베개.

최재목·이태우·김도운·김은령 편역, 2017, 『해양 이후 울릉도·독도 조사 및 사건 관련 자료 해제 I』, 학진출판사.

김응학, 2012. 6, 「증언을 통해 본 1948년 독도폭격사건」, 『독도논총』 제6권 제1호.

독도사건편찬위원회 편, 2019, 「독도폭격사건」, 『독도사건(개정증보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성근, 2000. 7, 「다시 쓰는 독도폭격사건」, 『외대』 46호(여름),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 교지편집위원회.

\_\_\_\_\_, 2003, 「독도폭격사건의 국제법적 쟁점 분석」, 『독도연구총서』 제10권, 독도연구보전협회.

## 국문초록

이 글의 주된 목적은 1948년 6월 8일 독도에서 일어난 폭격 사건의 인명 및 선박의 피해 및 배상 현황을 밝히는 데 있다. 1948년 독도폭격사건의 사망자 수와 관련하여 199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20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으며 그 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그 주장이 사라지지 않고 회자되고 있다. 1948년 사건의 인명 및 선박의 피해 현황을 밝히는 것은 사망자 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기관총 사격 여부 등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일보 전진하는데도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1948년 사건 관련 미국과 한국의 공적 기록과 당시 언론 보도, 그리고 2018년 필자가 수행한 현지 조사 결과 등을 검토 자료로 활용하였다. 특히 공적 기록으로는 1948년 사건과 관련된 미군 측 자료, 1948년 국회 회의록 및 경찰 보고서, 1950년 경상북도에서 건립한 독도조난어민위령비, 1951년과 1952년 경상북도에서 중앙정부로 보낸 보고서 등이 있다.

1948년 독도폭격사건으로 한국 어민 14명이 사망하였는데 그중 3명의 시신이 수습되고 나머지 11명은 실종되었다. 당시 지역별 기준으로 보면, 강원도 지역 주민이 8명, 울릉도 주민이 6명 사망하였다. 부상자는 중상 3명, 경상은 최소 3명 이상으로 파악된다. 피해 선박은 동력선과 무동력선을 포함하여 최소 14척 이상 침몰하거나 파손되었다.

당시 한국은 미군정 하에 있었으며, 미 제24군단 사령부에서는 특별조사대와 소청위원회를 독도 등 현지로 파견하여 직접 조사하고 또 배상하였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배상액이 부족하다고 문제 제기도 하였다. 이 사건의 인명 및 선박 피해는 독도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도 울릉도 주민뿐만 아니라 강원도와 경상북도 주민들에 의해 이용되었음을 확인시켜준다.

〈주제어〉

독도, 울릉도, 폭격 사건, 1948년, 독도조난어민위령비, 미 제24군단

Abstract

The Damages on the Ships and Fishermen in the 1948 Dokdo Bombing Incident

Hong, Seong Keun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damages on the ships and fishermen in the Dokdo bombing incident on June 8th, 1948 and the reparation for the case. In particular, the fishermen's death toll of this incident was raised as an issue in the audit of Korea's National Assembly in 1999, and the number of 200 deaths still has been in the talk of the Korean society. Understanding the damages on the fishermen and ships caused by the incident seems to be important in order to prevent any unnecessary controversy about the casualties in the 1948 incident and to take a closer look at the overall facts of the case.

This study is based on the official records about 1948 and newspapers reports of those days. Official records include the United State's military documents relating to the 1948 incident, reports from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Joseon Police in 1948, the memorial monuments for the fishermen built in 1950, and the documents from Gyeongsangbuk-do in 1951 and 19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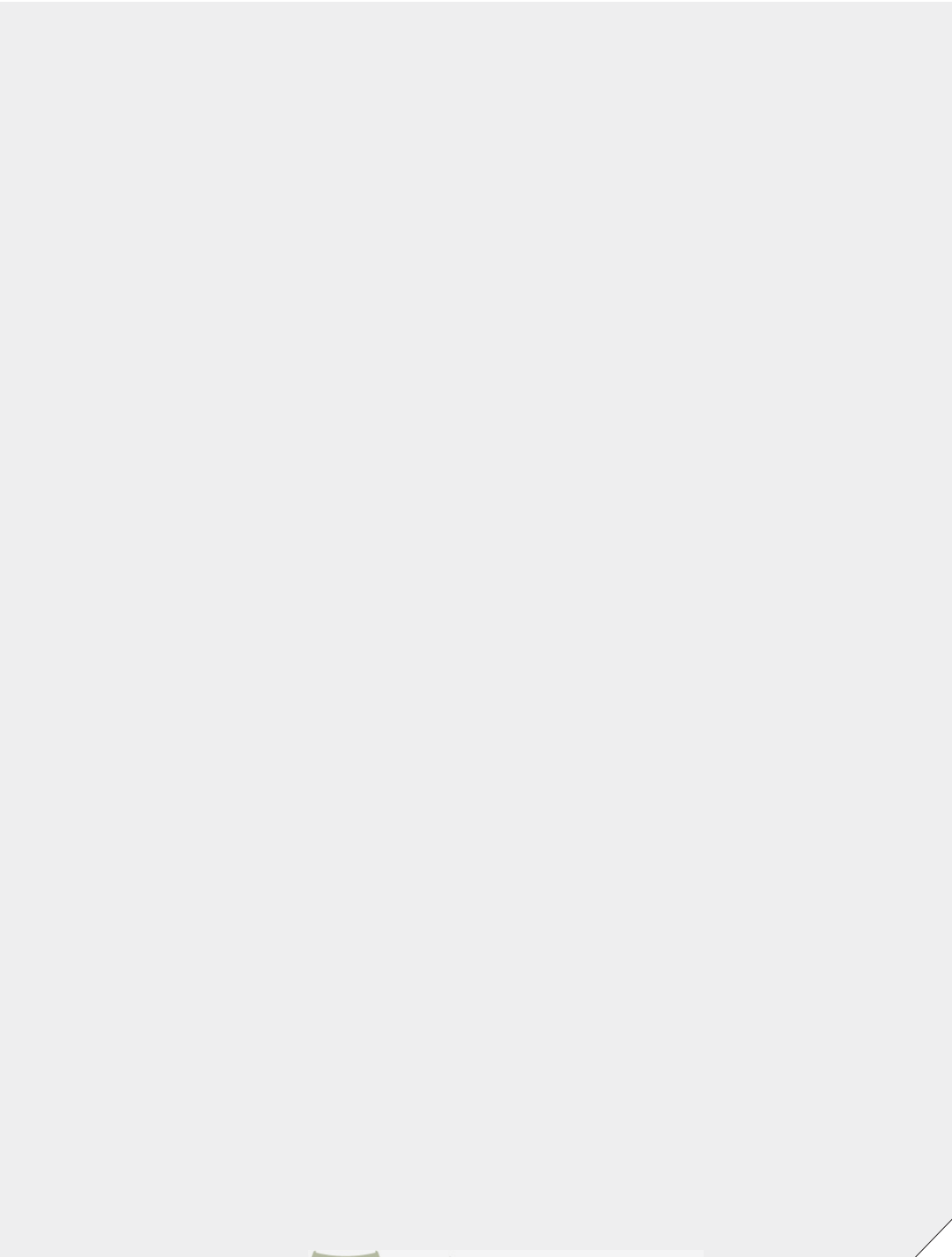
Due to the bombing in 1948, 14 fishermen were killed, and among them, three corpses were found and 11 were missing. By regional groups in those days, eight fishermen from Gangwon-do and six from Ulleungdo died. The incident left three people seriously injured and at least three people slightly wounded. More than 14 ships including power and non-power vessels were reported as damag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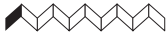
or sunk.

At the time, South Korea was under the United States military administration, hence, the 24th Corps of US Army in Korea investigated the incident and made reparation accordingly. There was, however, some complaints reported about the lack of reparation. In addition, the damages to the fishermen and ships in this incident can confirm that Dokdo was used not only for the Ulleungdo residents, but also for the fishermen of Gangwon-do and Gyeongsangbuk-do right after the World War II.

#### Key Words

Dokdo, Ulleungdo, Bombing Incident, 1948, the Dokdo Memorial Monument for the Fishermen, the 24th Corps of US Army.





# 독도의 소속 및 호칭에 관한 미국 정부의 인식 변화

박병섭 일본 竹島=독도 연구넷 대표

## 1. 머리말

광복 후 미국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46년 미국이 중심이 된 연합국총사령부(SCAP)는 일본 정부에 대한 지령 SCAPIN-677에서 리앙쿠르암 'Liancourt Rocks(Take Island)', 즉 독도를 일본 구역에서 제외하고, 관련 지도<sup>1)</sup>에서 이 섬 'TAKE'를 남한(South Korea) 구역에 포함시켰다. 또한 국무부는 대일강화조약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리앙쿠르암 영유를 당초는 인정했다. 그러나 1951년에는 이를 부인하는 러스크(Dean Rusk) 서한을 주미한국대사에게 보냈으며, 국무부의 독도에 관한 인식이 크게 변화했다.

미국 해군은 일찍부터 한국 연안에 관한 수로지에서 리앙쿠르암을 기재했다. 이에 관해 이진명은, “미국 해군은 확고하면서도 일관되게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여 울릉도의 뒤나 앞, 다른 한국 지명들 사이에 분류하고

\* 논문 투고일: 2020. 4. 13. 심사 완료일: 2020. 5. 21. 게재 확정일: 2020. 5. 27.

1 「SCAP ADMINISTRATIVE AREAS, JAPAN AND SOUTH KOREA」, 1946.Feb.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sup>2</sup> 그러나 이진명의 조사에는 1951년 이전 수로 지나 1968-1994년 사이의 수로지 등이 빠져 있다. 또한 미국이 발행한 일본 수로지에는 언급이 없다. 그 후 미국 수로지에 관한 선행연구는 없는 듯 하다.

미국 중앙정보부(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보고 독도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CIA는 1951~1981년에 수집한 자료의 일부를 2000년 및 2010년에 공개했다. 이들 자료 중 독도에 대한 분석에 관해서는 정병준의 연구가 있다.<sup>3</sup> 이에 따르면 CIA는 기본적으로 리앙쿠르암을 한국의 항목에 표기하고 동시에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기록했지만, 1974년에 작성한 보고서에 첨부된 지도에서는 리앙쿠르암을 일본 영토로 그렸다고 한다. 그러나 1977년에는 독도라는 명칭이 일반적이라 하여 이를 사용했다고 한다.

미국에서 최종적으로 독도의 명칭과 소속을 결정하는 기관은 내무부 지명위원회(Board on Geographic Names, BGN)다. 2007년 BGN이 리앙쿠르암의 소속을 한국에서 ‘미지정’으로 바꾼 사건이 있었다. 다음 해 이 사실을 알게 된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리앙쿠르암의 소속을 되돌려 기재할 것을 요청했다. 마침 방한을 예정하고 있었던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은 한·미 우호를 중시하여 리앙쿠르암의 소속을 한국으로 되돌렸다. 이 사건 당시 BGN의 독도 표기 문제에 관해서는 호사카 유지의 연구가 있다.<sup>4</sup> 그러나 이 사건 이전 및 이후 BGN의 독도 표기에 관한 선행연구는 없는 것 같다.

위와 같이 미국 정부의 독도 인식에 관해서는 단편적인 소식이나 지식이 있을 뿐 종합적인 연구가 없다. 본고는 미국 정부기관이 역사적으로 독도의 소속이나 호칭을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그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미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호칭의 타당성도 고찰한다. 이 글의 인용문에

2 이진명, 1998, 『서양자료로 본 독도』, Pour l'Analyse du Folklore, 59쪽.

3 정병준, 2013, 「미국 정보기관의 독도관련 자료와 독도문제 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6호.

4 호사카 유지, 2012, 「지명표기를 통해서 본 일본의 영토문제에 대한 미국의 인식」, 『일본문화연구』 제42집, 591-611쪽.

서 ( )는 원문대로이며, [ ]는 필자의 주다.

## II. 수로 당국의 독도 인식

### 1. 해군의 수로지, 1944년 이전

미국에서 이른 시기부터 독도에 관심을 가진 기관은 해군 수로국이다. 1909년부터 수로국은 영국 해군 수로국이 간행한 수로지를 바탕으로 『아시아 수로지』 전 6권을 간행했다. 제1권(1909)의 부제는 ‘시베리아 동해안, 사할린 섬 및 코리아’이며 수로지의 식별 기호는 H.O. No.122다. 이에 독도는 ‘Hornet islands (Liancourt rocks)’라는 표제어로 다음과 같이 기재되었다.

호넷 섬(리양쿠르암)은 두 개의 불모 바위섬이며, 새똥이 하얗게 쌓여 있다. 두 섬은 북서쪽에서 남동쪽에 걸쳐 약 1마일에 달한다. 두 섬 사이의 거리는 1/4 마일이며, 하나의 초막(礁脈)을 이루는 것 같다. 서도의 높이는 약 410피트이며 설탕을 쌓은 것 같은 모양이다. 동도는 약간 낮으며 정상은 평탄하다. 이 근처의 수심은 깊은 듯하지만, 그 위치는 하코다테(函館)로 향해 일본해를 항행하는 항로 상에 있으므로 아주 위험하다.

위치-일본 정부가 1908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동도는 북위 37도 14분 18초, 동경은 131도 52분 22초다.<sup>5</sup>

독도의 표제어를 호넷 섬이라고 기록한 것은 영국이 작성한 『중국 수로지』를 인용했기 때문이다. 이 수로지의 제2판(1855)은 영국 함선 호넷이 독

5 Hydrographic Office, 1909, *Asiatic Pilot*, Vol.1, East Coast of Siberia, Sakhalin Island and Korea, No.122, Hydrographic Office.

도를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생각하고 섬 이름을 호넷 섬이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제3판에서는 프랑스 선박 리앙쿠르가 이미 독도를 1849년에 발견했음을 소개하고, 섬 이름을 리앙쿠르로 변경했다.<sup>6</sup> 그런데 이들 『중국 수로지』는 리앙쿠르암을 한국 연안에만 기재하고 일본 연안에는 기재하지 않았다. 영국은 리앙쿠르암을 한국 영토로 간주한 것이다.

그 후 미국 해군 수로국은 『아시아 수로지』 제1권 제2판을 1918년에 간행했다.<sup>7</sup> 이 책의 부제를 ‘시베리아, 사할린 섬 및 조센(Chosen)’으로 하고 초판의 표기 ‘코리아’를 일본의 호칭 ‘조센’으로 바꾸었다. 이는 일제 강점기에 간행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호칭을 따랐던 것이다. 제2판의 독도에 관한 기술은 제1판과 똑같다. 위의 ‘조센’이라는 호칭은 1932년에 간행된 『시베리아, 조센 수로지』 제3판에 이어진다.<sup>8</sup> 제3판의 식별기호는 H.O. No.122이며 『아시아 수로지』 제1권과 같다. 따라서 이 제3판은 『아시아 수로지』 제1권 제2판을 이어받은 것이다. 제3판에서 독도의 표제어는 ‘Liancourt rocks(Hornet islands or Take Shima)’이며, 새로 ‘Take Shima’가 추가되었다. 이는 1905년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명명해 시마네(島根)현 관할로 삼은 것을 뒤늦게 반영한 것이다. 제3판의 내용은 제2판의 내용에 더하여, 섬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상륙이 가능한 평탄한 자갈 해안이 몇 군데 있으며, 여름에는 수많은 강치를 잡는 자들이 가끔 온다고 기록했다.

한편, 해군 수로국은 일본 연해를 『아시아 수로지』 제2권(1910) ‘일본의 도서’에 기재했는데, 이에 독도를 기재하지 않았다.<sup>9</sup> 이즈음 일본 수로부의 『일본 수로지』 제4권 제1개판(1907)은 일본이 1905년에 독도를 시마네현 관할로 삼았던 것을 반영하여 처음으로 독도를 표제어 ‘竹島(Liancourt

6 Hydrographic Office, Admiralty, 1858, *China Pilot*, London, Hydrographic Office, Admiralty, 2nd ed; Hydrographic Office, Admiralty, 1861, *China Pilot*, 3rd ed.

7 Hydrographic Office, 1918, *Asiatic Pilot*, Vol.1, East Coast of Siberia, Sakhalin Island and Chosen, No.122, 2nd ed., Hydrographic Office.

8 Hydrographic Office, 1932, *Sailing Directions for Siberia and Chosen*, 3rd ed., H.O. No.122, Hydrographic Office.

9 Hydrographic Office, 1910, *Asiatic Pilot*, Vol.2, The Japan Islands, Hydrographic Office.

rocks)’로서 기술했다. 이를 알게 된 미국 해군은 독도를 『아시아 수로지』 제 2권 제2판(1920)부터 ‘Liancourt rocks(Hornet islands)’라는 표제어로 기재했다. 내용은 한국 연안을 기록한 『아시아 수로지』 제1권 제2판과 거의 같다. 이때부터 미국의 수로지는 독도를 한국과 일본 양쪽 수로지에 기재하게 되었다. 다음 제3판(1930)에서는 독도의 표제어를 ‘Hornet islands(Take Shima) (Liancourt rocks)’라 하여, 독도의 일본 이름 ‘Take Shima’도 기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해군은 리앙쿠르암을 당초는 한국 영토로 보고 한국 연안을 기술한 수로지에만 기재했으나, 일본이 이 섬을 시마네현 관할로 삼았던 1905년에서 15년이 지난 1920년부터는 일본 연안을 기술한 수로지에도 이중으로 기재하게 되었다.

## 2. 해군의 수로지, 1945~1971년

### 1) 일본 연안 수로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 해군 수로국은 『아시아 수로지』를 개편하고, 수로지의 표제를 대체로 각국별로 하였다. 독도는 『일본 항해 지침』 제1권 (H.O. Pub. 123A) 초판(1945)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다케시마(리앙쿠르암) \* (37°15'N., 131°52'E., H.O. Chart 3320)

불모이며 새똥 때문에 하얗게 된 두 바위섬과 험준한 여러 개의 바위로 구성되어 무인도다. 이 섬은 오키(隱岐)열도 북서 85마일에 위치하며, 쓰시마(對島)해협에서 블라디보스토크나 홋카이도(北海道)로 향하는 기선 항로 가까이 있다. 밤 혹은 어두운 날씨일 때 이 근처를 항해하는 자들에게 위험을 알리거나 항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두 섬은 우뚝 솟아 있으며, 제일 높은 서도의 정상은 515피트에 달한다. 보통 7-8월에는 강치를 잡는 사냥꾼들이 섬에 온다.

\*다케시마는 H.O. Pub.122에서도 기재되어 있다.<sup>10</sup>

이 수로지에서 독도의 표제어가 ‘Take Shima (Liancourt Rocks)’라고 되어 있으나, 이것이 독도가 일본 소속임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해군 수로국은 1951년에 제2판을 간행했다. 독도에 관한 기사는 표제어를 포함해 초판과 거의 같다. 다만 제2판은 초판의 내용에 더하여 “조심-다케시마는 1947년에 폭격연습장으로 지정되었다”라는 글이 추가되었다. 이는 리앙쿠르암이 SCAPIN-1778 (1947.9.16)에 의해 미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지정된 것을 알리는 것이다.

이 수로지는 1967년에 제3판이 간행되었다. 그런데 독도의 표제어는 의외로 ‘Tok To (Take Shima) (Liancourt Rocks)’다.<sup>11</sup> 제3판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제2판과 같으며, 강치사냥에 관한 글도 그대로이며 사실에 어긋난다. 한편 이 수로지는 독도에 등대가 1954년에 세워진 것을 반영하고, “Tok To (Take Shima)에서 빛이 발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에 따라 야간 항해 등 위험성에 관한 글이 삭제되었다. 독도 등대의 유의성이 국제적으로 평가 받은 것이다.

위의 수로지에서 폭격연습장 지정에 관한 글도 삭제되었다. 독도는 1951년 7월 SCAPIN-2160에 따라 미군의 폭격연습장으로 다시 지정되었다가, 일본이 독립한 후 1952년 7월 미·일합동위원회는 재차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9월 독도에서 미국 공군의 제2차 오폭사건이 일어나

10 Hydrographic Office, 1945, *Sailing Directions for Japan*, Vol.1 (Northern Part), H.O. No. 123A, 1st ed., Hydrographic Office, 597쪽. ‘H.O. Pub.122’는 『시베리아 및 조센(Chosen) 항해 지침』 제3판 등을 가리킨다.

11 Naval Oceanographic Office, 1967, *Sailing Directions For Japan*, Vol.1 (Northern Part), H.O. Pub.96, 3rd ed., Published by the U.S. Naval Oceanographic Office, 354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Tok To(Take Shima) (Liancourt Rocks) (37°15' N., 131°52' E., H.O. Chart 3320) consists of two barren, guano-whitened, and uninhabited rocky islets and several rocks, which appear to be steep-to. They lie near the steamer track leading from Tsushima strait to Vladivostok and to Hokkaido in a position 85 miles northwestward of Oki Retto. Both islets are cliffy, and the western and highest has a pointed summit, which rises 515 feet. They are usually visited by seal hunters in July and August. A light is shown from Tok To(Take Shima).

서 한국이 문제를 제기하자, 다음 해 3월에 지정이 해제되었다.

## 2) 한국 연안 수로지

미국 해군은 1947년 한국 연안을 『시베리아 동남 해안 및 한국 항해 지침』<sup>12</sup>(H.O. Pub.122) 초판에서 기재했다. 이에 독도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리양쿠르암(다케시마)\* (37°15'N., 131°52'E., H.O. Chart 3320)은 몇 개의 험한 바위에 둘러싸여 있고, 동서 방향으로 200야드 떨어진 불모의 두 개의 바위섬으로 구성된다. 두 섬은 절벽을 이루고 있고, 서도에서 가장 높은 곳은 515피트에 달한다. 두 섬은 코리안 해협에서 블라디보스토크나 홋카이도로 향하는 기선의 항로 가까이에 있다. 밤 혹은 어두운 날씨일 때 이 근처를 항해하는 자들에게 위험을 알리거나 항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조심-이들 바위는 1947년에 폭격 연습장으로 지정되었다.

\* H.O. Pub. 123A 『일본 항해 지침』 제1권(1945)에도 기재되어 있다.

이 수로지가 『일본 항해 지침』 초판과 다른 점은, 표제어 ‘다케시마(리양쿠르암)’가 ‘리양쿠르암(다케시마)’으로 바뀌고, ‘쓰시마 해협’의 명칭이 ‘코리안 해협’으로 변경되고, 강치사냥에 관한 글이 삭제되고, 독도의 원경사진이 게재되었던 것 등이다. 이 원경사진은 일본 수로부가 1933년에 간행한 『조선 연안 수로지』의 삽화를 베낀 것이다. 한·일 양국에 관한 수로지에서 해협의 명칭이 다르다는 것은 해군이 고유명칭은 각국의 호칭, 즉 엔도님(endonym)을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섬 이름은 한국 연안 수로지에서는 독도라고 해야 되는데, 수로 당국은 독도라는 이름을 몰랐던 듯 하다.

12 Hydrographic Office, 1947, *Sailing Directions For The Southeast Coast Of Siberia And Korea*, H.O. Pub. No.122B, 1st ed., Hydrographic Office.

미국 해군은 1951년에 『시베리아 동남 해안 및 한국 항해 지침』 제2판을 간행했다. 독도의 표제어는 ‘Liancourt Rocks(Tak shima)’다. ‘Tak’는 초판에서는 ‘Take’였으며, ‘Tak’는 오류다. 제2판의 내용은 제1판과 똑같다. 다만 『일본 항해 지침』에 관한 주기, 즉 이중 기재를 알리는 주기가 삭제되었다.

제2판의 수정 책자가 여러 차례 간행되었는데, 1964년에 간행된 ‘수정 제9번’에서 독도의 기술 내용이 약간 변했다. 독도 동도에 등대가 1954년에 세워진 것을 반영하고 동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에 따라 야간 항행의 위험성에 관한 글이 삭제되었다. 또한 폭격연습장 지정에 관한 글도 삭제되었다. 그런데 1967년에 간행된 ‘수정 제10번’에서는 이진명이 지적했듯이 독도의 표제어가 ‘Tok To(Take Shima) (Liancourt Rocks)’로 변경되었다.<sup>13</sup> 이는 『일본 항해 지침』 제3판(1967)에서 독도의 표제어를 ‘Tok To(Take Shima) (Liancourt Rocks)’라고 변경한 것과 부합한다.

이렇게 변경된 데는 이 해에 열린 제1회 ‘유엔 지명 표준화 회의(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UNCISG)’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이 회의의 총회결의문 1-(4)절은 국제 표준 지명은 가급적 엑소님(exonym), 즉 외래(外來)지명의 사용을 피한다고 결의했다.<sup>14</sup> 수로 당국은 이 결의에 따라 독도에서 등대를 관리하는 한국 측의 명칭에 따라 ‘Tok To’라고 표기했다고 보인다. 이는 해군이 독도를 한국 관할로 간주한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해군이 발행한 수로지에서 독도 이름을 정리하면 일람표 <표 1>과 같다. 표에서 소속국의 판단 기준은 같은 시기에 한국 수로지에만 독도가 기술되었을 경우는 한국으로, 한·일 양국 수로지에 독도가 기술되

13 이진명, 앞의 책, 138쪽.

14 『조선일보』, 2008. 07. 17, ‘독도가 국제표준地名’. 또한 아래 문헌에 따르면 1972년 제2회 UNCISG에서도 가능한 한 엑소님을 줄이고 엔도님, 즉 내생(内生)지명을 사용할 것이 결의되었다. 笹川啓·明野和彦·須賀正樹, 2019, 『第1回国連地名専門家グループ会合報告』, 『国土地理院時報』 132号, 150쪽.

었는데 두 수로지에서 표제어가 다를 경우는 중립으로, 표제어가 일치할 경우는 그 이름의 출처를 보고 판단했다. 이상과 같은 해군의 독도 인식을 요약하면, 1910년 이전에는 독도를 한국 소속으로 보고, 1920~1964년에는 중립적인 입장으로 보고, 1967년에는 다시 한국 소속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표 1〉 해군의 수로지(1909~1967)

『아시아 수로지』

연도	서지 사항	독도의 명칭	소속
1909	제1권, 제1판	[사할린 섬 및 코리아 향해 지침]	한국
1918	, 제2판	Hornet islands (Liancourt rocks)	
1910	제2권, 제1판	[일본향해지침] 없음	중립
1920	, 제2판	Liancourt rocks (Hornet islands)	
1930	, 제3판	Hornet islands (Take Shima) (Liancourt rocks)	

『시베리아 및 조센(Chosen) 향해 지침』

1932	제3판	Liancourt Rocks (Hornet Islands or Take Shima)	중립
------	-----	--	----

『시베리아 동남 및 한국 향해 지침』

1947	제1판	Liancourt Rocks (Take Shima)	중립
1951	제2판	Liancourt Rocks (Tak Shima)	중립
1964	, 수정9	상동	중립
1967	, 수정10	Tok To (Take Shima) (Liancourt Rocks)	한국

『일본 향해 지침』

1945	제1권, 제1판	Take Shima (Liancourt Rocks)	중립
1951	, 제2판	Tak Shima (Liancourt Rocks)	중립
1967	, 제3판	Tok To (Take Shima) (Liancourt Rocks)	한국

### 3. 국방부의 수로지

#### 1) 한국 연안 수로지

1972년 7월 해군 수로국은 공군의 ‘항공도(航空圖)정보센터’ 및 육군의 지도 서비스 부문 등과 통합되어 국방부 ‘국방지도제작국(Defense Mapping Agency, DMA)’으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수로지는 DMA ‘수로센터(Hydrographic Center)’가 간행하게 되었다. 이 해에 DMA는 『한국·중국 연안 항해 지침』 초판을 간행했다. 이는 확인을 못했지만 1976년에 간행된 ‘수정 제1번’은 독도를 다음과 같이 기재했다.

다케시마(37° 15′ N., 131° 52′ E.), 한국 연안에서 118마일 떨어져, 동서 방향으로 200야드 떨어진 두 개의 불모 바위로 구성되어 있고 많은 바위에 둘러싸여 있다. 서도는 설당을 원추형으로 쌓은 것 같은 형태이며, 동도는 약간 낮다.

다케시마 남남서 85마일에 깊이 31.1m(17fm) 퇴(堆)가 있는 것이 1968년에 보고되었다.<sup>15</sup>

이 수로지는 독도의 원경사진을 게재했는데, 이는 앞의 『시베리아 동남 해안 및 한국 항해 지침』의 삽화와 똑같다. 그런데 이 초판에서 독도의 표제어는 일본 이름인 ‘TAKE SHIMA’이며, ‘Liancourt rocks’나 ‘Tok To’ 등 명칭이 없다. 이런 기술은 1980년에 간행된 ‘수정 제2번’도 똑같다.

이 수로지 제2-4판은 확인을 못했다. 그런데 1989년에 간행된 제5판에서는 독도의 표제어가 ‘Liancourt Rocks (Dok To) (Take Shima)’로 되어 있다. 기사의 내용은 초판에 더하여 동도에서 빛이 보인다고 기록했다. 이런 기술

15 Hydrographic Center, 1976, *Sailing Directory (Enroute) For The Coasts Of Korea And China*, PUB.157, Change No.1, Hydrographic Center, 1976, 12, 4, 31쪽; Hydrographic Center, 1980, *Sailing Directory (Enroute) For The Coasts Of Korea And China*, PUB.157, Change No.2, Hydrographic Center, 1980, 1, 12, 31쪽.

은 제6판(1993), 제7판(1995)도 마찬가지다.

1996년 DMA는 다른 부서와 함께 국방부의 ‘국립화상·지도국(National Imagery and Mapping Agency, NIMA)’에 통합되었다. NIMA는 지도, 해도, 항공도 등을 작성하는 한편, 인공위성이나 정찰기에서 수집한 화상 등을 분석하기 위해 국방부나 중앙정보부(CIA) 등 관련 부서를 모은 기관이다.<sup>16</sup> NIMA는 2000년에 『한국·중국 연안 항해지침』 제8판을, 2003년에 제9판을 간행했다. 이들 내용은 독도의 표제어를 포함해 제5-7판과 같다.

2004년 NIMA는 조직을 개편하고 명칭을 ‘국립지리공간정보국(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 NGA)’으로 변경했다. NGA는 『한국·중국 연안 항해지침』을 계속 간행했으며, 최근에는 2015년에 제18판을,<sup>17</sup> 2018년에 제19판을 간행했다.<sup>18</sup> 이들에서 독도의 표제어는 여전히 ‘Liancourt Rocks (Dok To) (Take Shima)’이며, 기사 내용도 변함이 없다. 다만 독도의 원경 사진은 없다.

## 2) 일본 연안 수로지

DMA는 『일본항해지침』의 명칭을 ‘*Sailing Directions(Enroute) for Japan*’으로 변경하고 1972년에 초판을 간행했다. 제목에 ‘(Enroute)’를 넣고 해군의 『일본항해지침』과 구별했다. 초판에서 독도의 표제어는 ‘다케시마(Take Shima)’이며, ‘Liancourt Rocks’ 등의 명칭은 없다. 이 내용은 해군의 『일본항해지침』 제3판과 거의 같지만 등대에 관한 글이 없다. 또한, 초판의 내용은 앞의 『한국·중국 연안 항해지침』 초판 ‘수정 제1번’(1976) 및 제2번(1980)과 표제어를 포함하여 똑같다. 한국과 일본에 관한 수로지에서 표제

16 『경향신문』 1996.10.3, “美 새 정보기관 ‘NIMA’ 창설”.

17 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 2015, *Sailing Directions(Enroute) Coasts of Korea and China*, PUB.157, 18th ed., 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 p.49.

18 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 2018, *Sailing Directions(Enroute) Coasts of Korea and China*, PUB.157, 19th ed., Prepared and Published by the 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 p.51.

어가 똑같다는 것은 독도의 공식 이름을 다케시마로 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DMA는 독도를 일본 소속으로 간주했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그 후 DMA는 『일본항해지침』을 제6판까지 간행했다. 이 중에서 제2-4판은 확인을 못했으나, 제5판(1992) 및 제6판(1995)에는 독도에 관한 기사가 없다. 또한 DMA를 이은 NIMA는 2002년에 제8판을 간행했는데, 여기에도 독도에 관한 기사가 없다. 이 수로지 제9-15판은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들에게도 독도에 관한 기사가 없을 것이다. 그 후 NIMA를 이은 NGA는 2017년에 제17판을 간행했는데 이들에게도 독도에 관한 기사가 없다. 이 기간에 간행된 앞의 『한국·중국 연안 항해지침』(1989-2018)을 보면, 독도의 표제어는 ‘Liancourt Rocks(Dok To) (Take Shima)’다. 이는 중립적인 이름이지만, 독도에 관한 기사가 『일본항해지침』에는 없고, 『한국·중국 연안 항해지침』에만 있기 때문에 NIMA, NGA 등 국방부의 수로 당국은 독도를 한국 소속으로 간주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국방부는 1972-1980년에는 독도를 일본 소속으로 보고, 1989년 이후는 독도를 한국 소속으로 간주했다고 볼 수 있다.

<표 2> 국방부의 수로지(1972-2018)

『한국 및 중국 연안 항해 지침』

연도	서지 사항	독도 명칭	소속
1972	제1판	[미확인]	
1976	—, 수정1	TAKE SHIMA	일본
1980	—, 수정2		
1989	제5판	Liancourt Rocks (Dok To) (Take Shima)	한국
1993	제6판		
1995	제7판		
2000	제8판		
2003	제9판		
2015	제18판		
2018	제19판		

『일본 항해 지침』			
1972	제1판	Take Shima	일본
1992	제5판	[기재가 없음]	한국
1995	제6판		
2002	제8판		
2015	제16판		
2017	제17판		

### III. 국무부의 독도 인식

국무부가 독도라는 이름을 처음 알게 된 시기는 1948년 6월에 일어난 미군의 제1차 독도폭격사건 때문 듯하다. 이 사건에서 미군은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를 보상했는데, 이때 주한미국공군(US Air Forces in Korea, USAFIK)은 국무부에 보낸 서장에서 이 사건을 ‘TOK DO BOMBING INCIDENT’라고 표현했다. 또한, USAFIK는 ‘Tok Island’에서의 오폭사건을 언론에 발표했다.<sup>19</sup> 이후 국무부는 ‘Tok Do’ 혹은 ‘Tok Island’라는 이름을 거의 잊었던 것 같다. 국무부가 대일 강화조약 초안을 작성했을 때는 ‘독도’라는 이름을 몰랐으며, ‘Liancourt Rocks(Takeshima)’라는 이름만을 썼다.

국무부는 잘 알려져 있듯이 대일강화조약 초안에서 리앙쿠르암을 1949년 11월까지 한국 영토로 다루었다. 이유는 국무부가 일본 영토의 기준을 청일전쟁 직전인 1894년 1월에 두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일본 정부가 독도를 시마네현 관할로 넣기 전이었으며, 독도는 일본 수로부가 간행한 『일본수로지』에는 없고 『조선수로지』(1894)에만 ‘리앙코루토 열암’이라는 표제어로 기재되고 있었다. 또한 청일전쟁에 제일 가까운 시기에 미국이 간행한

19 USAFIK에서 국무부에 보낸 서장(1948. 6. 18). 아래 Mark S. Lovmo의 웹 사이트에서 재인용했음. <http://dokdo-research.com/page16.html>(2019. 2. 18 검색)

수로지 『아시아 수로지』는 앞에 쓴 것처럼 한국 연안을 다룬 제1권 초판(1909)만이 리앙쿠르암을 기재했으며, 일본 연안을 다룬 제2권 초판(1910)에는 기재하지 않았다. 이런 자료 등을 바탕으로 미국은 리앙쿠르암을 한국 영토로 생각했을 것이다. 또한 이 영토 인식은 미국 ‘국무·육군·해군 3부조정위원회(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SWNCC)’의 견해다. 1946년 6월 24일 SWNCC는 보고서 「구 일본 지배하의 위임통치령 및 그 주변의 여러 소도에 대한 신탁통치 혹은 다른 처리 방법에 관한 정책」(SWNCC 59/1)에서, “제주도, 거문도, 다즐레(울릉)도, 리앙쿠르암(다케시마) 및 기타 조선 앞바다에 있는 섬들은 조선의 일부로 생각되어야 하며, 역사상이나 행정상으로도 조선의 일부이며 주로 조선인이 살고 있다”라고 기록했다.<sup>20</sup>

그런데 국무부는 1949년 12월 초안에서는 주일 정치고문 시벌드(William J. Sebald)의 의견을 받아들여 입장을 바꾸어 리앙쿠르암을 일본 영토로 삼았다. 그 이유는, ①1905년 일본은 한국의 항의 없이 시마네현의 관할 하에 두었다, ②이 섬에는 한국 이름이 없으며 한국으로부터 영토 주장이 없었다, ③미국 공군의 폭격지로 사용되고 기상 혹은 레이더 기지로서 이용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다.<sup>21</sup> 다음 해 덜레스(John F. Dulles)가 간략한 초안을 작성했을 때부터 독도는 초안에서 누락되었다. 다시 독도가 거론된 시기는 1951년 7월 주미한국대사 양유찬이 덜레스와 대일강화조약에 관해 협의했을 때다. 이 자리에서 양유찬은 독도 및 파랑도를 조약에서 한국 영토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대사관 측도 미국 측도 독도의 위치나 영어 이름이 리앙쿠르암이라는 것을 몰랐다. 게다가 지리 전문관 보그스(Samuel W. Boggs)가 한국이 요구하는 독도를 조사했으나 찾지 못했다. 덜레스는 주한미국대사 무치오(John J. Muccio)로 하여금 독도를 조사시켜 겨우 독도가 리앙쿠르암이며, 일본이 말하는 다케시마임을 알았다.<sup>22</sup>

20 原貴美恵, 2005,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の盲点』, 溪水社, 42쪽.

21 “Commentary on Draft Treaty of with Japan” (undated), 정병준, 2010, 『독도 1947』, 돌베개, 499쪽.

22 국사편찬위원회, 2008, 『독도자료』 미국편 II, 국사편찬위원회, 232쪽.

이 직후 국무차관보 리스크는 한국의 요청을 거절하는 서한을 양유찬에게 보냈다. 리스크 서한은 “우리 정보에 따르면, [독도는]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운운”이라고 썼다. 그런데 이 견해는 국무부 조직 내에서조차 이론이 있었다. 주일 미국대사관은 1952년 미 국무부에 보낸 보고서에서 “일찍이 이[리앙쿠르] 암은 조선왕조에 소속되고 있었다”<sup>23</sup>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리스크 서한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 탓인지 재한 및 재일 미국대사관에조차 바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해 독도에서 일어난 한·일 충돌을 계기로 국무부는 리스크 서한을 주한 및 주일 대사관에 알렸으며, 그 내용이 국무부의 공식견해가 되었다. 국무부 장관 델레스는 주한 및 주일 미국대사관에게 전문을 보내<sup>24</sup> 독도를 일본 영토로 보는 미국의 입장은 수많은 연합국 가운데 일국에 지나지 않으며, 미국은 한·일간 영유권 분쟁에 휘말려서는 안 되며, 독도 분쟁의 해결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겨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처럼 한·일 간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에 선다는 델레스의 방침은 그 후도 국무부에서 잘 유지되었다. 1977년 ‘한·일 대륙붕협정’<sup>25</sup>이 1977년 6월 일본 국회에서도 승인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9월 국무부 정보조사국(INR)은 연구자료 ‘한·일 대륙붕 경계와 공동개발지역’을 작성했다. INR은 미국 외교관들에게 국제 정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서다. INR은 이 자료에서 “한·일 양국은 리앙쿠르암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sup>26</sup>라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런 입장은 그 후도 계속되었다. 2007년 후술하듯이 지명위원회(BGN)는 독도의 ‘국가 분류 코드’를 ‘한국’에서 ‘주권 미확정 지역’으로 변경한 일이 있었는데, 다음 해 이 사건이 한·미 간

23 1952년 10월 3일자 스티브스(John M. Steeves) 서한, 「Koreans on Liancourt」; 박병섭·나이토 세이추, 호사카 유리 옮김, 2008, 『독도=다케시마 논쟁』, 보고사, 324-334쪽.

24 국사편찬위원회, 2008, 앞의 책, 미국편 III, 184쪽.

25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 양국에 인접하는 대륙붕의 북부 경계획정에 관한 조약’ 및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 양국에 인접하는 대륙붕의 남부 경계획정에 관한 조약’이다.

26 『조선일보』, 2008. 7. 30, “미국무부 1977년 자료에도 ‘주권 분쟁지역’”.

에서 이슈화되자 국무부 곤살로 갈레고스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수십 년간 독도의 주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일본과 한국이 서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sup>27</sup> 국무부는 독도에 관해 중립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던 것이다.

#### IV. 중앙정보부(CIA)의 독도 인식

미국 중앙정보부(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는 세계 각국의 분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서 독도에 관한 정보를 꾸준히 수집하고 있었다. 이에 관한 연구로서는 앞의 정병준의 논문이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CIA의 독도 인식을 살펴본다.

CIA가 독도를 기록하기 시작한 시기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조인 직후다. 1951년 11월 30일 CIA 보고서는 부산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보고를 기록하고 논평을 가했다.<sup>28</sup> 대사관의 보고는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의 독도 탐방기 「일본으로 돌아오는 무인의 다케시마」라는 기사(1951.11.24)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발을 전하는 내용이다. CIA는 보고서에서 독도 이름을 ‘Takeshima Island’라고 썼다. 이는 대사관 보고서를 따른 것이다.

그 후 CIA 보고서에 드러난 독도의 이름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다만 정병준의 논문에서 영문 표기를 알 수 없는 경우는 한글로 표시했다.

<표 3> CIA 보고서에 기록된 독도의 명칭

연월일	기본 명칭	기타 명칭	소속
1951. 11. 30	Takeshima Island		
1952. 2. 5	Liancourt Rocks		
1953. 6	Take-shima	Liancourt Rocks	없음
1954. 8. 25	Liancourt Rocks		

27 『중앙일보』 2008. 7. 30, “미국 ‘독도, 한·일이 해결할 문제’”.

28 연합뉴스, 2005. 3. 24, “美CIA ‘일본, 평화조약에 독도 포기 최종 결정’”; 정병준, 앞의 글, 420쪽에서 재인용.

1954, 9. 8	Liancourt Rocks		
1954, 9. 17	Liancourt Rocks		
1954, 10. 4	Liancourt Rocks		
1955, 4. 7	Liancourt Rocks		
1955, 10. 27	Liancourt Rocks		
1962, 3. 10	Liancourt Rocks		
1966, 3. 18	Liancourt Rocks	다케시마, 독도	
1974, 1. 25	Take Shima	Liancourt Rocks, Tokto, Tok Do	중립
1974, 2	Take Shima or Liancourt Rocks		중립
1974, 4	Liancourt Rocks	Dak-do, 다케시마	일본
1974, 6	Dak-do, Liancourt Rocks		일본
1977, 5. 16	Tok-do	다케시마	
1977, 6. 1	독도	다케시마	
1978, 7	Tok-do	Liancourt Rocks, Take Shima	

1953년 6월 보고서에서 독도의 기본 명칭이 'Take-shima'로 되고 있으며 한국 이름은 없다. 그러나 이는 CIA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한 것이 아니며, 보고서에는 “주권 귀속은 없음”, “권리 주장국은 한국-일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위의 표에서 독도의 한국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1966년 3월 「특별보고: 한·일관계의 미래」다. 이는 한·일 협정을 맺은 양국의 관계를 전망하는 보고서이며, ‘리앙쿠르암 분쟁’이라는 항목에서 독도라는 한국 이름을 소개했다.

1970년대 독도의 영문 표기는 다양했다. 1974년 1월 CIA 보고서 「현재 분쟁 중인 동아시아 도서 및 군도목록」은 독도에 관해 표제어 ‘Take Shima’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sup>29</sup>

8. 이름: 다케시마(Take Shima)

이명: 리앙쿠르암, 독도(Tokto, Tok Do)

<sup>29</sup> List of East Asian Islands and Groups Currently in Dispute, 25 January 1974, 정병준, 앞의 글, 438 쪽에서 재인용.

## 독도의 소속 및 호칭에 관한 미국 정부의 인식 변화

위치 및 특징: 대략 북위 36도 15분... [도중 생략]

권리 주장 국: 남한, 일본

점령: 1954년 남한이 등대와 소규모 수비대를 설치한 1954년 이전까지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음

한편, 1974년 4월 CIA 기초지리정보국(Office of Basic and Geographic Intelligence: OBGi)이 작성한 보고서 「해양법 국가연구: 남한」에서는 Dak-do라는 명칭이 등장했다. 이 보고서의 부속지도는 울릉도와 리앙쿠르암 사이에 점선으로 경계선을 표시했으며,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했다. 이 보고서 본문은, “남한은 일본해에 위치한 2개의 외딴 도서인 울릉도와 리앙쿠르암(Dak-do 혹은 다케시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전자에 대한 주장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일본은 후자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썼다. 이처럼 리앙쿠르암을 일본 영토로 보는 견해는 6월 OBGi가 작성한 「해양법 국가연구: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속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했다.<sup>30</sup>

그런데 1977년에는 ‘Tok-do’가 표제어로 되었다. 또한, 1978년 7월 CIA 국가해외평가센터(National Foreign Assessment Center)가 작성한 「동북아시아의 해양권과 분쟁: 정보평가」는, “리앙쿠르암은 미국지명위원회가 채택한 지명이다. 그러나 한국명인 독도(Tok-do)가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이를 사용한다”<sup>31</sup>라고 썼다.

그 후 CIA의 1980년대 자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듯하며, CIA의 동향은 알 수 없지만, 사이버외교단 ‘반크’에 따르면 2002년 CIA는 웹 사이트에서 독도를 ‘리앙쿠르암’으로 처음 표기했다고 한다.<sup>32</sup> 현재 CIA 웹 사이트

30 *Law of the Sea Country Study: South Korea*, Secret, BGI LOS 74-4, April 1974, p.2, 정병준, 앞의 글, 441-442쪽에서 재인용.

31 *Maritime Claims and Conflict in Northeast Asia: An Intelligence Assessment*, CG 78-10113, National Foreign Assessment Center, CIA, July 1978, vii. 정병준, 앞의 글, 449쪽에서 재인용.

32 『중앙일보』 2008. 7. 30, “미국 ‘독도, 한·일 이 해결할 문제”

는 다음과 같이 독도를 리앙쿠르암이라고 표시하고 있다.<sup>33</sup>

NAME: Liancourt Rocks(claimed by Japan)

ENTRY IN THE WORLD FACTBOOK: South Korea

[경위도]: 37 15 N 131 50 E

이와 같이 CIA는 독도는 일본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웹 사이트 ‘세계사정(THE WORLD FACTBOOK)’에서 등록(ENTRY)을 한국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독도는 한국과 일본 양국 지도에 각각 ‘Liancourt Rocks’라는 이름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도에서 국경선은 표시하지 않았다.

## V. 내무부 지명위원회의 독도 인식

내무부 지리원(Office of Geography) 지명위원회(BGN)는 지명의 결정, 관리 등을 목적으로 1890년에 설립되고, 1947년 법률에 의해 현 체제로 되었다. 지명의 대상은 당초는 미국 내 지명뿐이었으나, 1945년 이후는 외국의 지명도 다루게 되었다. 이윽고 BGN에서는 CIA, 국무부, 국방부, 의회 도서관 등 정부기관에서 직원이 파견되어 해외 담당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외 지명을 결정하게 되었다. 2008년 당시 BGN 위원장은 CIA 소속인 그레고리 보튼(Gregory Boughton)이었다.<sup>34</sup> 따라서 미국 정부기관은 BGN과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없으며, 법적으로도 BGN의 결정은 연방정부 각 기관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BGN은 수시로 개정되는 연방정부의 정보처리기준(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 FIPS) 등에 따라 지명을 결정한다.

33 CIA ‘THE WORLD FACT BOOK’ APPENDIX F : Cross-Reference List of Geographic Names (2020.1.20 검색),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resources/the-world-factbook/appendix/appendix-f.html>

34 『조선일보』, 2008. 7. 29, “美지명委(BGN)는 어떤 곳 지명 표기 구속력 있는 연방 기구”

BGN의 지명 결정에 따라 지리원은 1945년부터 세계 각국의 『지명사전』을 순차적으로 간행했다. 1955년에는 『지명사전 12, 일본』<sup>35</sup>을 간행했으며, 이에 독도의 표제어로써 다음과 같이 3항목이 기재되었다. ‘Isls’는 Islands, ‘N’은 북위, ‘E’는 동경의 약칭이다.

Liancourt Rocks, see Take-Shima, Isls, 37 15N, 131 52E

Take Sima, see Take-Shima, Isls, 37 15N, 131 52E

Take-Shima, Isls, 37 15N, 131 52E

이처럼 ‘Take-Shima’가 독도의 표제어다. 한편, 『지명사전 95, 남한』은 1965년에 간행되었는데<sup>36</sup>, 이 안에 리앙쿠르암 등 독도에 관련된 섬 이름은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독도는 일본에 관한 『지명사전』에만 일본 이름으로 기재되었으므로 BGN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는 국무부가 독도를 1949년 12월부터 당분간 일본 영토로 간주한 것과 부합한다.

그런데 BGN은 앞의 1977년 5월 CIA 보고서에 따르면, 독도의 표제어를 ‘Liancourt Rocks’로 변경했다. 이 변경은 주미 한국대사관의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대사관은 2008년 미국 정부에게 다음 항목을 질문했다. ①독도의 공식 지명이 리앙쿠르 록스로 바뀐 시기, ② 그 이전까지의 공식 지명, ③BGN의 명칭 변경 결정의 기속력 여부, ④독도라는 표기를 고수하기 위한 공식채널 개설 방법. 이 질문에 대한 회답은, “‘독도’라는 명칭 대신 ‘리앙쿠르 록스’라는 지명을 공식 사용하기로 결정한 시기는 1977년 7월 14일, BGN의 결정은 행정부나 지명 사용의 일원화

35 Office of Geography, 1955, *GAZETTEER No. 12, JAPAN*, Official Standard Names approved by the United States Board on Geographic Names, Office of Geography.

36 Office of Geography, 1965, *GAZETTEER No. 95, South Korea*, Official Standard Names approved by the United States Board on Geographic Names, Office of Geography.

를 위한 권고사항일 뿐 법적인 기속력은 없다”<sup>37</sup>라는 것이었다. 이 보도는 독도라는 명칭 대신 리앙쿠르암을 공식으로 사용했다고 보도했으나, 다른 보도는 1977년 7월 이전 BGN은 ‘독도’와 ‘다케시마’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전했다.<sup>38</sup> BGN은 1977년 이전 어느 명칭을 표제어로 하고 있었는지 모호하지만, BGN이 독도의 표제어를 ‘다케시마’에서 ‘독도’로 바꾸었다는 기록을 찾지 못했으며, BGN은 1977년까지 계속 ‘다케시마’를 표제어로 사용했다고 생각된다.

2007년 8월 BGN은 리앙쿠르암의 ‘국가 분류 코드’를 한국에서 FIPS 10-4가 말하는 ‘주권 미확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 UU)’으로 변경했다.<sup>39</sup> 코드 ‘UU’의 대상은 “주권의 상태가 확인되지 않거나, 분쟁과 관련하여 미국이 입장을 밝히지 않은 장소의 지형물”이다. 그런데 이 코드는 일본 주변에서는 하보마이 제도나 센키쿠(다오위다오)제도에는 적용되지 않았다.<sup>40</sup> 이 코드 ‘UU’가 독도에만 적용되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다. 당시 미국 국가 안전보장회의(NSC) 일본·한국·태평양부장 캐트린 캐츠(Katrin Katz)에 따르면, “의회 도서관에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 다케시마/독도에 관한 미국 정부의 정책을 문의했다(그 인물의 정확한 정체는 그 시점에서는 분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의회 도서관 직원이 BGN 웹 사이트를 살펴보고 정부 방침과 다른 기술이 있는 것을 알았다. 그 일을 연락받은 BGN이 기술을 수정했던 것 같다”라는 것이다.<sup>41</sup> 의회 도서관에 전화를 건 자는 일본 정부 관계자라고 짐작된다.

BGN의 변경을 따라 의회 도서관은 2008년 7월 소장 자료의 분류 표제어를 ‘Tok Islands’에서 ‘Liancourt Rocks’로 변경하려 했다. 이를 알게 된

37 『동아일보』 2008. 7. 28. “美 30년 전 ‘리앙쿠르 록스’ 공식화”

38 『중앙일보』 2008. 7. 26. “미 1977년부터 독도 대신 리앙쿠르 암석 공식 사용”

39 『조선일보』 2008. 7. 30. “독도 ‘주권 미확정’ 표기는 작년 8월에 결정”

40 『중앙일보』 2008. 7. 31. 사설.

41 카트린·캐츠(Katrin Katz), 2010, 「竹島を「独島」にした韓国の粘着質外交」, 『ニューズウィーク』, 2010. 11. 14호, 27쪽.

캐나다 토론토대학 도서관 사서 김하나 등은 의회 도서관의 변경을 막았다.<sup>42</sup> 한국에서 이 뉴스가 보도되자, 여론은 문제의 근원이 지명위원회에 있음을 알았다. 한국 정부는 BGN 문제 해결을 위해 이태식 주미대사까지 나서 미국 정부에 대해 충공세를 펼치자, 방한을 앞둔 부시 미국 대통령은 원상 복귀를 지시했다. 결국 미국 지명위원회는 독도를 변경 직전 상태인 ‘한국 영유권 보유’로 되돌려놓았다. 또한 미 국립지리원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sup>43</sup> 이로써 보름여 동안 계속된 리앙쿠르암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이 결말에 대해 일본 내각관방장관(内閣官房長官) 마치무라 다카시(町村孝)는 “미국 정부의 일 기관의 처사에 대해 이리저리 지나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sup>44</sup>라고 말하고 정관했다. 그러나 BGN은 내무부뿐만 아니라 CIA, 국무부, 국방부, 의회 도서관 등이 구성하는 기관이며, BGN의 견해는 미국 정부의 견해가 된다.

이 사건에서 4년 후 BGN사이트에 표기된 독도의 표기는 <표 3>과 같다.<sup>45</sup> 독도가 소속하는 ‘나라(country)’ 및 ‘제1차 행정권(ADM1)’을 가지는 주체는 ‘남한(South Korea)’이다. 따라서 BGN은 한국의 리앙쿠르암에 대한 영토주권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BGN이 승인한 공식 이름은 Liancourt Rocks이며, 엔도님(endonym), 즉 내생(內生)지명은 ‘Dog-Do’, ‘Dogdo island’, ‘Tok-do’, ‘Tok-to’ 등이며, ‘Dokdo’는 없다.<sup>46</sup> 이 ‘Dogdo’는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자료는 물론 미국 자료에 전혀 없는 명칭이며, 이 단어는 ‘개똥’을 의미한다. BGN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무 근거가 없

42 『주간동아』 651호, 2008. 09. 02, 12~15쪽.

43 『주간동아』, 위의 글.

44 『朝日新聞』, 2008. 7. 31.

45 호사카 유지, 2012, 「지명표기를 통해서 본 일본의 영토문제에 대한 미국의 인식」, 『일본문화연구』 제42집, 607쪽.

46 이를 알게 된 호사카 유지는 위의 논문 607-608쪽에서 아래와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현재 사용 되는 ‘Dokdo’라는 표기가 [BGN 사이트에] 왜 없는 것일까? 2011년 6월 당시 필자는 외교통상부의 국제법규과 담당자와 이 문제를 통화했다. 담당자는 ‘독도에 대해 Dokdo 표기가 없는가’, 라는 필자의 질문에 대해 ‘독도는 작은 행정단위이므로 한국의 섬 레벨에 대한 미지명위원회의 개칭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고 기록했다.

는 ‘Dogdo’라는 명칭을 썼는지 의심스럽다.

〈표 4〉 2012년 지명위원회 웹 사이트의 독도 표기

Name	Country	ADM1	Latitude/Longitude	Feature Type
Liancourt Rocks (approved)	South Korea	South Korea (general)	37° 15' 00" N 131° 52' 00" E  Google Map	Islands
Dog-Do (Variant)				
Dogdo-island (Variant)				
Hornet-island (Variant)				
Take-shima (Variant)				
Take Sima (Variant)				
Tok-do (Variant)				
Tok-to (Variant)				

현재 미국 정부는 외국 지명을 검색하는 웹 사이트로서 국립지리정보국(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 NGA)이 ‘지명검색(GeoNames Search, GN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단서로서, “이름, 변형[별칭] 및 관련 데이터는 지리적 특징에 대한 주권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하고 있다.<sup>47</sup> 이 웹 사이트에서 독도 표기는 〈표 5〉와 같다.<sup>48</sup> 표에서 예전 웹 사이트의 ‘나라(Country)’는 ‘지정학적 실체 이름(Geopolitical Entity Name)’으로, ‘ADM1’는 ‘1차 행정 구역 이름(First-Order Administrative Division Name)’으로 바뀌었지만, 그 대상은 예전대로 ‘남한(South Korea)’이며 변함이 없다. 그러나 엔도님의 필두는 독도의 일본 이름 ‘竹島’에 유래하는 ‘Chuk-to’로 되었으며, 그 다음에 ‘Dog-Do’, ‘Dog-do’, ‘Dogdo Island’, ‘Tok-do’, ‘Tok-to’가 이어진다. 왜 ‘Chuk-to’가 새로 추가되었는지 의문이다.

위의 GNS 시스템에서 ‘Dokdo’를 검색하면 전라남도 거금도 동남 연안에 있는 독도만이 표시되며, 공식 명칭 Liancourt Rocks 화면에는 ‘Dok-

47 ‘GeoNames Search’, <http://geonames.nga.mil/namesgaz/>

48 〈표 5〉에서 항목 ‘MGRS’, ‘Feature Designation(Code)’, ‘Display Location Using’ 등은 생략함. 검색일: 2020. 4. 15.

do' 표기가 없다. 또한, 한글 '독도'로 검색하여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역사적으로 한·미 양국 정부가 교환한 외교문서에 사용된 독도의 명칭을 살펴 보면, 1951년 양유찬 서한(7월 19일)은 'Dokdo', 이에 회답한 러스크 서한(8월 10일)도 'Dokdo', 또한 이에 반론한 변영태 서한<sup>49</sup>(9월 21일)도 'Dokdo'다. 현재 외교부도 물론 'Dokdo'를 공식으로 사용한다. 이처럼 BGN 웹 사이트에서 역사적이며 한국의 공식 이름인 'Dokdo'가 없고, 대신 '개똥'을 의미하는 'Dogdo'가 표시되는 상태가 10년이나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표 5〉 2020년 지명위원회 웹 사이트의 독도 표기(일부)

Name(Type)	Geopolitical Entity Name (Code)	First-Order Administrative Division Name (Code)	Latitude, Longitude DMS (DD)
Liancourt Rocks (Approved - N)			
Chuk-to (Variant - V)			
Dog-Do (Variant - V)			
Dog-do (Variant - V)			
Dogdo island (Variant - V)	South Korea (KS)	South Korea (general) (KS00)	37° 15' 00" N 131° 52' 00" E (37.25, 131.866667)
Homet island (Variant - V)			
Take-shima (Variant - V)			
Take Sima (Variant - V)			
Tok-do (Variant - V)			
Tok-to (Variant - V)			

## VI. 맺음말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독도와 관련이 깊은 미국 정부 기관은 해군 수로국

49 박병섭, 2016,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된 경위와 함의」, 『독도연구』 21호, 32쪽.

이다. 수로국은 영국 및 일본 등이 간행한 수로지 등을 참고로 하여 1909년부터 『아시아 수로지』를 간행했다. 1910년대 말까지는 독도를 ‘호넷 섬(리앙쿠르암)’이라는 표제어로 한국 연안 등을 기재한 『아시아 수로지』 제1권 제1판(1909) 및 제2판(1918)에만 기록하고, 일본 연안 등을 기재한 제2권 제1판(1910)에는 기록하지 않았다. 해군은 리앙쿠르암의 한국 이름 ‘독도’를 몰랐으나, 이 섬을 한국 영토로 보았던 것이다. 1920년 이후 해군은 독도를 일본 연안을 다룬 제2권에도 이중으로 기재하게 되었다. 독도의 표제어는 제2권 제2판(1920)에서는 ‘리앙쿠르암(호넷 섬)’, 제3판(1930)에서는 ‘호넷 섬(다케시마, 리앙쿠르암)’이다. 한편, 해군은 『아시아 수로지』 제1권 제2판을 승계한 『시베리아 및 조센(Chosen) 항해 지침』 제3판(1932)에도 독도를 표제어 ‘리앙쿠르암(호넷 섬 혹은 다케시마)’에서 여전히 기록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내무부 지명위원회(BGN)는 외국의 지명도 결정하게 되었다. 1965년 BGN은 『지명사전 95 남한』을 간행했는데 여기에 독도는 기재되지 않았다. BGN은 독도를 오로지 『지명사전 12 일본』(1955)에만 표제어 ‘다케시마(Take-Shima)’로 기재했으며,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했다. 이 판단은 국무부의 1950년대 견해와 일치한다. 국무부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국무·육군·해군 3부조정위원회’ 보고서 SWNCC 59/1 등에 볼 수 있듯이 리앙쿠르암을 한국 영토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1949년에는 주일 정치고문 시볼드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리앙쿠르암을 일본 영토로 취급했으며, 1951년에는 이를 확인하는 러스크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그런데 미국 정부 각 기관은 1980년대까지 BGN 결정을 따르지 않았으며 독도의 소속이나 호칭에 대한 인식은 혼란 상태였다. 중앙정보부(CIA)의 보고서는 1960년대 말까지는 거의 ‘리앙쿠르암’을 표제어로 사용하고 중립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1974년 보고서에서는 독도의 표제어로써 다케시마, 리앙쿠르암, Dak-do 등 여러 명칭을 사용했으며,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보고서도 있었다. 또한, 1977~1978년 보고서에서는 독도(Tok-do)를 표제어로 사용했다. 더구나 CIA는 BGN이 1977년 7월에 리앙쿠르암을 표제어로 변경했음을 알면서도 이를 따르지 않았고, 1978년

7월 보고서에서는 독도(Tok-do)가 일반적이라는 이유로 계속해 독도를 표제어로서 사용했다. 이처럼 CIA의 독도 인식은 혼란 상태였다.

또한 해군 수로국에도 혼란이 있었다. 수로국은 BGN이 1955년에 결정한 독도의 표제어 'Take-shima'를 따르지 않고, 『시베리아 동남 해안 및 한국 항해 지침』 제2판 '수정 9번'(1964)은 독도의 표제어로서 'Liancourt Rocks(Tak Shima)'를 사용했다. 그러나 수로국은 1967년에 발간한 한·일 양국에 관한 수로지에서는 독도의 표제어를 'Tok To(Take Shima) (Liancourt Rock)'라고 썼다. 이는 수로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간주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독도를 표제어로 사용한 것은 '유엔 지명 표준화 회의(UNCSGN)'의 엑소넘에 관한 결의(1967), 즉 외국식 지명을 피해야 한다는 결의를 따랐던 듯하다.

수로지는 1972년부터는 해군 수로국 등을 통합한 국방부 국방지도제작국(DMA)이 발행하게 되었다. DMA는 한·일 양국에 관한 수로지에서 독도의 표제어를 '다케시마'라고 하고 리앙쿠르암 등 별칭을 일절 쓰지 않았다. 분명히 독도를 일본 소속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런 변경의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DMA는 이런 방침을 1980년경까지 유지했다. 그런데 1981-1988년 수로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늦어도 1989년에는 DMA는 수로지 『한국 및 중국 연안 항해 지침』에서 볼 수 있듯이 독도의 표제어를 'Liancourt Rocks(Dok To) (Take Shima)'로 변경했다. 또한 1990년경에는 리앙쿠르암을 『일본 항해 지침』에서 삭제하고, 오로지 한국 관련 수로지에만 기재했다. 독도를 한국 소속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런 변화는 국방부나 CIA, 의회 도서관 등 유관 기관이 BGN에 직원을 파견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후, 국방부 DMA가 BGN의 결정을 따랐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써 미국 정부의 견해는 통일성을 가지게 되었다.

2007년 BGN은 의회 도서관의 문의를 받아 웹 사이트에서 리앙쿠르암의 소속국을 '한국'에서 '미지정'으로 변경했다. BGN 웹 사이트의 표기가 정부 방침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다음 해 이를 알게 된 한국 정부는 주미대사까지 나서서 충공세를 펼쳤다. 드디어 방한을 앞둔 부시 미국 대통

령은 원상 복귀를 지시하고, BGN은 독도의 소속을 ‘미지정’에서 ‘한국’으로 되돌렸다. 현재 BGN 웹 사이트는 독도의 공식 명칭을 리앙쿠르암으로 하고, ‘지정학적 실체 이름’과 ‘1차 행정 구역 이름’을 남한(South Korea)으로 표시하고 있다.

또한 CIA 웹 사이트 ‘세계사정’도 독도의 표제어를 리앙쿠르암으로 하고, 등록을 ‘남한’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정부 유관 기관의 웹 사이트는 모두 독도의 관할국을 한국으로 하고 리앙쿠르암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 지명은 ‘유엔 지명 표준화 회의(UNGSGN)’의 결의에 따라 엑소님, 즉 외래 지명의 사용을 피하고 엔도님, 즉 내생 지명을 써야 한다. 그렇다면 미국 BGN이 독도의 ‘1차 행정 구역 이름’으로 인정하는 한국의 엔도님에 따라 BGN 웹 사이트에서 독도의 공식 명칭 ‘Liancourt Rocks’를 ‘Dokdo’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이 일이 달성되기까지는 적어도 BGN 웹 사이트에서 ‘Liancourt Rocks’의 별칭의 하나로써 표시하는 ‘Dogdo’는 ‘Dokdo’로 수정되어야 한다. 이 ‘Dogdo’는 ‘개똥’을 의미하는데, 역사적으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으며 근거 없는 명칭이다.

마지막에 이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료조사를 많이 도와주신 미국 시카고대학 Rana Choi 교수 및 네덜란드 Jheronimus Academy of Data Science의 Jingyu Choi 연구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2008, 『독도자료』 미국편, 국사편찬위원회.
- 박병섭 · 나이토 세이추, 호사카 유지 옮김, 2008, 『독도=다케시마 논쟁』, 보교사.
- 이진명, 1998, 『서양자료로 본 독도』, Pour l'Analyse du Folklore.
- 정병준, 2010, 『독도 1947』, 돌베개.
- \_\_\_\_\_, 2013, 「미국 정보기관의 독도관련 자료와 독도문제 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46호.
- 호사카 유지, 2012, 「지명표기를 통해서 본 일본의 영토문제에 대한 미국의 인식」, 『일본문화연구』 제42집.
- Hydrographic Center, 1976, *Sailing Directory(Enroute) For The Coasts Of Korea And China*, PUB.157, Change No.1, Published by the Defense Mapping Agency, Hydrographic Center.
- \_\_\_\_\_, 1980, *Sailing Directory(Enroute) For The Coasts Of Korea And China*, PUB.157, Change No.2, Published by the Defense Mapping Agency, Hydrographic Center.
- Hydrographic Office, 1909, *Asiatic Pilot*, Vol.1, East Coast of Siberia, Sakhalin Island and Korea, No.122, Published by the Hydrographic Office under the Authority of the Secretary of the Navy.
- \_\_\_\_\_, 1910, *Asiatic Pilot*, Vol.2, The Japan Islands, Hydrographic Office under the Authority of the Secretary of the Navy.
- \_\_\_\_\_, 1918, *Asiatic Pilot*, Vol.1, East Coast of Siberia, Sakhalin Island and Chosen, No.122, Published by the Hydrographic Office under the Authority of the Secretary of the Navy.
- \_\_\_\_\_, 1932, *Sailing Directions for Siberia and Chosen*, 3rd ed., H.O. No.122, Hydrographic Office, Issu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Secretary of the Navy.
- \_\_\_\_\_, 1945, *Sailing Directions for Japan*, Vol.1(NorthernPart), H.O. No.123A, 1st ed., Hydrographic Office, Issu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Secretary of the Navy.
- \_\_\_\_\_, 1947, *Sailing Directions For The Southeast Coast of Siberia and Korea*, H.O. Pub. No.122B, 1st ed., Hydrographic Office, Issued under authority of the Secretary of the Navy
- Hydrographic Office, Admiralty, 1858, *China Pilot*, London, Printed for the

Hydrographic Office, Admiralty, 2nd ed.

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 2015, *Sailing Directions(Enroute) Coasts of Korea and China*, PUB.157, 18th ed., Prepared and Published by the 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

\_\_\_\_\_, 2018, *Sailing Directions(Enroute) Coasts of Korea and China*, PUB.157, 19th ed., Prepared and Published by the 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

Naval Oceanographic Office, 1967, *Sailing Directions For Japan*, Vol.1 (Northern Part), H.O. Pub.96, 3rd ed., Published by the U.S. Naval Oceanographic Office.

Office of Geography, 1955, *GAZETTEER No.12, JAPAN*, Official Standard Names approved by the United States Board on Geographic Names, Prepared in the Office of Geography, Department of the Interior.

\_\_\_\_\_, 1965, *GAZETTEER No.95, South Korea*, Official Standard Names approved by the United States Board on Geographic Names, Prepared in the Office of Geography, Department of the Interior.

카트린·카츠(Katrin Katz), 2010, 「竹島を「独島」にした韓国の粘着質外交」, 『ニューズウィーク』, 11월 14일호.

笹川啓·明野和彦·須賀正樹, 2019, 「第1回国連地名専門家グループ会合報告」, 『国土地理院時報』 132号.

原貴美恵, 2005,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の盲点』, 溪水社.

## 국문초록

미국에서 모든 지명은 지명위원회(BGN)가 결정한다. 그러나 1980년대까지 독도의 명칭이나 소속은 각 정부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했다. 그런 판단에는 BGN을 포함하여 혼란이 있었다. BGN은 1955~1965년에는 독도의 표제어를 다케시마라고 칭하고 일본 영토로 보았으나, 1977년에는 표제어를 중립적인 리앙쿠르암으로 변경했다. 이 명칭은 시종일관 국무부에서 사용되었다. 국무부는 리앙쿠르암의 소속을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한국으로 보았으나, 1949~1953년에는 일본 소속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국무부는 이윽고 중립적인 입장에 섰다. 한편, 중앙정보부(CIA)는 분쟁지역의 하나로서 독도에 주목해 기록했는데, 독도의 표제어는 1960년대 말까지 기본적으로 중립적인 ‘리앙쿠르암’이었다. 그 후는 독도의 명칭이나 소속에 관해 혼란이 있었으며, 1977년경에는 ‘Tok-do’가 일반적이라는 이유로 CIA는 BGN의 입장과 달리 ‘Tok-do’를 보고서에서 사용하고 한국 편에 섰다. 일찍부터 독도와 관련이 깊은 미국의 수로 당국은 여러 혼란 끝에 1989년부터는 독도를 한국 연안 수로지에만 기재했다. 이즈음 BGN에서는 CIA 등 지명과 관련이 깊은 정부기관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검토 끝에 리앙쿠르암의 소속을 한국으로 결정했다고 보인다. 2007년 BGN은 리앙쿠르암의 소속을 ‘한국’에서 ‘주권 미확정 지역’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다음 해 이 변경이 한·미간에서 이슈화되자 미국 정부는 변경을 되돌렸다. 현재 BGN 웹사이트는 독도의 ‘지정학적 실체’와 ‘1차 관리 구분’을 ‘남한’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이와 모순된 견해를 가지는 미국 정부기관은 없다.

〈주제어〉

지명위원회, 국무부, 중앙정보부, 수로지, 리앙쿠르암, 다케시마

## Abstract

### Changes in the US Government's Recognition of Sovereignty over and Name of Dokdo

Park Byoungsup

(Takeshima/Dokdo Research Net, Japan)

In the United States, all geographic names are determined by the Board on Geographic Names (BGN). However, until the 1980s, each government agency independently decided the names of and sovereignty over Dokdo, and there were some confusion in the judgment of the geographical names. The BGN was not an exception. Between 1955 and 1965, the BGN referred to Dokdo as Takeshima and viewed it as Japanese territory, but in 1977 the BGN called Dokdo as Liancourt Rocks. The State Department always used this name. The Department started to consider Dokdo as Korean territory shortly after World War II, but in 1949, it began to regard Dokdo to be Japanese territory. Soon after, the Department began standing neutral on this issue. Meanwhile,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noted Dokdo as one of the disputed areas. "Liancourt Rocks" was basically the official name of Dokdo until the 1960s and it was a neutral name. After that, confusion was made over Dokdo's name and its sovereignty. Around 1977, as "Tok-do" was a common name, CIA used "Tok-do" in reports and stood on the Korean side. On the other hand, US hydrographic officials, after some confusion, only marked Liancourt in sailing directories for the coast of Korea from 1989. Around this time, the BGN seems to have formed a committee by government agencies related to geographic names, such as the CIA, and decided that Liancourt belongs to Korea. In 2007, the BGN changed the country where Liancourt belongs to from Korea to "Undesignated Sovereignty." However, in the following year when the change became an issue in Korea and the US, the US government reversed the change of the name. Now, the BGN website describes Dokdo's "geopolitical entity" and "first-order administrative division" as "South Korea" and there is no US government agency that has any contradictory views on this issue.

#### Key words

Board on Geographic Names, State Department, Central Intelligence Agency, sailing directions, Liancourt Rocks, Takeshima





# 조한기(趙漢紀)의 「울릉도수토키(鬱陵島搜討記)」 해제 및 번역

이원택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I. 「울릉도수토키」에 대하여

조한기(趙漢紀)의 「울릉도수토키(鬱陵島搜討記)」는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와유록(臥遊錄)』 제4책에 실려 있다. ‘와유(臥遊)란 말은 ‘직접 산천에 유람을 가지 않고 집에 누워서 산천의 그림을 감상하거나 기행문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유람을 한다’는 의미이다. 송나라에서 시작된 전통으로 고려시대에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조선에서 크게 유행한 한문학의 하나의 장르라고 할 수 있다.<sup>1</sup> 규장각 소장 『와유록』(古 4790-48)에 대하여 강문식은 해제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고려말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松都·關東·關北 지방을 여행한 李毅·金時習·李珥·李廷龜·金昌翁 등 44명이 쓴 73편의 기행문들을 모아 놓은 책으로 편자나 편찬 연대는 알 수 없다. 제1 책과 2책은 松都와 인근 경기

1 조선시대의 와유문화와 와유록에 관해서는 이종묵, 이종묵, “조선시대 臥遊 文化 研究”(『진단학보』제98집, 진단학회, 2004.); 김영진, “조선후기 『臥遊錄』 이본 연구”(『고전문학연구』제48집, 한국고전문학회, 2015.) 등 참고.

지역을 여행하고 쓴 기행문이고 제3책에서 6책까지는 關東 지방, 제 7책은 關北 지방의 기행문이다.<sup>2</sup>

여기에 조금 더 자세한 해제를 작성한 김남기는 다음과 같이 편찬 내력을 추정하고, 장서각 소장 『와유록(臥遊錄)』과의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18세기 후반의 학자인 俞晩柱(1755-1788)의 저작인 《欽英》(古 0320-25)에는 族祖 文翼公 俞拓基(1691-1767)가 《臥遊錄》 10여 권을 편찬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책이 유척기가 편찬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유척기가 편찬한 것을 모본으로 하여 후대에 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藏書閣에는 12책의 《臥遊錄》(藏 2-4513)이 소장되어 있다. 규장각본은 장서각본과 성격은 유사하나 수록 대상 지역, 시기, 작가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규장각본은 松都, 關東, 關北 등 세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고려 말부터 18세기 전반기까지의 작가들의 작품을 다루었는데, 특히 17·8세기 老論層 문인들의 山水遊記文이 많이 실려 있다.<sup>3</sup>

울릉도 수토와 관련하여 장서각 소장 『와유록(臥遊錄)』에는 「울릉도」라는 글이 실려 있는데,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이른바 『서계잡록(西溪雜錄)』에 실려 있는 「울릉도」라는 제목 아래에 실려 있는 내용의 일부와 거의 비슷하다.<sup>4</sup>

『와유록(臥遊錄)』의 「울릉도수토기」를 보면, 제목 아래에 저자의 이름 조한기(趙漢紀)를 기록해 놓았다. 그런데 「울릉도수토기」를 보면 일반적인 기행

2 <http://e-kyujanggak.snu.ac.kr/home/index.do?idx=06&siteCd=KYU&topMenuId=206&targetId=379>(검색일: 2020.6.1.)

3 <http://e-kyujanggak.snu.ac.kr/home/index.do?idx=06&siteCd=KYU&topMenuId=206&targetId=379>(검색일: 2020.6.1.)

4 장서각 소장 『와유록(臥遊錄)』의 「울릉도」와 『서계잡록(西溪雜錄)』의 「울릉도」의 관계에 관해서는 이원택, 「울릉도사적」의 문헌학적 검토(『영토해양연구』 16호,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2018) 참고.

문이 아니라 공문서 양식임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래서 조한기(趙漢紀)가 「울릉도수토기」라는 글을 기행문으로써 지은 것이라기보다는, 그가 수토관으로서 작성한 ‘울릉도수토보고서’를 『와유록(臥遊錄)』의 편찬자가 편집하여 실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강원도 관찰사(감사)가 수토관 삼척영장의 첩정(幟呈)을 받아 비변사에 장계(狀啓)할 때는 끝부분에 진상품의 종류와 수량을 감봉(監封)하여 올려보낸다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 글에는 그와 같은 기록이 없다. 편찬자가 수토관 삼척영장 조한기의 첩정을 이용한 것인지, 강원도 관찰사가 조한기의 첩정을 접수하여 비변사에 올린 장계를 이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영조 40년(1764) 7월 25일에 조한기가 삼척영장에 임명되었다<sup>5</sup> 그리고 영조 41년(1765) 6월 22일 조한기는 겸사복장(兼司僕將)으로 발령이 났다.<sup>6</sup> 그가 삼척영장으로 활약한 것은 1764년 7월부터 1765년 6월까지 약 1년간이다. 실록을 비롯한 문헌에 조한기(趙漢紀)가 울릉도 수토를 하였다는 기사가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여러 가지 관련 사료를 종합하면, 그가 1765년 봄에 울릉도 수토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65년은 원래 수토할 해가 아니고 1764년이 수토할 해였다. 그런데 1764년은 흉년이 들어 이듬해로 수토를 연기한 것이었다. 『비변사등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또 아뢰기를, “이는 강원감사 성천주(成天柱)의 장계입니다. 이르기를, ‘울릉도(鬱陵島) 수토(搜討)는 이번 봄에 차례를 당하였으나 영동(嶺東)이 큰 흉년으로 지금 진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흉년을 만나면 대부분 정지하

5 『승정원일기』 영조 40년(1764) 7월 25일: ○ 有政, 兵批, 行判書李益輔進, 參判李景祐病, 參議沈穀式暇, 參知李命植入直, 左副承旨李重祐進, 金相玉爲內禁將, 吳載衡爲都摠經歷, 許圭爲昌德將, 李潤成爲京畿水使, 趙漢紀爲三陟營將, 朴師海爲北評事, 尹弼載爲廣平權管, 徐永都爲蟾津別將, 副司直趙曦·李燮元.

6 『승정원일기』 영조 41년(1765) 6월 22일: ○ 兵批, 以尹僖東爲五衛將, … 趙漢紀爲兼司僕將, … .

는 예가 많이 있었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지하여 분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도신(道臣)이 논의한 바는 근거가 없지 않고 이에 앞서서 역시 그 전례가 있으니, 금년에 특히 정지하고 내년을 기다려 거행할 것을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그리하라 하였다.<sup>7</sup>

영조 40년(1764) 갑신(甲申)년에 거행되어야 할 울릉도 수토가 이듬해인 영조 41년(1765) 을유(乙酉)년에 실시되었음을 다음 기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영조 41년 2월 18일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울릉도 수토를 이유로 삼척진의 순회 점검을 정지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번 2월 18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의 인견에 경기 관찰사와 수령(守令)이 같이 입시하였을 때에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아뢰기를, “이는 강원도 관찰사 성천주(成天柱)의 장계입니다. 삼척진(三陟鎭) 울릉도(鬱陵島)의 갑신년(1764) 수토(搜討)를 흉년으로 인하여 올해(1765)로 미루어 시행기로 하였으나 소속된 아홉 고을의 길이가 8백 30리(里)나 됩니다. 고을마다 점검(點檢)하려면 [순회 점검에] 대단한 장애가 될 것입니다. 묘당(廟堂)에서 조속히 품지(稟旨)하여 분부하게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순회 점검이 비록 중대하기는 하나 수토와 상치된다면 그 장애가 됨은 사실 장계 내용과 같습니다. 삼척진은 특별히 정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sup>8</sup>

7 『비변사등록』 영조 40년(1764) 1월 18일 : 又所啓, “此江原監司成天柱狀啓也, 鬱陵島搜討, 今春當次, 而嶺東大歉, 今方設賑, 在前若值歉歲, 則多有停止之例, 令廟堂稟旨分付矣, 道臣所論, 不無所據, 前此亦有其例, 今年特爲停止, 待明年舉行事, 分付何如?” 上曰, “依爲之.”

8 『비변사등록』 영조 41년(1765) 2월 18일 : 今二月十八日, 大臣·備局堂上引見, 畿伯·守令同爲入侍時, 領議政洪所啓, “此江原監司成天柱狀啓也, 以爲‘三陟鎭鬱陵島甲申搜討, 因凶年追行於今年, 所屬九邑, 爲八百三十里, 追邑點視, 大段妨礙, 令廟堂即速稟旨分付矣, 巡點雖重, 既與搜討相值, 其所掣肘, 誠如狀辭, 三陟鎭則特爲停止何如?’ 上曰, “依爲之.”

이와 거의 같은 내용이 『승정원일기』에도 실려 있다.<sup>9</sup> 조한기의 「울릉도 수토기」에도 을유년(1765)으로 시작하고 있어서 1765년에 울릉도 수토가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한기의 「울릉도수토기」에서는 여타의 수토기에서 보기 어려운 장면이 연출되는데, 첫째는 배가 포구를 출발할 때 군악 대취타를 연주하고 대포를 발사하는 의식(儀式)을 거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때 수토군들이 그들의 가족·친지들과 포구에서 이별하는 장면이다. 울릉도 수토가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는 것과 같았던 것이다.

초하룻날부터 울릉도로 떠나야 할 군병(軍兵), 사격(沙格), 따라온 하인(下人) 등과 그들의 지친(至親), 친지(親知)들이 속속 와서 위로하고, 혹은 음식을 가지고 와 먹이며 이별하고, 간혹 손을 잡고 서로 울면서 이별을 고하는 자도 있었는데, 그 광경이 무척 서글프고 간절하였다. 초4일, 수토군(搜討軍)을 배 머리에 모아 깃발을 들게 하여 늘어세우고, 삼척영장이 좌기(坐起)하니, 배 위에서 대취타(大吹打)를 베풀고 대포를 세 번 쏘고 후에 배가 출발하였다. 배 안의 사람들이 다투어 배전에 서서 육지에 있는 자와 고별하고, 육지에 있는 자는 남쪽을 향하여 배 위에 있는 자에게 큰 소리로 부르며 고별하니, 혹은 통곡하거나 혹은 눈물을 흘리는 자도 있어 보기에 처량하고 가슴이 아팠다.<sup>10</sup>

9 『승정원일기』영조 41년(1765) 2월 18일 : ○ 乙酉二月十八日巳時, 上御思賢閣, 大臣·備局堂上引見, 畿伯·守令, 同爲入侍時, … 以次進伏訖, 領議政洪鳳漢曰, “夜間, 聖體若何?” 上曰, “一樣矣.” 鳳漢曰, “寢睡·水刺之節, 亦何如?” 上曰, “亦一樣矣.” 鳳漢曰, “此江原監司成天柱狀啓也, 以爲三陟鎮·鬱陵島, 甲申搜討, 因年凶, 退行於今年, 所屬九邑, 爲八百三十里, 追邑點視, 大段防禦, 令廟堂卽速稟旨, 分付矣, 巡點雖重, 旣爲搜討相值, 其所掣肘, 誠如狀辭, 三陟鎮則特爲停止, 何如?” 上曰, “依爲之.” 出舉條

10 조한기의 「울릉도수토기」.

## II. 「울릉도수토기」의 원문과 번역문

### 「鬱陵島搜討記」

乙酉三月, 以三陟營將, 將往鬱陵島, 行搜討事. 十六日, 差定搜討乾糧監色, 十八日, 發關各邑, 擇定各差備雜色軍及沙格, 擇定四月初四日發船. 二十一日, 又發關各邑, 軍兵及所率沙格·工人等, 晦日一齊來會. 四月初一日, 乾糧監色捉船來泊於府內浦. 其日譯學船又爲來泊. 自初一日, 所當往之軍兵·沙格·隨率下人等, 至親·親知, 續續來慰, 或以饌饌餽別, 間或有執手相泣而告別者, 景色甚爲愁切.

### 「울릉도수토기」

을유년(乙酉, 영조41, 1765) 3월 삼척영장(三陟營將)<sup>11</sup>이 장차 울릉도로 가서 수토(搜討)의 일을 행하려고 하였다. 16일, 수토할 때 사용할 마른 양식(乾糧)을 담당할 자를 선발하여 정하였다. 18일 각 읍(邑)에 공문을 보내 각종 차비(差備)<sup>12</sup> 잡색군(雜色軍)<sup>13</sup> 및 사격(沙格)<sup>14</sup>을 뽑아 정하고, 4월 초4일 배를 출발하기로 정하였다. 21일, 각 읍에 다시 공문을 보내 군병(軍兵) 및 인솔한 사격(沙格)·공인(工人) 등을 그믐날 일제히 와서 모이도록 하였다. 4월 초1일, 마른 양식 담당자가 배를 끌고 와 고을(府) 안에 있는 포구에 정박하였다. 그 날 역학(譯學)<sup>15</sup>을 태운 배도 또한 와서 정박하였다. 초하룻날부터 울릉도로 떠나야 할 군병(軍兵), 사격(沙格), 따라온 하인(下人) 등과 그들의 지친(至親),

11 삼척영장(三陟營將) : 당시 삼척영장은 조한기(趙漢紀)였다. 삼척영장과 월송만호가 수토관으로 차출되어 번갈아 울릉도를 수토하였다.

12 차비(差備) : 특별(特別)한 사무(事務)를 맡기려고 임시(臨時)로 임명(任命)하는 것을 말함. 신분에 따라 차비관(差備官)·차비군(差備軍)·차비노(差備奴) 등이 있었음.

13 잡색군(雜色軍) : 고려·조선 시대 보병·수병 등의 정병(正兵)을 제외한 여러 가지 직종의 임무를 맡아보던 군인. 특히 조선 시대에는 군제의 하나로 편성되었으나 곧 유명무실하게 됨. 여기서는 군인을 비롯하여 의식(儀式)이 있을 때 쓰이는 온갖 인부(人夫)를 포함한 개념.

14 사격(沙格) : 키를 잡은 사공(沙工)과 노를 젓는 걸군(格軍)을 말함.

15 역학(譯學) : 조선시대에 중국어(中國語)·몽고어(蒙古語)·여진어(女眞語)·왜어(倭語) 등의 외국어를 익히고 번역하는 일에 관한 학문. 여기서는 왜어(倭語)를 익힌 왜학(倭學)을 말함.

친지(親知)들이 속속 와서 위로하고, 혹은 음식을 가지고 와 먹이며 이별하고, 간혹 손을 잡고 서로 울면서 이별을 고하는 자도 있었는데, 그 광경이 무척 서글프고 간절하였다.

初四日, 聚軍船頭, 羅立旗幟, 營將坐起, 船上大吹打, 三放大砲後, 仍爲離發, 而舟中之人, 爭立船邊, 告別於在陸者, 在陸者亦向南呼別於船上人, 或有痛哭者, 或有拭淚者, 所見亦是愁痛矣. 行船越府內浦, 營將下陸, 向待風所, 四隻船仍往待風所, 初五日到蔚珍縣, 四船亦已來泊, 而初五日至初七日, 連吹逆風, 自初七日午後, 海霧大起, 十三日始小霧, 至十四日食後, 日氣明朗, 其夜別無雜風.

초4일, 수토군(搜討軍)을 뱃머리에 모아 깃발을 들게 하여 늘어세우고, 삼척영장이 좌기(坐起)<sup>16</sup>하니, 배 위에서 대취타(大吹打)<sup>17</sup>를 배풀고 대포를 세 번 쏜 후에 배가 출발하였다. 배 안의 사람들이 다투어 뱃전에 서서 육지에 있는 자와 고별하고, 육지에 있는 자는 남쪽을 향하여 배 위에 있는 자에게 큰 소리로 부르며 고별하니, 혹은 통곡하거나 혹은 눈물을 훔치는 자도 있어 보기에 처량하고 가슴이 아팠다. 배를 몰아 삼척부내(三陟府內)의 포구로 넘어와 영장은 배에서 육지로 내려서 대풍소로 향하였다. 네 척의 배가 잇달아 대풍소로 갔다. 초5일, 삼척영장이 울진현(蔚珍縣)에 도착하니, 네 척의 배도 또한 이미 와서 정박해 있었다. 초5일부터 초7일까지 연이어 역풍(逆風)이 불었다. 초7일 오후부터 해무(海霧)가 크게 일어났는데 13일에야 비로

16 좌기(坐起) : 관청의 으뜸 벼슬에 있는 이가 출근하여 정무(政務)를 처리함을 뜻함. 때로는 임금이 정사(政事)를 보기 위하여 정전(政殿)에 나가는 행차를 가리키기도 하였음. 여기서는 삼척영장이 배 위에 올라 영장의 자리에 위치하여 지휘를 시작한 것을 말함.

17 대취타(大吹打) : 선전관청(宣傳官廳)과 영문(營門)에 소속된 취타수(吹打手)에 의해 연주되던 행진곡풍 군례악(軍禮樂)의 일종. 대취타는 임금의 노부(鹵簿) : 임금이 거동할 때의 의장, 또는 의장을 갖춘 행렬) · 행행(幸行) · 능행(陵幸) : 임금이 친히 능에 행차하는 것, 왕실(王室)의 동가(動駕) : 임금이 탄 수레가 대궐 밖으로 나가는 것) 등에 사용되었음은 물론, 군대의 행진 및 개선, 주장(主將)의 좌기(坐起) : 출근하여 사무를 보던 일, 진문(陣門)의 개폐 때, 통신사의 행렬 때, <검기무 劍器舞> · <선유락 船遊樂> · <항장무 項莊舞> 등의 정재(正才)에 쓰임.

소 조금 건히기 시작하여 14일 식후(食後)가 되어서 날씨가 맑아졌다. 그날 밤에도 별다른 잡풍(雜風)은 없었다.

十五日曉，乘西南風發船，行十里許，大風忽作，海波箕揚，船去如矢，不暇指顧，其間未知行幾許里也。約到申時，忽見海雲駁亂，尖凡數峰，明滅於西南天際，舟人指謂倭島也。噫，小島狂夷敢肆凶圖，壬辰之秋，提兵涉海，以致警蹕遠巡，衣冠魚肉，令人平日思之，尙能痛心而扼腕也。況蹈烈士殉忠之地，望奸寇洗兵之海，實不勝撫劍慷慨矣。黃昏瘴癘繼起，行值水宗，船頭掛空而上者，幾六丈，須臾下劈，洪濤悠悠，如飛泉之落峻壁，船中人皆吐血，無人色矣。

15일 새벽, 서남풍을 타고 배를 출발하여 10여 리쯤 갔는데 큰바람이 갑자기 일어나 바다의 파도가 키[箕]<sup>18</sup>로 까불듯하여 배가 화살처럼 가서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돌아볼 틈도 없었다. 그 사이에 몇 리쯤 갔는지 알 수 없었다. 대략 신시(申時)<sup>19</sup>쯤 되자 홀연히 바다 구름이 점점 어지러운 가운데 뾰족한 수개의 봉우리가 서남쪽 하늘 끝에 명멸(明滅)하는 것이 보였다. 뱃사람들이 가리키며 ‘왜 섬(倭島)이라’고 하였다. 아, 조그만 섬의 미친 오랑캐들이 감히 흉측한 의도를 펼쳐 임진년(1592) 가을에 군사를 끌고 바다를 건너자;<sup>20</sup> 놀란 행차(行次)가 먼 곳까지 순수(巡狩)하게 되고<sup>21</sup> 의관(衣冠)이 어육(魚肉)이 되는데 이르렀다.<sup>22</sup> 사람들로 하여금 평상시 생각하게 하여도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먹을 움켜쥐게 할 것이다. 허물며 열사(烈士)가 충성을 바쳐 목숨을 바친 땅을 밟고 간사한 오랑캐가 병기(兵器)를 씻

18 箕[箕]: 곡식 따위를 까불러 쫓정이나 티끌을 골라내는 도구. 키버들이나 대를 납작하게 쫓개어 얇은 넓고 평평하게, 뒤는 좁고 우긋하게 엮어 만들.

19 신시(申時): 오후 세 시부터 오후 다섯 시까지를 말함.

20 조그만 섬의 - 바다를 건너자: 1592년의 임진왜란을 말함.

21 놀란 행차(行次)가 먼 곳까지 순수(巡狩)하게 되고: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간 것을 말함.

22 의관(衣冠)이 어육(魚肉)이 되는데 이르렀다: 사대부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임.

던 바다를 바라보니 실로 검을 어루만지며 강개함을 이길 수 없었다. 황혼이 되어도 어지러운 바람이 계속 일어나 항행이 물마루[水濤]<sup>23</sup>에 부딪치자 뱃머리가 허공에 걸려 하늘로 오르는 것이 거의 6장(丈)이 되었다가, 창졸간에 떨어져내려 쪼개지고, 큰 파도는 더욱 거세져 하늘을 나는 새이 꺾어 지른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배 안의 사람들이 모두 피를 토하고 사람들은 낯빛을 잃어버렸다.

十六日曉，海霧連天，不見島形，恐已飄過島外矣。日出時，始見數峯露形於落霞之間，問諸往還船人，人皆側目詳視而後，謂是鬱陵島，故回船東指，一向催棹，山形青翠，步步漸近，行到午後，似當不久可泊，而促船終日，日昏乃到苧田仇味，泊船上陸。顧視山勢，石壁四圍，不得接足，間間有石穴，如門可以出入。山下廣潤，皆宜墾闢，田可爲數十日耕，畚可爲數十石落。樹木參天，其中多有紫檀香·冬栢·青大竹，皆枝葉拂雲，蔭影倒海，雜以奇香異樹，不可以殫記矣。初昏有鳥<sup>24</sup>如白鳩，啼號‘郭哥’，自海中來，蔽天成群，亂鳴入島，宿於林間，早曉復呼‘郭哥’，望海東西飛散，人謂之‘郭哥鳥’云。是日捉可支魚十九，且生苧苗長一坪，又有麥穗實，簇刊山阿，如丹砂炯熟，大如棗實，而入口甘爽矣。

16일 새벽, 해무(海霧)가 하늘까지 이어져 섬의 형태가 보이지 않았으나, 아마도 표풍(飄風)<sup>25</sup>은 이미 섬 밖으로 벗어난 것 같았다. 일출 시에야 비로소 몇 개의 산봉우리가 흩어지는 이내(落霞)<sup>26</sup> 사이로 형태를 드러내었다. 예전에 와보았던 뱃사람에게 묻자 사람들이 모두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살

23 물마루(水濤) : 산의 가장 높은 곳을 '산마루'라고 하듯 파도의 가장 높은 곳을 '물마루'라고 함. 육지에서 바다를 보면 수평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수평선을 물마루라고도 함. 전통시대에는 수평선(물마루)을 기준으로 내해(內海)와 외해(外海)를 구분함.

24 鳥 : 원문에는 鳥로 되어 있으나 내용상 鳥의 오자로 보임.

25 표풍(飄風) : 갑작스럽게 부는 회오리 바람.

26 이내(落霞) : 낮게 드리운 저녁노을. 해 질 무렵 멀리 보이는 푸르스름하고 흐릿한 기운.

핀 후에 '울릉도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배를 돌려 동쪽을 가리키며 한편으로 노를 재촉하였다. 산 모습이 푸르렀는데 거리가 점차 가까워지고 가는 길이 오후가 되자 오래지 않아 옹당 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종일토록 배를 재촉하여 날이 저물 무렵 저전구미(亭田仇味)에 도착하여 배를 정박하고 육지로 내려왔다. 산세(山勢)를 둘러보니, 석벽(石壁)이 사방을 감싸고 있어서 밭을 디딜 곳이 없었다. 간간히 바위굴(石穴)이 있어 문(門)과 같이 출입할 수 있었다. 산 아래는 광활하여 모두 개간하기에 적합하였고 밭은 수십일 갈이가 될 법했다. 논은 수십 석락(石落)이 될 만했다. 수목이 하늘까지 차있으며, 그 가운데 자단향(紫檀香)·동백(冬栢)·청대죽(靑大竹)은 모두 가지와 잎이 구름을 뚫고 나가고 그들은 바다에 거꾸로 박혔다. 그 가운데 섞여있는 기이한 향과 특이한 나무들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다. 초저녁 무렵 흰갈매기와 같은 새가 '곽가(郭哥)'<sup>27</sup>라고 울어대면서 바다 가운데서 왔는데, 하늘을 가리며 무리지어 어지러이 울면서 섬으로 들어와 숲 사이에서 자고, 이른 새벽에 다시 '곽가(郭哥)'를 불러냈는데, 바다를 바라보니 동서로 날며 흩어졌다. 사람들이 '곽가조(郭哥鳥)'라고 일컬었다. 이날 가지어(可支魚)<sup>28</sup> 열아홉 마리를 잡았다. 또 생모시 줄기가 한 평 남짓 길게 자라고, 또 보리 이삭이 실하였다. 조릿대로 산비탈을 깎아내니 단사(丹砂)<sup>29</sup>와 같은 것이 맑게 익어 크기가 대추 열매만 하였는데 입에 넣자 달고 상쾌했다.

十七日，山谷中如聞牛聲，怪問之，沙格輩云，“是青鳥之鳴”，尋聲往見，體不過小鳩，背青胸紫，搖身而鳴，恰如乳牛呼犢之聲，甚可異也。到可知仇味，坡野廣闊，皆可耕種，而巖石爭奇，澗溪競清，川聲山色，濃濃滴滴，眩人耳目。到貝田仇味，景概如一，而前有二石峰，如叢石狀，名曰‘帷升峰’，峰之底各有一石穴，狀如虹蜺倒橫，寬可容四五隻船繫纜，其中吹打軍樂，海

27 '곽가조(郭哥鳥)': '각각'하고 울음소리를 내서 울릉도에서는 "각새"라고도 불림.

28 가지어(可支魚): 갯치.

29 단사(丹砂): 주사(朱砂), 수은과 황의 화합으로 만들어진 광물로 육방 정계(六方晶系)에 속하고 진한 붉은색이며 안료, 약재로 쓰임.

山咸響, 魚跳波鳥啼林, 若相和應也. 後有錐峰, 峰頭觸天, 眼力難及, 其側有峰, 名曰‘朱砂’, 朱砂之上, 又有白雲峯, 屹立天際, 右挾群峯, 左臨蒼溟, 四壁如削, 鳥亦不能飛到, 傍有蓮花隱仙之遊, 諸峯皆俯揖仰拱環侍, 白雲之下有龍湫, 諸峯泉瀑, 皆注其中, 深不可測, 而朱砂懸瀑, 尤奇飛落五十餘丈而復散作十三瀑, 噴箭瀉珠, 爭注龍湫, 湫波翻覆, 滄瀾震山, 湫邊巖石, 皆成物形, 如長者屹立, 整衣冠之容, 或似老僧衣袈裟, 拱手祝佛, 又如美娥之艷粧矣.

17일, 산골짜기 가운데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괴이하게 여겨 물으니, 사격배(沙格輩)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푸른새(靑鳥)의 울음이다.”라고 하였다. 소리를 찾아 가서 보니, 몸통이 작은 비둘기만 한 것이 등은 푸르고 가슴은 자주색인데 몸을 흔들며 울어대는 것이 흡사 젓먹이는 소가 송아지를 부르는 소리와 같았는데 심히 괴이하였다. 가지구미(可知仇味)에 이르자 고개 넘어 들판이 넓게 트여 있었는데 모두 종자를 뿌릴 만했으며, 암석이 기이함을 다투고 시냇물이 맑음을 다투어 개울 소리와 산의 빛깔이 맑고 짙어 사람들의 귀와 눈을 현혹시켰다. 패진구미(貝田仇味)에 이르자, 경치가 여전했으며 앞에 두 개의 바위 봉우리가 있다. 총석(叢石)<sup>30</sup> 모양이었는데, 이름을 ‘악승봉(雌升峰)’이라고 하였다. 봉우리 아래 각각 하나의 석혈(石穴)이 있는데, 모양이 무지개가 걸려있는 것과 같았고, 넓이는 배 4-5척을 포용하여 묶어 놓을 수 있을 만했다. 그 안에서 군악(軍樂)을 취타(吹打)하였는데, 바다와 산이 함께 울려 물고기가 과도에서 도약하고 새가 숲에서 우는 듯이 서로 화응(和應)하였다. 뒤에는 추봉(錐峰)이 있는데, 봉우리 머리가 하늘에 닿은 듯하여 안력(眼力)이 미치지 않았다. 그 옆에 봉우리가 있는데 이름은 ‘주사봉(朱砂峰)’이라고 하였다. 주사봉 위에 또 백운봉(白雲峯)이 있는데, 우뚝 서서 하늘가에 닿았고, 오른쪽으로 여러 봉우리들을 끼고 있고 왼

30 총석(叢石) : 마치 식물의 한 뿌리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나와 더부룩하게 된 무더기와 같이 생긴 돌무더기를 말함.

편으로 푸른 바다에 임하여 있는데, 네 벽이 깎아지른 듯하여 새들도 날아서 도달하지 못하였다. 곁에는 연꽃에 숨은 신선이 노닐고 있는데, 여러 봉우리가 모두 허리를 굽혀 읊(誦)하며 우러러 손을 맞잡고 빙 둘러 모시고 서 있다. 백운봉 아래에 용추(龍湫)가 있는데, 여러 봉우리의 샘과 폭포가 모두 그 가운데로 흘러들어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 주사봉(朱砂峯)에는 폭포가 걸려있어 더욱 기이하게 50여 장(丈)을 날아서 낙하하고 다시 흩어져 열셋 폭포가 되는데 화살을 뺏어내듯 구슬을 쏟아낸 듯 다투어 용추로 들어간다. 용추의 파도가 뒤집혀 무너져 내리면 물소리가 온 산을 진동시킨다. 용추 주변의 암석은 모두 물건 형태를 이루었는데 마치 어른이 우뚝 서서 의관(衣冠)을 정제한 모습이고, 혹 노승(老僧)이 가사(袈裟)를 입고 손을 마주잡고 축불(祝佛)하는 것과 같고, 또는 아름다운 상아(嫦娥)<sup>31</sup>가 예쁜 화장을 한 것과 같았다.

十八日, 到待風所, 山川如貝田矣. 十九日, 到黃土仇味, 土沃野潤, 畓可爲數百頃矣. 二十日, 到倭船所, 地形如黃土畧同矣. 其中家舍塔砌及古人石葬形基, 宛然矣. 念一日得回船風發行, 行四晝夜, 念四日午後, 南望越松山色, 舟人皆欣欣相賀, 黃昏狂風亂作, 船飄北海之境, 檣傾楫摧, 水漏滿船, 蒼黃之狀, 實難形喻, 念六日, 回泊本鎮, 前後飄泊之間, 婁濱死境, 終底利還, 左氏所謂‘其濟王靈也’.

18일, 대풍소(待風所)에 도착하니, 산천이 꽤전구미(貝田仇味)와 같았다. 19일, 황토구미(黃土仇味)에 도착하였는데, 토지가 비옥하고 들판이 넓어 논이 수백 경(頃)<sup>32</sup>은 될듯했다. 20일, 왜선소(倭船所)에 도착하니, 지형이 황토구미

31 상아(嫦娥): 본래 향아(姮娥)로 불리며, 향아(恒娥), 상희(常羲), 상의(常儀)로 쓰기도 함. 향(姮)과 향(恒)은 서한(西漢) 문제 유향(劉恒)과 이름이 겹치는 것을 피해 상(常)과 상(嫦)으로 바꿈. 희(羲)와 의(儀), 아(娥)는 고음(古音)이 같음. 신화적 인물로 고대 제왕 제곡의 딸이며 대예(大羿)의 처. 달의 여신으로, 그녀와 관련한 이른바 향아가 달로 도망갔다는 ‘향아분월(嫦娥奔月)’ 신화가 민간에 가장 널리 퍼져 있음.

32 경(頃): 토지 면적을 계산하던 단위. 조선은 전지(田地) 4방(方) 5척(尺)을 1보(步)로, 24보를 1분(分)으로, 10분을 1묘(畝)로, 1백묘를 1경(頃)으로 5경을 1자정(字丁)으로 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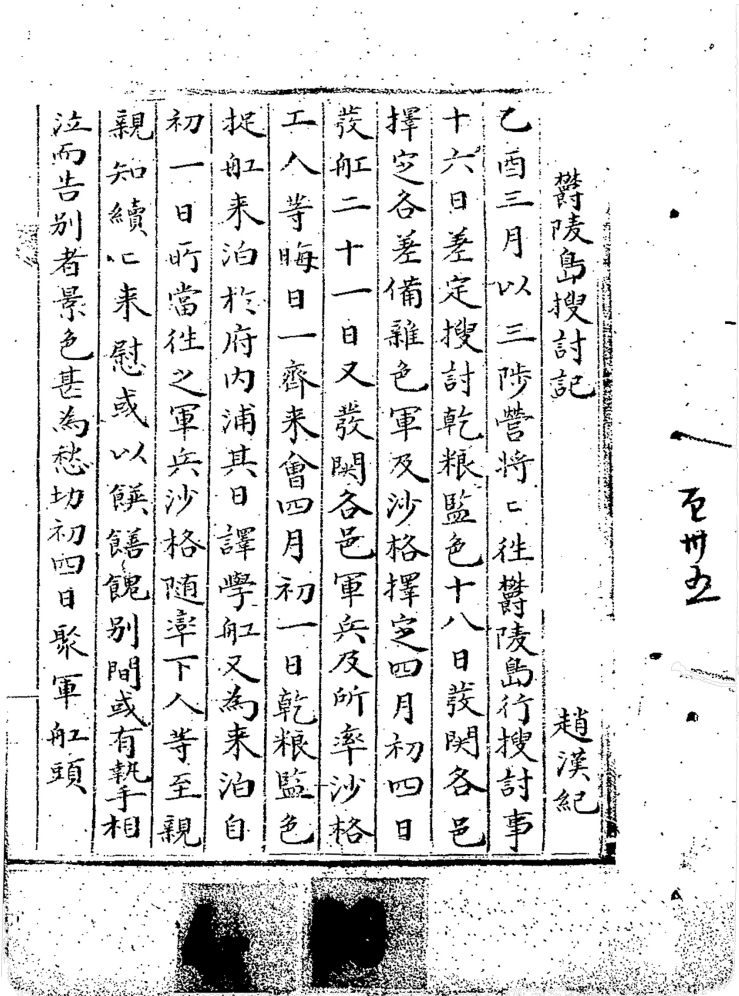
와 대략 같았다. 그 가운데 가옥의 섬돌과 옛사람의 돌무덤(石葬)이 남아 있었는데 그 모양과 터가 완연하였다. 21일 배를 돌릴 바람을 얻어 출발했는데, 나흘 동안 밤낮으로 나아가 24일 오후에 남쪽으로 멀리 월송(越松)<sup>33</sup> 포구의 산색(山色)이 보이자, 뱃사람들이 모두 기뻐 서로 축하하였다. 황혼이 되어 광풍이 어지러이 일어나 배를 북해의 경계로 휘몰아가 돛대가 기울고 노가 부러졌으며, 물이 새들어와 배에 가득 차는 등 창황(蒼黃)한 상황은 실로 형언하기 어려웠다. 26일, 되돌아와 본진(本鎭)<sup>34</sup>에 정박하였다. 앞뒤로 휘몰아치고 정박하기까지 기간에 여러 차례 사경(死境)을 헤매다가 마침내 무사히 돌아왔으니, 『춘추좌씨전』에 이른바 “건너가면, 왕의 혼령(王靈)이 도와준 것이다”<sup>35</sup>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33 월송(越松) : 평해군에 속한 포구.

34 본진(本鎭) : 삼척진을 말함.

35 “건너가면, 왕의 혼령(王靈)이 도와준 것이다” : 《左傳·僖公九年》에 나온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중국 춘추시대(春秋時代) 진(晉)나라 헌공(獻公)이 애첩 여희(驪姬)의 소생인 해제(奚齊)를 후계자로 세우려 태자 신생(申生)을 죽이고 공자 중이(重耳), 이오(夷吾)까지 죽이려 하였다. 헌공은 나이 어린 해제를 두고 죽음이 가까워 오자 대부 순식(荀息)을 태부(太傅)로 임명하여 해제를 보좌하게 했다. 그리고 그를 불러 말했다. “이 약하고 어린 자식을 그대에게 맡기니 그대는 어찌하겠는가?” 이에 순식이 대답했다. “신은 고공의 힘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건너가면(성공하면) 군주의 혼령 덕분일 것이고(其濟, 君之靈也) 건너가지 못하면(실패하면) 죽음으로써 따르겠습니다.” 헌공의 뜻대로 해제는 보위에 올랐지만 여희 일당의 전횡에 불만을 품은 이극(里克)·비정보(丕鄭父) 일파가 일으킨 난에 제거되었고, 결국 외국으로 도망갔던 공자 중이가 돌아와 문공(文公)으로 등극하였다.

### Ⅲ. 「울릉도수토키」의 원자료 모습<sup>35</sup>



35 출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중앙도서관. 마이크로필름에서 출력하여 온 것을 스캔한 것임.

羅立旗幟營將坐起舡上大吹打三鼓大砲候  
仍為離發而舟中之人爭立舡邊告別於在陸  
者在陸者亦向南呼別於舡上人或有痛哭者  
或有拭淚者所見亦是愁痛矣行舡越府內浦  
營將下陸向待風所四隻舡仍往待風所初五  
日到蔚珍縣四舡亦已來泊而初五日至初七  
日連吹逆風自初七日午後海霧大起十三日  
始小霽至十四日食後日氣明朗其夜別無雜  
風十五日曉來西南風發舡行十里許大風忽作海  
波顛揚舡去如矢不暇指顧其間未知行幾許里也

約到申時忽見海雲駸亂尖兀數峰明滅於西南天際  
 舟人指謂倭島也噫小島狂夷敢肆凶番壬辰之秋提  
 兵涉海以致警蹕遠巡衣冠魚肉令人平日思之  
 尚能痛心而扼腕也沈蹈烈士殉忠之地望奸寇洗  
 兵之海實不勝撫劔慷慨矣黃昏惇飈絃起行值水  
 宗艍頭掛空而上者幾六丈湏臾下劈洪濤倏忽如  
 飛泉之落峻壁艍中入皆吐血無人色矣十六日曉  
 海霧連天不見島形恐已飄過島外矣日出時始見  
 數峯露形於落霞之間問諸往還艍人亡皆側目詳  
 視而後謂是鬱陵島故回艍東指一向催棹山形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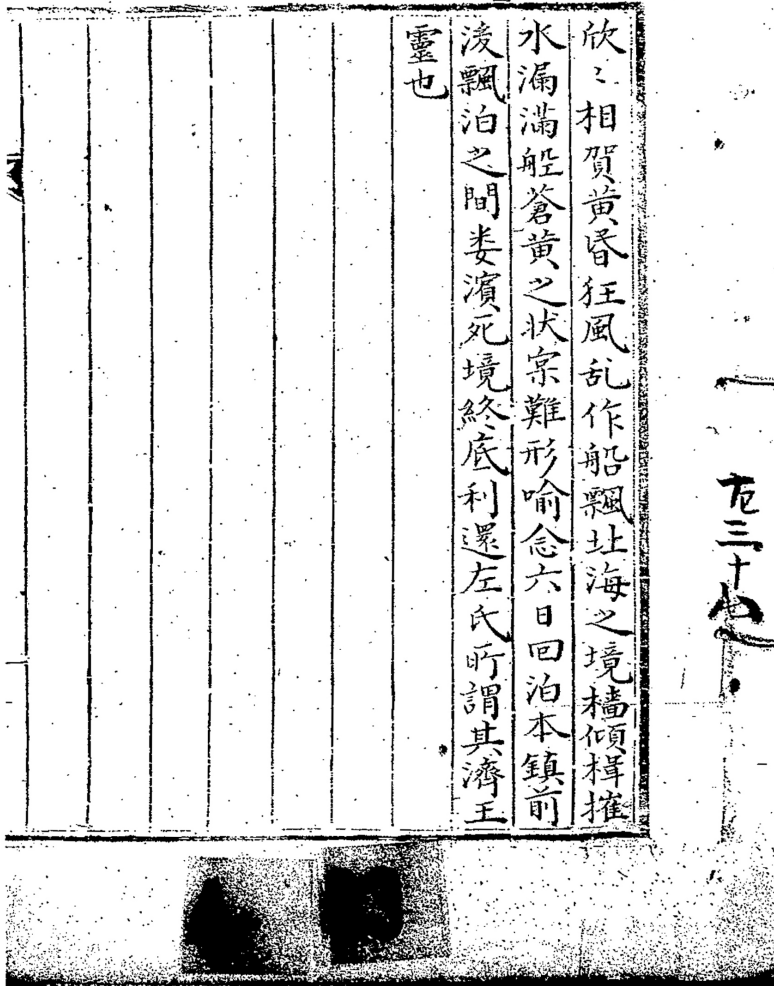
五卅五

翠步已漸近行到午後似當不久可泊而便旋舟  
昏乃到芋田仇味泊艇下陸顧視山勢石壁四圍不  
得接足間已有石穴如門可以出入山下廣澗皆宜  
墾闢田可為數十日耕苗可為數十石落樹木参天  
其中多有紫檀香冬栢青大竹皆枝葉拂雲陰影倒  
海雜以奇香異樹不可以殫記矣初昏有鳥如白鷓  
啼歸郭哥自海中来蔽天成羣亂鳴入島宿於林間  
早晚復呼郭哥望海東西飛散人謂之郭哥鳥云是  
日捉可支魚十九且生芋茁長一坪又有交穗宗簇  
列山阿如丹砂烟熟大如棗宗而入口甘爽夫十七

日山谷中如聞牛群恠問之沙格輩云是青鳥之鳴  
 尋群往見體不過小鳩背青紫搖身而鳴恰如乳  
 牛呼犢之聲甚可异也到可知仇味坡野廣闊皆可  
 耕種而岩石爭奇澗溪競清川群山色濃三滴三眩  
 人耳目到貝田仇味景際如一而前有二石峰如叢  
 石狀名曰帷弁峰三之底各有一石穴狀如虹蜺倒  
 橫寬可容四五隻船繫纜其中吹打軍樂海山咸響  
 魚跳波鳥啼林若相和應也後有錐峰三頭觸天眼  
 力難及其側有峰名曰朱砂米砂之上又有白雲峯  
 屹立天際右挾群峯左臨蒼溟四壁如削鳥亦不能

卷卅七

飛到傍有蓮花隱仙之遊諸峯皆俯仰如雲  
雲之下有龍湫諸峯泉瀑皆注其中深不可測而朱  
砂懸瀑尤奇飛落五十餘丈而復散作十三瀑噴前  
湧珠爭注龍湫波翻覆澆潑震山湫邊岩石皆成  
物形如長者屹立整衣冠之容或似老僧袈裟拱  
手祝佛又如美娥之艷粧矣十八日到待風所山川  
如貝田矣十九日到黃土仇味土沃野濶番可為數  
百頃矣二十日到倭船所地形如黃土畧同矣其中  
家舍塔砌及古人石窆形基宛然矣念一日得回船  
風發行四晝夜念四日午後南望越松山色舟人皆





# 일본 전후 체제의 실체에 대한 명쾌한 진단

『영속패전론(永續敗戰論) - 전후 일본의 핵심』

시라이 사토시(白井聰) 저, 정선태 외 옮김, 2017, 이숲

이준호 영토해양연구 편집간사

## 1. 납득하기 어려운 일본의 열화(劣化)현상

1970~80년대 우리나라가 군사독재정권의 폭정에 신음하던 암울한 시절, 일본은 아시아에서는 보기 드물게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자본주의 국가로서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며 당당히 선진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 있었다. 일본 공산당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정당 활동을 벌이는,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일본 국적의 노벨상 수상자가 25명(2019년 현재)에 달하는, 문화(학문) 수준이 높은 나라, 경제적으로는 세계 최강 국 미국의 바로 뒤까지 추격하여 곧 추월할 것 같았던 나라,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일본의 전후 모습이었다.

그랬던 일본이었건만, 최근 일본에서 벌어지는 사회 전반적 전개양태는 예전에 일본이 잘 나가던 때의 양상과는 사뭇 다른, 뭐라 형용하기 어려운 괴리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해,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1990년대 거품 경제의 붕괴로 촉발된 대불황, 2011년 후쿠



시마(福島) 원전 폭발사고, 2012년 말의 제2차 아베(安部) 정권 등장, ‘일본회의’ 등의 우익단체 준동(蠢動), 일본 사회 전체의 보수우경화 등, 많은 원인과 이유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이 이어지고 있으나, 왜 지금 이러한 쇠락 형태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필연적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으로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

여기 일본 전후 체제의 필연적 메커니즘에 대한 납득할 만한 진단으로 필자는 감히 『영속패전론-전후 일본의 핵심』을 소개하고자 한다.

“안면에 강렬한 펀치를 얻어맞아 그대로 매트에 꼬꾸라지는 심경이 되었다”<sup>1</sup>

는 어느 일본인 평론가의 서평이 말해 주듯, 일본인에게 강렬한 충격을 안겨준 문제작이기도 한 이 책의 저자 시라이 사토시(白井聡, 이하 ‘저자’로 칭함)는 지금까지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혼네(本根)의 세계에 깊이 숨겨 놓고는, 차라리 잊어먹으면 잊어먹었지 바깥세상에 드러낼 수 없었던 사실이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을 냉정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그렇게도 감추고 싶어 했던 그 사실이란 일본이 전쟁에 패전했었고 그래서 일본인들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승전국 미국의 의지와 계산에 의해 일본의 ‘전후 체제’가 짜여져 현재에 이르렀으며 앞으로도 자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움직이게 될 패전국의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를 보다 피부에 와 닿는 표현으로 부연하자면, 지금까지 일본이 누렸던 평화와 번영은 일본인이 자기 힘으로 선택해서 노력하여 쟁취한 것이 아니라 승전국 미국의 계산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었고 바로 그런 연유로 이후에 전개될 일본의 운명 역시 일본인의 노력과 의지와는 전혀 무

1 『永續敗戰論-戰後日本の核心』에 대한 미즈노 카즈오(水野和夫, 일본 민주당 정권 당시 내각관방 심의관으로 경제학자)의 서평 중 일부(2013. 3. 16, 『朝日新聞』).

관하게 승전국 미국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암담한 현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

## II. 일본 ‘전후’ 체제의 성립과 메카니즘

일본이 패전한 지 75년이 다 된 지금에 와서 일본이 처한 패전국의 처지 운운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난감해하는 독자도 없지는 않을 것 이겠지만 저자의 논의는 무척 진지하다.

이와 관련해 책의 저자는 책의 집필 동기로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의 이전 문제로 궁지에 몰리다 결국 붕괴한 하토야마(鳩山) 정권의 말로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발을 들고 있다<sup>2</sup>.

하토야마 정권 붕괴의 경우, 주권국가라면 당연히 ‘국민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자국 내 외국군 기지의 이전이라는 국사가 ‘미국의 의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고 정권 붕괴로까지 이어졌다. ‘이걸 정말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이 갖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일일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는, 75년 전 300만을 넘는 국민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국가의 존망이 걸렸던 전쟁 패전이었음에도 사실상 아무도 책임 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조차 없었던 전쟁 책임자들의 ‘체제, 그 자체의 퇴폐’ 행태가 원전 폭발 사고 직후에도 ‘정말이지 딱 그 대로 재현’되었다는 사실에 촉발되어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리고 저자가 집필하면서 내린 결론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었던 평화와 풍요로 가득 찼던 ‘일본의 <전후>는 중지부를 찍었고 미국에 대한 무한 종속을 전제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공공연히 ‘패전을 부인’

2 「永続敗戦論からの展望」, 白井聡, 『メールマガジン「オルダ広場」』(<https://www.alter-magazine.jp>)

하려고 발버둥 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으니 저자는 이를 ‘영속패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저자가 말하는 일본의 <전후>란, 전쟁 책임을 져야 하는 대일본제국의 체제와 가치관을 부정하고 전후 민주주의 규칙과 가치관을 존중한다는 태도-‘전후의 다테마에(建前)’를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워도’ 받아들였던 시기를 말하는데 전쟁 패전으로 초토화된 일본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다시 일으켜 세웠던 ‘평화와 번영’이 이를 물질적으로 뒷받침한데 힘입은 바 컸다고 설명한다.

그러던 것이 경제적 대불황인 ‘잃어버린 20년’을 거친 이후, ‘전후’의 물질적 유산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사실상 탕진된 것이 확실해지자 ‘전후의 다테마에’를 포기하고 ‘대일본제국을 긍정’하며 전쟁 패전을 부인하려는 일본의 내셔널리즘이 당당히 무대 위에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미 종속 관계로 좌절된 일본 내셔널리즘의 치욕을 아시아를 향해 분출하여 해소하고자 하는 ‘전후 일본체제의 진짜 골격’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였을까, 1945년 9월 2일 미주리호 선상에서 항복문서에 정식 서명을 한 공식 패전일을 애써 무시한 채 지금까지 쇼와(昭和)천황<sup>3</sup>의 라디오 방송일인 8월 15일을 ‘종전기념일’이라 부르며 한사코 ‘패전’이라는 단어 사용을 기피하고 했던 현 일본지배층의 저의가, 아시아에 대해서만큼은 필사적으로 패전을 부정하며 받아들여려고 하지 않는 ‘일본 지배 체제의 핵심적 본질’에 기인한다는 저자의 지적은 여러모로 곱씹어 보게 하는 대목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모한 전쟁을 일으켰고 또 일본의 전쟁 패전에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할 일본 지배층들이 패

3 현 일본국왕에 대하여, 우리나라 언론계에서는 ‘일왕’이라는 군주호를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나 김대중 정부 이후 우리 정부의 공식호칭은 ‘천황’으로 되어 있다. 본 서평에서는 ‘천황’이라는 군주호가, 비록 고대에서부터 이기는 하나, ‘오오키미(大王)’에서 ‘스메라미코토(天皇)’로 바뀌어 내려온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에 방점을 두어 정부의 공식호칭인 ‘천황’칭호를 사용하고자 한다.

전에 의해 역사의 무대에서 끌려 내려간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한 채로 온존해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켜 왔다는 사실이다.

7~80여 년 전에 그들이 벌였고 또 그렇기에 반드시 저야 하는, 전쟁 책임에 대해 한사코 반성하기를 거부하는 현 일본 지배층들이 갖고 있는 패전에 대한 반성의 알맹이가, ‘대동아전쟁 패전의 결정적 원인이 세계 최강국인 미국을 적으로 돌린 것’에 있으니 앞으로는 ‘초강대국 미국에게 절대 복종 해야겠다’고 간단히 정리하는 선에서 통치는 정도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워낙 임팩트가 강한 주제와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패전 일본의 ‘전후’ 체제의 성립, 미일 간의 일방적 종속관계를 뼈대로 하는 ‘전후’ 체제가 그 이후에 어떻게 기만적으로 작동하며 일본 사회를 왜곡시켜 왔는가 등에 관한 저자의 논의에 귀가 솔깃한 내용이 적지 않다.

특히 현재 일본이 주변국 모두와 갈등을 겪고 있는 영토 문제를 다룬 제2장의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가 그토록 울부짖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이 실은 얼마나 중대한 정치적 사실과 역사를 간과하고 있는지를 무척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포함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독자가 직접 책을 통해 확인해 주기를 바라며 여기서는 필자가 개인적인 관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문제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는 것으로 본 서평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 Ⅲ. 일본 패전 후의 최대 금기, 쇼와(昭和) 천황의 책임론을 거론하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론이란, 직접적으로 전쟁의 패전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전후 체제 성립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며 특히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함께 노골적인 불평등조약으로 일관하게 된 일본의 ‘전후’ 체

제를 규정하는 양대 중심축으로서, 패전 후인 1951년에 체결된 ‘미일 안보조약’과 관련된 쇼와(昭和) 천황의 책임론을 말하는 것으로 앞에서 소개한 ‘안면에 강렬한 펀치를 얻어맞았다’는 일본인 서평자의 충격 중 가장 크고 결정적인 부분이 바로 이 쇼와(昭和) 천황의 책임론을 거론한 사실이 아닐까 싶다.

저자는, 비록 ‘미일 안보조약’ 연구자의 연구내용 소개<sup>4</sup>의 형식을 빌렸기는 하지만 1951년 미일 안보조약 교섭 당시 일본 측 총책임자였던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총리가, 지금까지의 통설과는 달리 미국과의 교섭에 ‘극단적인 불평등조약이 되지 않도록 준비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졸렬해질 수밖에 없었’으며 그 이유가 쇼와(昭和) 천황의 ‘주체적’ 개입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쇼와(昭和) 천황이 이처럼 적극적인 행동(당시 미 대통령 특사인 탈레스와의 접촉)을 하게 된 동기가 ‘국체’ 즉 천황제 존속을 위태롭게 할 반대세력의 봉기를 차단하기 위해 미군의 ‘계속적 주둔’을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라고 추론하였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1945년 8월 15일 발표된 쇼와(昭和) 천황의 항복 선언 결단에 의해 ‘본토 결전’을 회피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수많은 일본인이 겪었어야 할 참화를 모면했다는 통설에 대해서도 가차 없이 메스를 가하며 아래와 같이 그의 추론을 이어간다.

이미 전쟁에서의 패배가 확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전쟁 지휘부는 그해 8월 15일 이전까지 ‘일역의 불덩어리’로 ‘본토 결전’을 하겠다고 부르짖고 있었지만, 그 결말은 ‘본토 결전을 감행한’ 나치 독일의 최후에서 보듯 너무나도 뻔한 것이었으며 전쟁 지휘부도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었을 뿐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장한 각오가 팽배한 분위기 속에서 감히 전쟁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전쟁을 빨리 끝내자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4 豊下 裕彦, 1996, 『安保条約の成立—吉田外交と天皇外交』, 岩波書店; 2008, 『昭和天皇・マッカーサー一会見』, 岩波書店

것은 바로 황족 출신으로 거물 정치가였던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에 의해서였으니 그는 그해 2월에 천황에게 상소문을 제출한다.

이 상소문에서 고노에(近衛)가 ‘군인은 물론이고 황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며 급속히 확산하는 공산혁명으로부터 국체(國體=천황제)를 호지(護持)하기 위함’이라고 내세운 그의 명분에 주목하여, 실제 존재하지도 않아 ‘망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공산혁명을 운운하는 고노에의 주장 뒤에는 자신들이 쉽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숨은 의도가 있었고 그 의도란 ‘일본의 미래를 위한 혁명과 혁신보다는 천황제만 유지되는 조건의 ‘무조건’ 행복’이었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국가체제’인 것처럼 속이고 있었던 ‘국체의 본질’이었음을 도출해 내고 있다.

일본이 전시 체제가 들어서기 이전부터 치안유지법, 특별고등경찰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한 국가권력의 단속에 의해 공산주의 사상과 혁명 세력은 이미 약화될 대로 되어 있었고 그나마 잔존했던 세력도 전시 체제 하에서의 극심한 탄압으로 인해 사실상 전멸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상기시키며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정상인 고노에(近衛)가 말하는 ‘공산주의자’란 천황제에 위협이 되는, ‘좌우를 막론한 혁신주의자’를 말하며 이들 혁신주의자들의 필연적 귀결점인 ‘국체의 부정(=천황제 폐지)’을 막기 위해 천황에게 ‘패전의 선택’을 호소하였고 쇼와(昭和) 천황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주장이다.

현대의 일본인들에게 천황은 그 어떤 일본인보다 깊은 신뢰와 걱정을 한 몸에 받고 있으며 일본에서 영적인 통합 축으로서 유일하게 가시화되어 있는 존재<sup>5)</sup>이다.

또한 쇼와(昭和) 천황의 세평(世評)에 대해 말하자면, 전쟁 패전의 치욕과 그 이후 찾아온 번영과 평화의 영광을 일본 국민과 같이 했던 정신적 지도자이며 무엇보다 ‘일억의 불덩어리’로 ‘본토 결전’ 감행하려던 국가 재난의 위기로부터 일본 국민을 구해낸 구세주로 추앙받는 존재였다.

5 우치다 다쓰루(内田樹), 시라이 사토시 井井聡 공저, 정선태 번역, 2018, 『속국 민주주의론-일본은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모오사, 144쪽 중 우치다 씨의 발언.

그렇게 알고 믿어왔던 쇼와(昭和) 천황이 자신과 자신의 일족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 일본 국민의 미래를 희생시켰다는 저자의 주장에 놀라지 않을 일본인이 과연 몇이나 될까, 꼭 일본인이 아니더라도 그 충격의 정도를 가늠하기에 어렵지 않을 것이다.

아쉽게도 저자의 천황 책임론에 관한 논의는 여기서 멈추고는 회살을 ‘미국’으로 돌린다. 전쟁 시기에 천황이 차지하던 자리를, 일본 패전 이후 미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며, ‘천황보다 더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일본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막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말 일본 천황이 자신의 자리를 모두 다 미국에게 넘겨주고 물러나 앉은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이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천황의 자리는 패전 이전에 천황이 차지하던 자리 모두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일본에서의 천황은 여전히 ‘영적인 통합 축으로서 존재’하며 패전 이전 못지않게 일본 국민으로부터의 신망과 존경을 받는 존재로 남아 있다. 그래서일까, 천황제 반대를 공식적인 정당 방침으로 둔 일본 공산당 당원 중에 서조차 천황제 반대라는 당의 신념적, 사상적 강령에 위화감을 느낀다고 토로하는 사례<sup>6</sup>가 있음을 보듯이 일본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외국인으로서 쉬이 기능하기 어려우나 여전히 일본인 데 대해 절대적인 자기 고유 영역을 갖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본 천황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일본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 키워드인 천황에 대해 지금처럼 무지인 상태로 방치해도 좋을지 이제는 고민해 봐야 할 단계에 들어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6 우치다 다쓰루(内田樹), 시라이 사토시 白井聡 공저, 정선태 번역, 2018, 앞의 책, 81쪽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규정 및 규칙

나

- 편집위원회 규정
- 발행 및 심사 규칙
- 투고 요령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 [별첨]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 편집위원회 규정 ]

제정 2011.06.30.

개정 2017.04.21.

개정 2017.10.25.

개정 2018.04.19.

**제1조** 본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 발간하는 『영토해양연구』의 편집위원회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영토·해양 관련 전문연구자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1인을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편집위원은 전공 분야, 소속기관 등의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장이 위촉한다. 결원이 발생할 경우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제5조** 편집위원장은 재단 소속 직원 중의 1명을 편집간사로 지명하여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편집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 제6조

1. 편집위원회는 『영토해양연구』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2. 편집위원회는 『영토해양연구』 발간 전에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하고 의결한다.

- 1) 『영토해양연구』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영토해양연구』 게재 특집 및 일반 논문, 연구노트, 자료해제, 서평, 일지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및 심사위원 추천
  - 3) 논문심사 및 『영토해양연구』 출판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4) 기타 『영토해양연구』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주재하고, 『영토해양연구』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4.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 발행 및 심사 규칙 ]

제정 2011.06.30.

개정 2017.10.25.

### 제1장 발행규칙

**제1조** 『영토해양연구』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연구노트,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1. 독도와 관련된 주제
2. 영토 및 해양과 관련된 주제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제2조** 『영토해양연구』는 6월 30일, 12월 31일 매년 2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영토해양연구』에 게재 신청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타 학술지에 발표 또는 게재 신청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만약 타 학술지에 중복으로 게재 신청한 경우 향후 2년 동안 『영토해양연구』에 게재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아울러 해당 타 학술지 발행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제4조** 제출 원고는 『영토해양연구』 「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이 규정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해 저자에게 반환된다.

**제5조** 게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표절 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연구윤리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 제2장 심사규칙

제6조 편집위원회는 게재 신청 논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해 심사한다.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3. 논리성 및 독창성
4. 학술적 가치
5. 인용자료의 적절성
6. 분량의 적절성
7. 요약문의 적절성

제7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 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논문표절방지시스템 검사 결과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관련 전공자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중 B·C 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제8조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정 및 조치한다.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게재	A	A	A
수정 후 게재	A	A	B
	A	A	C
	A	B	B
	B	B	B
	A	B	C
수정 후 재심	A	B	D
	A	C	C
	A	C	D
	B	B	C
	B	B	D
	B	C	C
게재 불가	A	D	D
	B	C	D
	C	C	C
	C	C	D
	C	D	D
	D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영토해양연구』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 기획상의 우선순위 등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영토해양연구』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두고 및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와 관련하여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투고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제9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는 『영토해양연구』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 투고 요령 )

제정 2011.06.30.  
개정 2017.04.21.  
개정 2017.10.25.

### 제1조(투고 규정 일반)

- 『영토해양연구』는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서평, 연구노트, 영토·해양 관련 일지, 자료소개, 일지 등이 게재된다. 투고자는 투고원고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저작권활용동의서와 함께 투고하여야 한다.
-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영토해양연구』 온라인 제출 시스템(<https://nahfjams.or.kr>)을 통해 투고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해당도 300dpi 이상) 및 기타 자료는 별도로 제출한다.
- 심사 시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문과 각주 어디에도 저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언급을 피한다.

### 제2조(원고 작성 요령)

-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국문초록 및 주제어, 머리말, 본문, 맺음말, 영문제목, 영문초록 및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의 순서로 구성된다.
- 게재 신청 논문의 분량은 본문, 각주, 참고문헌, 부록(필요 시)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하고, 최대 200매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국문초록은 200자 원고지 3매 내외로 한다. 영문초록은 제목과 저자의 영문 성명을 포함하여 국문초록 분량에 준한다.
- 본문의 장, 절, 항의 번호는 1, 2, 3)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긴다.
- 각주에서 현대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 예) 김동복, 2006, 위의 글, 78쪽. (영문: *Ibid.*, p. 78.)

\* 예) 홍길동, 2002, 앞의 글, 29쪽. (영문: Gildong Hong, 2002, *op. cit.*, p. 29.)

6.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 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큰따옴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큰따옴표 없이 서술한다.

\*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鶴擁, 是人也.”

7. 서양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 예) David M. Lampton, 2009,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 Age of Obam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8, pp. 703~727.

8.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시 인용 쪽수를 표기한다.

\* 예) (동북인, 2006: 24)

9. 인터넷 자료의 경우 저자, 연도, 제목, 웹주소(검색 일자)의 순으로 한다.

\* 예) David C. Gompert, 2013, “Sea Power and American Interest in the Western pacific,” [http://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151.html](http://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151.html)(검색일: 2014.12.17).

### 제3조(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

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각 문헌은 한글 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아랍어 등)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한글 저자명은 가나다순으로, 로마자 저자명은 알파벳 순으로, 기타 언어 저자명은 발음을 괄호 안에 부기하고 이를 가나다 순으로 배열한다.

\* 예) 김독도 · 박동해, 1996, 『독도 관련 근대 일본발행 지도 연구』, 서울: 개벽사.

\* 예)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 예) 林昱君(린위쥘), 1986, 『中國城市住宅供與研究』, 臺北: 中華經濟研究所.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4. 각각의 문헌은 다음의 구체적인 예에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1) 논문, 기사 등은 따옴표(“ ”)로, 저서는 영어인 경우는 이탤릭체로, 한글 · 일본 · 중국어 · 한문인 경우는 이중꺾쇠(『 』)로 표시한다.

2) 저서

(1) 저자 1인인 경우

\* 예) 김재엽, 2010, 『100년 전 한국사』, 서울: 살림.

\* 예) Agnew, J., 2011, *Hegemony: The New Shape of Global Power*, MA: Temple University Press.

(2) 저자 3인 이상인 경우: 본문과 각주에서는 “누구 외”로 표시하지만 참고문헌에서는 공동저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준다. 단, 처음부터 책 표지나 안장에 “누구 외”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한다.

\* 예) 홍길동 · 허생 · 홍부, 1993, 『조선조 소설 인물고』, 성남: 정신

문화연구원.

3) 학위 논문

\* 예) 홍길동, 2002, “근대의 동해에 대한 지도제작과 측량 연구”, 집현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예) Doe, John, 1988, “The Social Banditry in Late Imperial China,” Ph. D. Diss., Robin Hood University.

4)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 다음에 번역자의 이름을 넣는다.

\* 예) Kissinger, Henry A. 저 · 박용민 역, 2014, 『회복된 세계』, 서울: 북앤피플.

5) 동양 문헌의 경우, (전체 추가) 동양 고전의 참고문헌을 작성할 경우에 필자, 서명, 출판지, 출판사, 발행 연도를 생략하고, 『삼국사기』, 『선조실록』 또는 『論語』 등만을 표기한다.

6) 학회보, 월간지, 계간지 등의 논문이나 기명 기사

\* 예) Geng, Jing, 2012, “The Legality of Foreign Military Activiti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under UNCLOS,” Merkourios, Vol. 18, Issue 74.

7)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proceeding)의 경우

\* 예) 박병섭, 2016, “일본영역참고도와 일본외무성의 독도 정책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독도 관련 일본발행지도 학술회의, 서울, 12월.

\* 예) Jordan, Peter, 2016, “When Exonyms and Endonyms Turn into International Names: An Additional Function in Need of a Term,” Paper presented at Seas and Islands: Connecting People, Culture, History and the Future, Korea, Rep., October.

8) 일간지, 주간지의 기명 기사와 칼럼

\* 예) 임거정, 1993,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결정”, 『중앙일보』(4월 8일).

##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

[제정 2019.11.11. 규칙 제2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 ① 이 규칙은 재단 직원이 재직 중에 수행한 모든 연구 활동 및 연구결과물에 적용한다.
- ② 재단의 각종 연구사업에 참여한 외부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진실성 검증은 원칙적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교육부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교육부 훈령만으로 연구부정행위가 검증되지 않을 때는 본 규칙에 따른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과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
6. 자신과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

7. 연구계약 체결, 연구비 수령,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 제4조(연구부정행위 범위와 용어의 정의)

-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벌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하여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에서 단어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자가 지도하는 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연구자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인지하여 연구부정행위에 관해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은 연구윤리위원장이 확정된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구결과물”은 재단 자체 연구사업 또는 개인의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연구결과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5조(사전예방의무)** 재단은 연구사업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연구윤리준수서약서(별첨 1) 요구, 연구윤리 관련 규칙 제공, 연구사업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 착수와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와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 처리, 후속조치, 재심의 또는 재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재단의 사무총장, 연구정책실장,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장과 『영토해양연구』 편집위원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은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② 연구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은 재단 연구위원 중

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이사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
- ⑤ 연구윤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검증 원칙)** ① 재단 직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본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피조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②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접수한 제보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사안을 검증 완료할 때까지 심의·의결·조사 등에 관여할 수 없다. 이때, 이해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는 자
  3. 제보된 연구결과물이 포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제9조(검증시효)** ①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재단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연구윤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기한)**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재심의 또는 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제보 사안의 조사·심의·의결 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때는 원칙적으로 최소 3일 전에 위원들에게 안건과 함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따라 해당 회의록 전체 또는 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와 증거보전)** ①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받은 내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이사장에게 보

고하고 제보에 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사업 기록, 연구결과물 등의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② 제보자는 제보 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와 일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 완료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되고,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간사를 포함하여 재단 연구윤리위원 3인 이내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에서 정의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춰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다음 각 호 내 용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3. 예비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
4. 본조사 실시 여부

④ 연구윤리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하면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본조사위원회 구성과 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한 경우 예비조사 승인 후 2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며, 이를 위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재단 연구윤리위원 중 1인을 본조사위원장으로 하 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 조 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조사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사 위원 중 외부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본조사위원으로는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우선 선정하되, 재단이 아닌 외부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 위원은 제3자를 대신 참석시킬 수 없다.

**제16조(제척·기피·회피)**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전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정 당한 사유로 본조사위원에 대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②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회의에 기피 신청된 위원이나 회피 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본조사 착수와 조사기간)** ①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최대 30일까지 한 차례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본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본조사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9조(진술 기회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인지를 고려

2. 해당 행위 당시 '교육부 훈령'과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②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재적 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과 승인)**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 진술 내용
  4.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
  5. 관련 증거와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본조사위원 명단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인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2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결과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

으로 확인된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범위 내에서 제재 조치를 이사장에게 건의하고, 이사장은 필요한 제재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결과물 수정
  2.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3. 일정 기간 재단 연구 사업 참여 배제
  4. 주의 또는 경고, 재단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 ② 외부 연구자의 연구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사장은 다음 각 호 범위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단에서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2. 3년 이상 5년 이내 재단 연구사업 참여 배제
  3. 소속 연구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본조사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해서는 동 규칙 제15조와 제21조에 따르되, 재조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⑤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재조사를 통해 심의·의결한 결과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승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결과 통지)**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사장이 조사결과를 승인하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제24조(재심의)**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단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하여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개시 여부를 포함하여 그 절차와 방식에 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동일 제보 건에 관하여 재심의 의결하고 최종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였다면, 해당 제보 건에 관한 재단의 조치는 이것으로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비밀유지의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예비·본조사 위원, 그 밖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재단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등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26조(경비)**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지침)**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조사기록과 정보 공개)** ① 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음성, 영상, 문서 등 모든 기록물은 판정된 날을 기준으로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부 칙

〈제정, 2019.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은 폐기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2조에 따라 폐기된 규칙에 근거하여 임명된 위원은 잔여 임기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위원직을 면한 것으로 본다.

【별첨 1】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 :

소속 기관 :  
(소속부서)

위 연구(책임)자는 학문적 양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과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명시하고 있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

연구(책임)자 : (인)

---

편집위원장

김관원 \_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강봉룡 \_ 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병렬 \_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안보정책학과 교수

김영수 \_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김재한 \_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도시환 \_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심정보 \_ 서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오상학 \_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이상균 \_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석용 \_ 한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성환 \_ 계명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이종원 \_ 와세다대학 대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과 교수

정병준 \_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부 교수


허영란 \_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

편집간사

이준호 \_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지원팀



 영토해양연구 Vol. 19

---

초판 1쇄 인쇄 2020년 6월 20일

초판 1쇄 발행 2020년 6월 30일

펴낸이 김도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2234-3296

비매품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